

주요국의 수출입신고서식 비교연구

2013. 12

세 법 연구 센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진

연구책임자

정 재 호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 미 영 관제사

이 민 선 관제사

목 차

I. 서론	7
II. 우리나라의 수출입신고서식	9
1. 수입통관절차 및 수입신고서식	9
가. 수입통관절차	9
나. 수입신고서	11
2. 수출통관절차 및 수출신고서식	17
가. 수출통관절차	17
나. 수출신고서	19
III. 주요국의 수출입신고서식 검토	23
1. 국제규범	23
가. 개정교토협약	23
나. WCO 표준 통관정보(CDM, Customs Data Model)	26
2. 미국의 수출입신고서식 검토	29
가. 미국의 수입통관절차 및 수입신고서	29
나. 미국의 수출통관절차 및 수출신고서	41
3. 일본의 수출입신고서식 검토	46
가. 일본의 수입통관절차 및 수입신고서	46
나. 일본의 수출통관절차 및 수출신고서	54
4. 호주의 수출입신고서식 검토	59
가. 수입통관절차 및 수입신고서	59
나. 수출통관절차 및 수출신고서	66
5. 영국의 수출입신고서식 검토	71

가. 통관절차.....	71
나. 수출입신고서.....	75
IV. 국제비교 및 시사점.....	84
1. 국제비교.....	84
가. 국가별 특징.....	84
나. 수입신고서.....	85
다. 수출신고서.....	93
2. 시사점.....	97
가. 신고서식 구성의 간소화.....	98
나. 가격신고서 내용을 수입신고서에 통합.....	100
다. 원산지표시항목과 특혜원산지항목 분리.....	102
참고문헌.....	106
부 록.....	108

표 목 차

〈표 Ⅲ-1〉 기존 교토협약과 개정교토협약의 비교.....	24
〈표 Ⅲ-2〉 미국의 통관절차.....	33
〈표 Ⅲ-3〉 미국 화물반입신고서에 기재되는 정보.....	35
〈표 Ⅲ-4〉 미국 납세신고서에 기재되는 정보.....	38
〈표 Ⅲ-5〉 미국 수출통관시스템에 제출되는 정보.....	44
〈표 Ⅲ-6〉 일본 수입신고서에 제출되는 정보.....	53
〈표 Ⅲ-7〉 일본 수출신고서에 제출되는 정보.....	58
〈표 Ⅲ-8〉 EU 수출입신고서 신고 내용.....	78
〈표 Ⅳ-1〉 수입신고서의 신고유형 및 운송정보 국제비교.....	87
〈표 Ⅳ-2〉 수입신고서의 화물정보 국제비교.....	89
〈표 Ⅳ-3〉 수입신고서의 관세액 계산 국제비교.....	91
〈표 Ⅳ-4〉 수입신고서의 요건확인 국제비교.....	93
〈표 Ⅳ-5〉 수출신고서의 신고유형 및 운송정보 비교.....	94
〈표 Ⅳ-6〉 수출신고서의 화물정보 비교.....	96
〈표 Ⅳ-7〉 수출신고서의 수출요건확인 비교.....	97

그림 목차

[그림 II-1] 우리나라 수입통관절차.....	11
[그림 II-2] 우리나라 수출통관절차.....	19
[그림 III-1] WCO CDM 예시.....	28
[그림 III-2] 일본의 일반적인 수입통관절차.....	50
[그림 III-3] 호주 수입통관절차	62
[그림 III-4] 호주 수출통관절차	68
[그림 III-5] 영국 수입통관절차	74

I. 서론

- 전 세계의 통관환경은 무역자유화와 원활화가 IT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빠르게 변화되고 있음
 - 국제무역규모의 증대와 함께 자유무역을 위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급증하는 등 현대의 세계 통상환경의 변화는 이와 관련한 수출입물품의 통관절차에서의 다양한 요구 변화를 필요로 하게 되었음

- 비관세장벽의 일종인 복잡하고 까다로운 통관절차는 국제무역의 원활화와 교역환경의 예측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이러한 복잡한 통관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통관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세관통관으로 상품의 원활한 흐름에 의한 무역량을 증가시키고 국제적으로 통일화된 방법으로 불필요한 무역제한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음
 - 이에 따라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는 교토협약 개정의 정서에서 통관절차의 현대적인 국제표준규정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세관 통관절차를 표준화하고 관세장벽 등의 무역장애 제거를 요구하는 한편, 통관절차의 간소화, 신속화, 표준화를 요구하고 있음

-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원활화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세관행정 간 수출입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표준화된 세관 신고항목(CDM: Customs Data Model)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운용방안이 중요하게 되었음
 - CDM은 세관 신고항목을 표준화한 데이터 모델로 국가간 효율적인 수출입정보의 교환체계임
 - 수출입무역거래에 사용되는 정보의 내용과 항목을 국가간, 지역간, 국제적으로 표준화하고 간소화하여 공통적인 핵심항목을 바탕으로 공통데이터 요소를 통일하고

자 함

- 특히, CDM은 국가간 데이터 교환을 가능하게 하여 상대국 세관의 수출정보가 수입국 세관의 수입정보로 화물도착 전에 공유되어 활용되므로 보안 강화와 위험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
- 그러나 WCO의 CDM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들은 개정교토협약의 테두리 내에서 수출입신고 서식 및 항목을 서로 다른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 한편, 우리나라의 수출입통관제도는 신속통관을 위한 통관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신고서류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 우리나라는 수입신고서 수입신고서와 별도로 가격신고서, 용도세율신청서, 관세감면(분납)적용신청서, 협정세율적용신청서 등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입통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입 및 수출신고서 작성 항목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수출입신고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수출입신고서에 초점을 두고 우리나라의 서식과 주요국의 서식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수출입신고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출입통관절차에 따른 수출입신고서의 기재항목을 정리함
 - 제Ⅲ장에서는 개정교토협약 및 WCO의 CDM의 내용을 검토하고 미국, 일본, 호주, 영국 등 4개국의 수출입통관절차 및 수출입신고서 항목을 조사함
 - 제Ⅳ장에서는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수출입신고서 항목을 각각 비교·분석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함

II. 우리나라의 수출입신고서식

1. 수입통관절차 및 수입신고서식

- 우리나라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수입화물의 화주가 신고하고 세관장이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른 적법성을 검토하여 수리하는 제도하에, 원칙적으로 화주가 납부할 세액을 스스로 결정하고 신고수리 전 또는 후에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함

가. 수입통관절차

- 우리나라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수입신고, 신고서 처리, 수입신고수리, 세금 납부의 수입통관절차를 거침
- 수입신고인인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수입화주 또는 관세사가 전자문서로 수입신고서를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제출함
 - 관세법상 수입화주는 물품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자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또는 송품장에 기재된 수하인,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 등으로 함
- 수입신고서는 ① 물품검사와 심사, ② 심사 또는 ③ 전자통관심사의 세 가지 방법으로 구분되어 처리됨
 - 제출서류의 구비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물품의 품목분류 및 관세율 적용의 적정 여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신청의 적정 여부 등을 심사함
 - 물품검사란 수입신고된 물품 이외에 은닉된 물품이 있는지 여부와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검사대상물품에 따라 발취검사, 전량검사, 분석검사의 방법을 취함

– 검사비용은 수입업체별 법규준수도, 검사적발실적, 원산지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신고사항을 검토한 결과 신고서에 의한 심사나 물품검사가 필요한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통관 적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신고서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통관을 보류 또는 신고서를 각하 또는 취하할 수 있음

○ 세관장은 신고서 항목의 기재사항이 미비되거나, 신고서 심사결과 첨부서류가 누락되거나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등은 신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신고서 기재사항 또는 신고서 제출서류 등 중요한 사항이 미비되어 보완이 필요하거나, 법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 위반 또는 국민보건 등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통관이 보류될 수 있음

○ 세관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수입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은 신고를 각하할 수 있으며, 수입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변질·손상물품 등을 해외공급자 등에게 반송하기로 한 경우,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물품이 멸실되거나 세관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는 신고를 취하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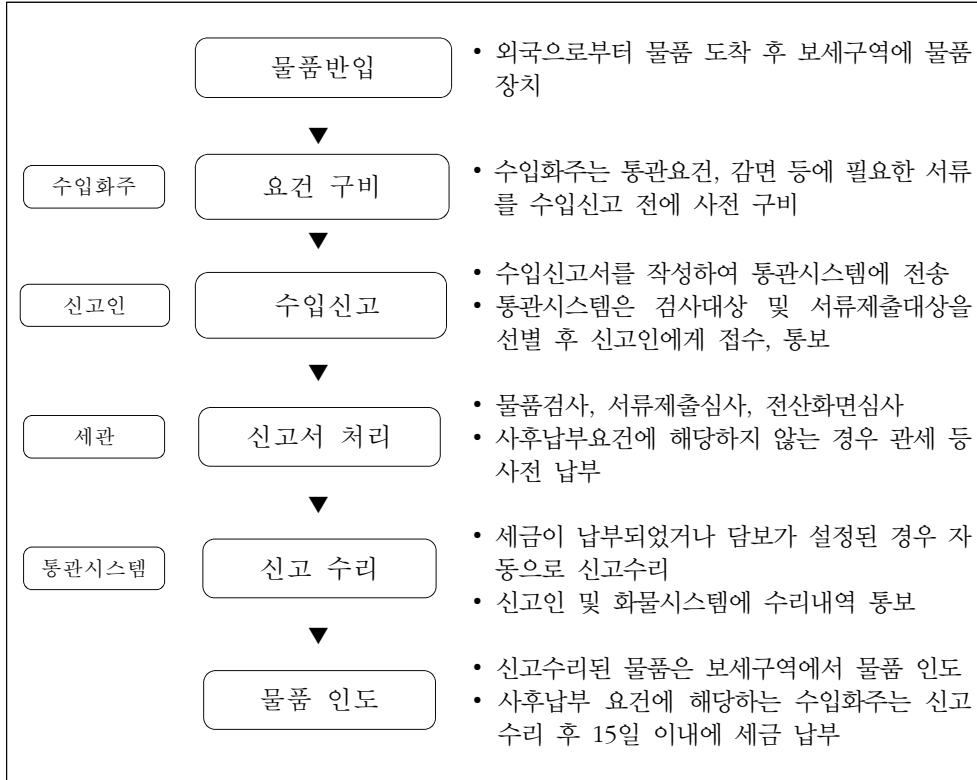
□ 수입신고한 내용이 적법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신고수리되며, 수입신고한 물품의 수입화주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물품을 반출할 수 있음

○ 수입화주는 그 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납세의무자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함

–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 수입신고를 수리

○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해당 물품검사가 종료된 후에 수입신고가 수리됨

[그림 Ⅱ-1] 우리나라 수입통관절차



자료: 관세청 홈페이지

나. 수입신고서

1) 개요

- 우리나라는 수입신고와 관세의 납부에 관한 납세신고가 일원화되어 있어,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납세신고를 하여야 함
 -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
-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서를 첨부서류 없이 전송하되, 서류제출대상 또는 세관에서 요구

하는 경우 서류를 제출¹⁾

- 수입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송품장,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등을 전자적인 방법 또는 전자 이미지화하여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함
- 해당 물품에 한하여 가격신고서, 원산지증명서, 세율추천, 감면, 검사대상 물품 등은 수입신고 전에 요건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수입신고서는 B/L 단위로 작성하며, 수입신고서 항목은 총 69개 항목으로 구성

- 이 가운데 필수항목은 분할수입신고 여부, 적하목록 관리번호, 징수형태, 신고구분, 거래구분 등으로 함

2) 수입신고서 항목

□ 신고서 처리 연번, 수입자, 수출자에 관한 항목들을 배제하고 신고유형 및 운송정보, 화물정보, 검사 및 요건확인과 납부세액의 계산 등 4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봄

가) 신고유형 및 운송정보

□ 신고납부방식 또는 부과지방식의 관세 등을 납부하는 징수형태를 구분

- 신고·수리전 납부, 부과·수리전 납부, 담보 유형에 따른 신고·사후납부, 부과·사후납부 등

□ 통관계획 부호: 출항전 신고, 입항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전, 보세구역 장치후, 도착전 부두직반출, 도착후 부두직반출, 물품반출후 수입신고, 적하목록 없는 물품(휴대품, 선용품 등)의 통관 유형을 구분

- 특급탁송화물, 간이수입통관대상은 기재 생략

□ 신고구분, 거래구분, 수입종류 항목은 필수기재항목

1) P/L신고(Paperless (P/L) declaration)는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서류에 의하여 신고하는 전자자료교환방식(EDI)으로 세관에 서류제출 없이 수출입신고하는 것을 말함

- 신고구분: 일반P/L신고, 일반서류신고, 간이P/L신고, 간이서류신고, 자동수리신청, 포괄적 즉시수리 등 일반 또는 간이신고 여부, 서류제출대상 여부를 구분
 - 일반수입신고서의 수입신고시에는 모두 'A'로 신고하며, 수입통관시스템에서 일반서류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B'로 자동처리됨. 일반 간이신고물품은 'C' 또는 'D'를 입력하고 간이신고특송물품은 'E'를 입력
 - 거래구분: 일반수입, OEM 방식의 수입, 방위산업용 시설재 및 원자재의 수입, 계획조선용 원자재의 수입,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 등 수입 '거래'를 구분
 - 종류: 내수용 일반수입, 외화 획득용 일반수입, 내수용 보세공장에 반입, 외화 획득용 보세공장에 반입, 종합보세구역에 반입, 자유무역지역에 반입 등 수입 종류를 구분
- 신고대상 화물의 입항에 관련된 필수기재항목들로, 수출국에서 물품이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입항단계에서의 운송수단과 화물의 포장 상태와 적하목록과 관련된 제반 서류에 관한 사항을 신고함
- 포장용기를 포함한 신고물품의 총중량과 KG 단위, 총포장 개수, 국내도착항, 수입 물품을 적재한 국가, 선박 또는 항공기명, 선사 또는 항공사가 발행한 Master B/L 번호, 세관에 신고된 운항 선사 또는 항공사 부호
 - B/L(AWB)번호, 적하목록상의 화물관리번호(Manifest Reference No), 전자인보이스 제출번호 및 반입일

나) 물품 정보

- 품명과 규격의 표기는 품목분류(HSK10단위), 세율(관세, 내국세)확인,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 관세감면, 분할납부 대상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는 란으로 품목별로 신고하여야 함
- 다수의 품목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품목번호 · 품명 · 상표 · 원산지가 다르면 각각 란을 달리하여 신고하여야 함
- 품명, 거래품명과 상표는 필수기재항목으로서, '품명'은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거래품

명'은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으로서 학명을 병기하여 기재할 수 있음

- 상표는 지적재산권 확인, 원산지 확인, 가격심사 등에 필요한 내용으로, 관세청에 등록된 경우는 대표 상표코드를 기재, 미등록의 경우는 "ZZZZ"로 기재하고 상표가 없는 경우는 "XXXX"로 기재
 - 상표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하는 상표명(한글 또는 영문)을 기재하며, 상표가 없는 경우에는 "NO"로 기재

□ 모델, 규격, 성분은 선택기재사항으로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및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 물품·관세환급·관세감면·과세가격 등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

- '모델'이라 함은 생산방식·방법·타입·양식 등
- '규격'이라 함은 재질·가공상태·용도·조립 여부·사이즈·정격전압·처리능력·생산년도 등.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 세번의 물품은 식용, 공업용, 사료용, 비료용, 의약용, 동물의약용, 연구·실험용, 기타 등의 용도를 영문자로 표기
 - 예를 들어, 냉동홍어의 경우 냉동 여부만 기재, 엔진의 경우는 품목분류 등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여러 가지 요소를 기재²⁾
- '성분'이라 함은 당해 물품 구성성분의 종류 및 그 함량을 나타내는 것
 - 예를 들어 청바지용 직물(품명: COTTON WOVEN FABRIC (HS 5208.11-0000))의 성분을 'COTTON 100%, 40G/m²'로 표기

□ 해당 품목의 모델·규격별 수량, 단가 및 금액을 기재

- 모델·규격별 수량을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실제 수량단위를 기재
- 해당 품목의 모델·규격별 단가를 결제통화 단위로 기재
- 해당 품목의 모델·규격별 금액을 기재

2) 홍어의 경우 '품명: SKATE(홍어, HS 0303.79-9093); 규격: FROZEN'으로, 엔진의 경우 '품명: ENGINE; 규격: GASOLIN ENGIN 2,500CC, FOR SEDAN, 1998YEAR'으로 기재

- 해당 품목의 세번부호, 과세가격, 순중량, 수량, 환급물량, 원산지 등을 품목별로 기재하며 이 가운데 세번부호와 원산지는 필수항목으로 함
 - 세번부호: 관세율표에 기재된 H.S.K. 10단위 품목번호를 기재
 - 과세가격: 미화(CIF기준 US\$) 및 원화로 기재
 - 순중량: KG단위로 물품의 포장용기를 제외한 순중량
 - 수량: 관세율표에 계기된 수량단위로 환산 기재(M: metres(미터), M2: square metres(제곱미터) 등 10개)
 -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결정 및 표시 관련사항 기재
 - 상품의 원산국(생산, 제조국), 원산지결정기준(완전생산기준, 부가가치기준, HS 2·4·6단위 변경, 가공공정기준 등), 원산지 표시 유무(포장, 현품 등), 원산지 표시방법(각인, 실크인쇄, 주형조각, 택 부착 등), 원산지표시 면제사유(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휴대품,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등)

- 원산지증명서 유무
 - 「관세법」 제232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91조에 의거, 세관장이 원산지를 확인해야 할 물품으로서, 원산지증명서 구비 여부를 기재
 -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한 경우 : Y,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대상인 경우 : X, 세관장 확인대상이 아니거나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 N

다) 검사 및 요건확인

- C/S 검사, 검사변경: C/S 결과 검사생략, 검사대상 여부와 검사방법의 변경 여부를 나타냄
 - C/S 비적용 검사생략, 수작업에 의한 검사대상, National C/S에서 검사대상/검사생략 선별, Local C/S에서 검사대상으로 선별, 수입 C/S 비적용 검사대상, National C/S에서 검사대상 선별(우범기준 등에 의한 검사지정), C/S 비적용대상 등으로 구분
 - 검사대상을 검사생략으로, 검사생략을 검사대상물품으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검

사방법을 표시

- 사후확인기관: 수입물품이 사후확인대상인 경우 당해 수입요건확인기관의 부호를 3개 까지 기재
- 수입요건확인: 법 제226조에 의한 타 법령에 의한 수입요건확인 관련사항
 - 「약사법」, 「식품위생법」, 「검역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 수입요건확인 관련 법령과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약품등), 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 미곡수입허가서 등의 수입요건확인서류명 및 발급일자를 나타냄
 - 타 법령에 의하여 수입요건에 대하여 허가·승인 등을 받은 요건확인서의 허가·승인 번호
 - 통관단일창구를 통해 요건신청과 동시 또는 요건승인 전에 신고할 경우 요건신청서 신청번호와 신청일

라) 납부세액의 계산

- 가격신고서 유무: 가격신고서 제출(EDI전송) 여부를 기재
 - 수입신고를 할 때 수입관련거래와 과세가격 산출내용에 관한 사항을 가격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정부조달물품, 관세 및 내국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 물품 등 가격신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경우 'N'를 표기
- 품목별 세액 계산: 관세와 각종 내국세의 종류와 각 세종에 해당하는 세율구분과 세율을 기재하고 품목별 해당 세액을 기재
 - 특수세액 계산근거: 주정인 경우 알코올도수를 기재, 비디오 테이프 등 분당으로 계산되는 종량세인 경우 난별 총분수 기재
 - 세종(세율의 종류): 관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 세율: 종량세인 경우 단위당 세액 기재

- 감면율 및 감면분납부호: 해당 세목의 감면율 및 감면 또는 면세 여부를 표시
- 결제금액, 과세가격, 운임 및 보험료 등 과세가격 조정금액, 관세 및 내국세의 종류 등 총납부세액 계산에 관련한 내용을 신고서 하단에 나타냄
 - 결제금액: 송품장 등의 내용에 근거하여 인도조건, 통화종류, 결제금액, 결제방법 순으로 기재
 - 신고서 총과세금액을 미화 및 원화 및 통화종류에 대한 관세청 고시환율을 신고
 - 실제 지급한 운임을 원화로 환산하고 보험료에 대한 통화종류 및 금액을 기재
 - 품목 전체에 영향을 미친 가산금액과 공제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기재
 - ‘세종(합계)’란에는 관세 및 내국세의 종류를, ‘세액(합계)’란에는 세종별 세액합계를, ‘총세액합계’란에는 총세액 합계를 기재
 - 총부가가치세과표: 총부가세과세과표 및 총부가세면세과표

2. 수출통관절차 및 수출신고서식

가. 수출통관절차

- 수출신고는 수출신고, 수출신고 수리, 화물 적재 등의 순서로 이루어짐
- 수출물품의 화주 또는 관세사 등 수입신고인이 전자문서로 수출신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
 - 신고한 내용에 대해 전산으로 오류사항을 통보받거나 신고내용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번호가 부여된 후에는 정정절차를 거침
 - 신고번호가 부여되기 전까지는 수정한 내용을 포함한 신고자료를 당초의 제출번호에 의하여 다시 전송
 - 신고번호가 부여된 후에 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출신고정정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통관지 세관장 또는 신청인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전송하고 그 표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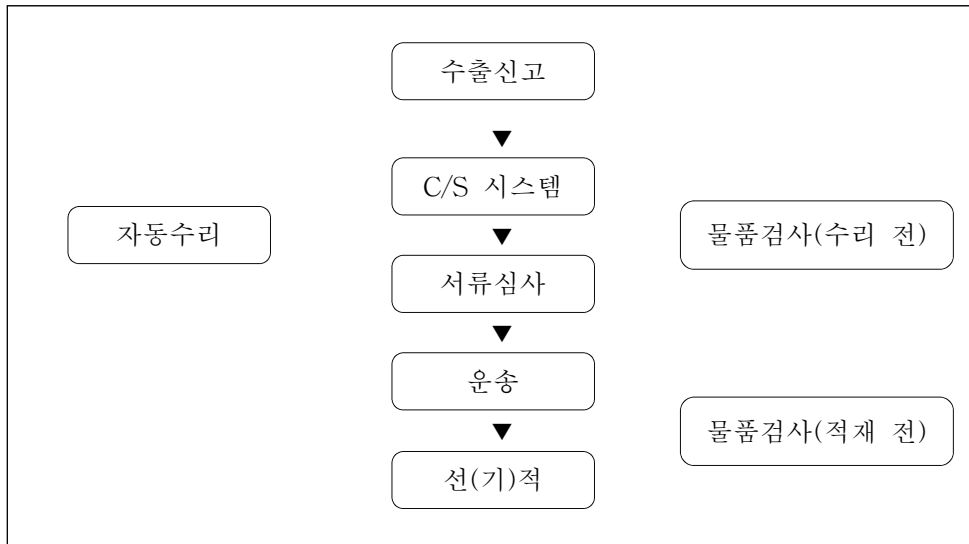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수출신고수리 방법은 사안에 따라 시스템에 의한 자동수리, 세관직원에 의한 심사 후 수리 및 검사 후 수리로 나누어 처리됨
 - 자동수리: 검사대상 또는 서류제출대상이 아닌 물품은 수출통관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수리됨
 - 서류제출 대상물품은 법 제226조(허가, 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중 수출신고 수리 전에 요건구비의 증명 이 필요한 물품,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의 재수출 또는 재수출조건부로 수입통 관된 물품, 수출자가 재수입시 관세 등의 감면, 환급 또는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서류제출로 신고하거나 세관검사를 요청하는 물품 등으로 함
 - 심사 후 수리: 자동수리대상이 아닌 물품 중 검사가 생략되는 물품으로 세관직원이 신고내용을 심사하고 수리함
 - 검사 후 수리: 현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우범물품으로 선별된 물품 중 세관장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물품에 대하여 수출물품을 실제로 검사하고 수출신고를 수리

- 수출신고서를 수리한 때에 수출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물품을 반출함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함

- 수출화주는 수출신고필증, 수출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수출거래관련 계약서 등을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함

[그림 II -2] 우리나라 수출통관절차



자료: 관세청 홈페이지

나. 수출신고서

1) 개요

- 수출신고서 서식의 최근 개정은 2012년에 이루어졌음
 - 2005년 수출 수량신고를 신설하고, 2012년 수출신고가격을 자율정정 제외대상으로 추가

2) 수출신고서 항목

- 전체 57개 항목으로, 수출신고인, 구매자, 신고번호, 신고일자 등은 생략하고 신고유형 및 운송수단, 화물 관련 기재사항으로 나누어 살펴봄

가) 신고유형 및 운송정보

- 신고구분, 거래구분, 수출종류, 결제방법 등 수출거래에 관한 필수항목을 기재
 - 신고구분: P/L, 서류제출, 반송 등 해당 코드를 기재
 - 거래구분: 일반형태수출 등 해당 코드를 기재
 - 수출종류: 일반·보세공장수출 등 해당 코드를 기재
 - 결제방법: L/C, 단순송금 등 해당 코드를 기재하고, 신용장거래방식에 의한 수출인 경우에는 L/C번호를 기재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은행참조번호 또는 계약서 번호를 기재
 - 반송사유: 반송물품의 경우에는 반송사유부호를 기재

- 목적국, 적재항, 출항예정일자 등 운송수단과 출항정보를 기재
 - 선박회사(또는 항공사), 선박명(또는 항공편명), 적재예정 보세구역 운송형태, 물품 소재지 등 출항정보
 - 운송형태란에는 선박, 철도, 차량, 항공기, 복합운송 등 운송수단 및 벌크, LCL 컨테이너, FCL 컨테이너 등 운송용기를 구분하여 표기

나) 화물정보

- 수출물품의 물품상태, 품명, 거래품명, 상표명을 반드시 기재
 - 물품상태란에 신제품인지 중고품인지를 표시하고 거래품명은 상업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하는 품명을 기재
 - 품명: 관세율표상의 품명으로, 부분품 및 부속품인 경우에는 「~PART」 또는 「PART FOR~」로 일괄 기재하여야 하며, 해외현지 조립방식 물품의 경우에는 “CKD” 또는 “SKD”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품명을 기재
 - 상표명: 실제 사용하는 하나의 상표명을 기재하고 상표가 다른 경우에는 란을 추가하여 신고

- 모델·규격과 성분은 세관 심사에 필요한 내용으로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품목

의 모델·규격별로 수량, 단가, 금액을 입력

- 원·부자재의 단위실량(Raw Material) 등 환급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 그 앞에 “〈RM〉”라고 기재한 후 영어 대문자로 내역을 기재

□ 관세율표상 10단위 세번부호, HS코드별 수량, 순중량 및 포장개수, 신고가격, 송품장부호 및 재수출조건부 수입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입신고번호를 기재

- 신고가격은 FOB기준의 원화가격으로, 결제조건이 FOB가 아닌 경우 FOB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함. 선박·항공기를 수리 후 수출하는 경우 수리·개조로 인한 가득액을 신고가격으로 하며, 선박·항공기가 아닌 기타의 경우 물품가격과 가득액을 합산

□ 원산지란에는 수출물품의 원산지와 원산지결정기준 및 대외무역법상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기재함

- 원산지결정기준: 완전생산기준, 부가가치기준(집적법 또는 공제법), 가공공정기준, 조합기준 및 세번변경기준의 각 해당 부호를 기재
- 원산지 미표시, 현품 및 포장, 포장에만, 현품에만 표시했는지 여부를 구분

다) 수출요건확인

□ 검사희망일: C/S구분은 세관에서 기재하고 세관검사 희망일을 기재

□ 수출요건은 수출승인, 전략물자수출허가 등의 수출요건별 수출요건확인서류명, 관련 법령부호로 해당 내용을 확인하도록 함

- 수출법령별 발급서류는 수출승인서(방사성물질 등), 수출승인서(핵물질), 미곡수출추천서, 수출동물검역증명서, 문화재국외반출허가서 등이 있음
- 타 법령에 의한 수출요건확인서의 허가 및 승인 번호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략물자수출허가서의 경우 수출허가의 종류를 각 해당 코드로 구분하여야 함
 - － 개별수출허가, 일반포괄수출허가, 특정포괄수출허가, 수탁가공포괄수출허가, 전략물자 비해당 판정 등

라) 수출결제금액

- 수출신고물품 전체의 총중량, 총포장개수, 총신고가격, 결제금액란을 통해 수출결제금액 내역을 신고함
 - 결제금액에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된 경우 해당 금액을 원화로 기재하여야 함
 - 결제금액은 송품장의 내용을 근거로 인도조건, 통화종류 및 실제 결제금액을 기재함

Ⅲ. 주요국의 수출입신고서식 검토

1. 국제규범

- 수출입신고서류와 관련된 국제규범으로는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의정서(개정교토협약, Protocol of amendment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가 있음

가. 개정교토협약³⁾

- 교토협약(Kyoto Convention)의 공식명칭은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으로 1973년 교토에서 개최되었던 관세협력이사회 총회에서 채택
 - 세관절차의 단순화와 조화를 통해 무역 확대에 기여
 - 1973년 관세협력이사회 교토 총회에서 채택되어 1999년 WCO(세계관세기구) 총회에서 개정의정서를 채택
- 기존 교토협약은 세관절차 간소화에 대한 국제규범의 강화, 교토협약의 구속성 강화, 현대의 발달된 정보기술의 반영의 필요로 인해 개정
 - 관세장벽, 수량제한 등 전통적인 무역장벽이 축소되는 반면에 통관 등 세관절차의 복잡 및 부조화로 인한 무역장애가 상존하여 이에 대한 국제적 관심 제고
 - 기존 교토협약은 모든 규정에 대하여 유보를 허용하므로 체약국들은 협약에 가입하

3) 정재호, 『주요국의 통관제도 및 개정교토협약 유보사항 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9. 8, pp. 7~11

더라도 핵심적 조항은 유보하고 있어 가입국이 필수적으로 수락하여야 하는 내용을 일반부속서로 편입하고 선택적으로 수락가능한 부분은 특별부속서로 편입하여 협약의 구속성 강화 필요

- 정보기술의 최대 활용과 위험관리, 심사통제와 같은 현대적 기법 채택

□ 개정교토협약의 주요 내용은 통관절차의 간소화, 신속화, 국제표준화를 비롯하여 관세의 감면, 최혜국대우, 정보기술의 이용이 있음

- 통관절차의 간소화분야에서 세관은 최소한의 신고사항만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통관절차의 국제표준화에서는 표준화된 신고양식을 사용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을 사용하는 컴퓨터 응용프로그램의 도입에 대한 내용 포함

〈표 Ⅲ-1〉 기존 교토협약과 개정교토협약의 비교

	구성	의무가입 여부	성격
기존 교토협약	- 협약본문 - 31개 부속서	모든 조문 유보 가능	선언적
개정 교토협약	- 협약본문 - 일반부속서 - 10개 특별부속서(25개 장)	일반부속서는 의무가입 특별부속서는 선택가입	구속적

자료: 기획재정부

□ 개정교토협약은 개정의정서, 기존협약, 일반부속서 및 10개의 특별부속서로 구성

- 개정의정서(Protocol of Amendment)에는 개정취지, 의정서 수락 및 발효조건 등에 관해 규정하며 협약 본문, 일반부속서, 특별부속서를 부록으로 첨부
- 협약본문(Body of the Convention)은 의무적 수락사항으로 협약의 가입과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하며 협약이 추구하는 목표, 협약의 관리, 협약의 가입 및 탈퇴, 규정의 수락 및 유보, 분쟁해결, 협약의 개정 등의 내용 포함
- 일반부속서는 모든 가입국이 반드시 수용해야 할 핵심적인 사항을 담고 있음
 - 일반원칙, 정의, 통관 및 기타 세관절차, 관세 및 제세, 담보, 세관통제, 정보기술

의 적용, 세관과 제3자와의 관계, 세관이 제공하는 정보, 처분 및 재결, 불복신청 등의 10개의 장으로 구성

- 특별부속서는 특별한 세관절차만을 한정적으로 규정하며 10개의 각 특별부속서는 다시 1~5개씩 총 25개의 장(chapter)으로 구성
 - 장별로 수락 가능하며 특별부속서의 모든 조문은 표준(Standard)과 권고관행(Recommend Practice)으로 구성되어 권고관행에 대해 유보 가능
- 이행지침(Guideline)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협약의 구성부분은 아니지만 협약의 각 조문에 대한 해설과 대표적 적용사례 등을 제시함으로써 협약의 해석과 적용을 위한 중요한 협약 해석의 근거가 될 수 있음

□ 일반부속서에서 물품신고서의 물품신고 내용은 관세당국이 정하고 물품신고 서류양식은 국제연합의 설계양식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

- 자동화된 통관절차의 경우, 전자방식으로 제출되는 물품신고 양식은 정보기술에 관한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에 규정된 전자정보교환에 관한 국제표준에 기초하여야 함
- 관세당국이 물품신고에 요구되는 정보는 관세 및 제세의 부과와 징수, 통계 작성 및 관세법령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

□ 신고인으로부터 이미 제출된 물품신고서의 정정 요청을 받은 경우 아직 물품신고의 심사 또는 물품의 검사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관세당국은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

- 물품신고의 심사가 개시된 후에 물품신고의 정정 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관세당국은 신고인이 제시한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신고인에게 이를 허용하여야 함

□ 또한, 관세당국이 물품신고 또는 관세 및 제세 부과 오류로 인하여 법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것보다 적게 관세와 제세 금액을 징수 또는 회수한 경우 관세당국은 오류를 정정하고 적게 납부된 금액을 징수함

- 관련 금액이 국내 법령에 규정된 최저금액보다 적을 경우 관세당국은 그 금액을 징수 또는 회수하지 아니함

- 수입에 대하여 규정한 특별부속서 B는 서류제출에 대해 국내법령이 내수용 통관에 필요한 물품관련 상세 사항을 제공한다는 조건하에 물품이 표준적인 물품신고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신고될 수 있도록 규정하도록 함
- 개정교토협약은 물품신고서 및 부속서류의 표준화 및 간소화를 통해 세관이 최소한의 신고사항을 요구하게 하며 전자적인 수단으로 세관신고 및 자료제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세계관세기구는 세관신고사항을 국제적으로 통일하는 관세 데이터 모델(Customs Data Model)작업을 별도로 추진하여 신고의 통일과 조화를 도모하고 있음

나. WCO 표준 통관정보(CDM, Customs Data Model)

- 개정교토협약에 따라 최소한의 자료 제출을 위하여 세관절차에 정보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의 도입과 제출 자료의 표준화를 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과 신속통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이 마련됨⁴⁾
 - OECD, World bank, WTO, WCO, EU는 오랫동안 무역원활화와 신속한 통관절차를 위해 ICT를 사용할 것을 권고해왔음
 - 개정교토협약 일반부속서 표준 7.1, 6.9, 3.21과 3.18에서 세관의 통관절차 운영에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정보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음⁵⁾
 - 1996년 G7국가 정상들의 모호하고 불필요한 표준화되지 않은 정보 제출은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인식하에, 세관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표준화하는 전문가 그룹을 창설
-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WCO 주도하에 국제무역에 관하여 관세당국에 제출하는 수출

4) Gareth Lewis, "The Impact of ICT on customs," *WCO, World Customs Journal*, Volume 3, Number 1, April 2009, pp. 3~5

5) WCO SAFE Framework 6.2절에 정보기술/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언급

입 및 운송 자료에 관한 공통 방침을 마련하고자 표준통관정보 구축작업이 시작됨

- 2002년 WCO 전담팀 업무의 일환으로 서류제출 요건에 관한 국제표준을 마련하기 시작, 2004년부터 WCO 전략그룹에서 국제표준의 구현 및 실행업무에 착수

□ WCO CDM은 무역거래와 국경보안의 모든 이해관계자들 간의 표준화된 정보 교류방법을 제공하는 구조화된 정보체계로서, 효율적인 국경보안, 법규준수비용의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음

- 통관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제출하는 전자정보의 표준 및 통일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단순히 통관정보의 목록을 넘어 EDI와 메시지를 실제 모든 당사자들 간의 무역거래에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⁶⁾
- 사전에 통관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법규 준수를 위한 공통의 방침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국경보안을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신속통관에 기여, 중복 또는 불필요한 제출서류를 제거, 통관하는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줄이고 법규준수비용을 절감하고 관세당국 간의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음

□ 법정 제출서류 양식과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정보교환) 메시지가 기본으로 사용되었으며, 개정교토협약의 기준과 기업용 UN/CEFACT⁷⁾의 정보분석 절차와 방법을 반영하여, 실무용 통관정보 예시를 제공할 예정

□ 산출물은 WCO에서 정한 표준 정보 분류와 정보명, UN/TDED⁸⁾ 정보 연계번호 및 사용자의 필수 또는 선택가능 여부 구분, 정보입력 형식, UN/EDIFACT⁹⁾코드 등의 내용

6) Gareth Lewis(2009), p. 6

7) 'United Nations Centre for Trade Facilitation and Electronic Business', UN의 무역원활화 및 전자업무 촉진기구

8) UN/CEFACT에서 공표하여 널리 상용되고 있는 수출입정보 디렉토리(Trade Data Element Directory), 무역거래당사자인 은행, 소매업자, 운송업자, 여행자/관광객, 보험회사 및 관세당국 등의 무역거래와 관련된 약 2,000개의 정보항목

9) 'United Nations Electronic Data Interchange for Administration, Commerce and Transport', 세관, 무역거래 및 운송에 관한 UN 전자정보

으로 구성되며, 2005년부터 3년마다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Version 1은 수출입물품과 화물, Version 2에서 유럽의 역내운송 절차를, Version 3에 요건확인 등을 추가함

– Version 3.0에서는 농산물 또는 건강보험 관련 기관의 정보를 포함시켰으며, 현재 Version 3.1까지 개발된 상황임

□ 관세법규 준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하도록, 세관의 요구 자료를 추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있음

○ WCO 회원국들의 표준정보의 변경은 엄격한 통제하에 이루어지며, 정보항목의 추가는 해당 국가에서 통관절차에 필수적인 항목으로서 WCO CDM의 기존 항목에서 삭제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

– Version 2.0에서는 264개의 항목으로 구성됨

[그림 III-1] WCO CDM 예시

WCO ID	WCO details		UN/EDD details	Usage indicators for the WCO Customs Data Model																Format	WCO details																	
	Name	Definition		Doc	Stat	Doc	Stat	Doc	Stat	Doc	Stat	Doc	Stat	Doc	Stat	Doc	Stat	Doc	Stat		Code elements	Synonyms																
001	Declaration name	Code specifying the name of a shipment.	Declaration	M	1	M	1	M	1	M	1	M	1	M	1	M	1	M	1	M	1	M	1	M	1	M	1	M	1	M	1	M	1	M	1	an..3	SEI/ACT codes	
002	Declaration reference number	Reference number identifying a specific document.	Declaration	M	1	M	1	M	1	M	1	M	1	M	1	M	1	M	1	M	1	M	1	M	1	M	1	M	1	M	1	M	1	M	1	an..35		
003	Additional document reference number	Identifier of a document providing additional information.	AdditionalDocument	C	1	C	1	C	1	C	1	C	1	C	1	C	1	C	1	C	1	C	1	C	1	C	1	C	1	C	1	C	1	C	1	an..35		
004	Reservation No. of shipment	Reference number assigned by a carrier or its agent to identify a specific occurrence.	Consignment																																an..30		Booking reference number	

자료: WCO

2. 미국의 수출입신고서식 검토

가. 미국의 수입통관절차 및 수입신고서

- 미국은 수입화물 도착시 통관항에서 세관장에게 통관서류를 제출하여 세관에 의해 그 물품의 인도가 허가되고, 관세를 납부한 뒤에 법적으로 통관이 인정됨

- 미국의 수입통관제도는 관세의 납부시점에 따라 일반수입통관, 보세통관, 임시통관으로 나누어지며 대부분의 수입에 적용되는 일반수입통관(Entry for Consumption)은 크게 수입통관단계와 사후심사단계로 이루어짐
 - 미국의 수입통관단계는 Entry(화물반입신고)제출과 Entry Summary(납세신고)로 구분됨
 - 수입신고서류는 분리제출이 일반적으로서 Entry 제출로 물품을 반출한 뒤 근무일기준 10일 이내에 관세와 함께 Entry Summary를 제출
 - 이에 반해 수입하는 때에 납세신고를 하는 결합제출은 주로 쿼터폼목 등에 적용되는 방식으로서 Entry와 Entry Summary를 제출한 뒤 이를 검토받아 관세를 납부하고 필요한 경우 물품검사를 거쳐 반출되는 방식임
 - 사후심사단계는 Post Entry Review(사후세액심사)와 Liquidation(정산)으로 구분됨¹⁰⁾

- 한국과 미국의 수입통관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물품신고와 납세신고가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임
 - 우리나라는 물품신고와 납세신고를 동시에 수행

10) 한국무역협회 FTA무역종합지원센터, 『한-미FTA 검증 대응전략』, 2013. 3, p. 84

1) 수입통관절차

- 미국의 수입통관은 '적하목록(Manifest) 제출 → 화물반입신고(Entry) 제출 → 물품 반출 → 개선한 관세와 함께 납세신고서(Entry Summary) 제출 및 예정 관세액 납부 → 사후세액심사 → 최종 관세 정산'하는 순서로 이루어짐

가) 적하목록(Manifest) 제출

- 운송회사는 세관 입항신고 시 적하목록을 함께 제출
 - 세관은 적하목록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게 물품이 장치되고 보세운송되는지를 확인하고 수입자가 제출한 Entry 기재내용의 상호일치 여부를 확인

나) 화물반입신고(Entry 제출)

- 우리나라의 화물반출입신고와 같은 성격으로 수입물품의 반출을 위한 절차로, 물품이 미국에 도착 후 수입자는 근무일기준 15일 이내 화물반입신고
 - 15일 이내 화물반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세관장 명령을 발동하여 세관창고로 화물을 강제로 옮긴 후 매각 또는 폐기
 - 신고유형은 2천달러를 기준으로 일반신고(Formal Entry)와 간이신고(Informal Entry)¹¹⁾로 구분됨
 - 세관양식 CBP Form 3461 (Entry/Immediate Delivery)은 도착일자, 도착항구, Entry 번호, 원산지 등 총 28개 항목에 대해 부호 등으로 표시하여 신고

다) 물품검사(Entry Examination) 및 반출

- Entry 기재내용에 의거, 그 상품의 위법성 가능 여부를 고위험 혹은 저위험 물품으로 선별하여 고위험 물품은 집중 현물검사 실시
 - 저위험 물품은 일반검사 대상으로 서면검사에 그침

11) 간이신고는 담보제공과 사후정산절차가 생략됨

- 현물검사 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관계 법령에 따른 검사장소로 이동하여 수량부족 여부, 선적검사 등 법규 위반 여부를 검사

□ 검사 후 세관직원이 Entry에 서명함으로써 반출 허가

- 반출 허가 조건으로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담보금액은 관세 및 제 수수료의 예상 납부 금액으로 과거 담보조건의 준수 성적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결정 및 동의¹²⁾
- 통상 관세법인이 Customs Bond를 발행하여 세관에 제공¹³⁾

라) 납세신고서(Entry Summary) 제출 및 예정 관세액 납부

□ 우리나라의 수입신고서(납세신고서)와 같은 성격으로 관세당국이 세액을 산정하고 수입물품의 통계 및 기타 법령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

- 수입자는 수입화물 반출 후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추정된 관세 납부(Deposit)와 함께 Entry Summary를 세관에 제출해야 함
- 세관양식 CF7501 (Consumption Entry), CF7502 (Warehouse Entry) 등을 사용
- Entry Summary에는 Entry 번호, 원산지, 상품명세, 관세율, 관세, 비용 등 총 43개 항목을 부호, 숫자 등으로 표시

□ 수입자는 납세신고서를 제출하는 때 물품의 세번분류, 과세가격, 관세액 모두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예정관세액을 납부

마) 사후세액심사(Post Entry Review)

□ 납부세액의 정확성과 통관적법성의 준수 여부 등을 통관 후에 사후심사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¹⁴⁾

12) C.F.R 113.11

13) 담보는 계약상 의무의 연대보증으로 보증인은 보험회사 및 기타 법인체 등(C.F.R 113.35)

14) 통관단계에서는 신고서 기재사항의 적합성 등 필요한 최소 사항만을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의 방법으로 심사

- 세관은 Entry Summary를 심사하여 세액 확정, 통계 작성, 기타 쿼터 등의 제반 규제 법령 등과 일치여부를 심사

바) 정산(Liquidation)

- 세액의 정산 및 최종 확정을 위한 단계로, 수입업자가 개산하여 납부한 관세액 (Estimated Duty)과 심사결과 납부해야 할 세액(Liquidated Duty)을 비교하여 과잉납부액은 환급하고 부족액은 추가 징수하는 절차
 -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 과세가격, 관세 등을 검토하고 기타 추가정보를 수집한 후, 수입신고를 수리하거나 경정하여 관세를 정산하고 통관을 완료
 - Liquidation은 보통 Entry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함이 원칙¹⁵⁾이나 세관에서 자체적으로 정산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CBP Form 4333A를 통해 수입자에게 통보하여 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
 - 정산된 관세라도 최초 정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오류, 적용법령의 오류가 발견될 경우 관세의 재정산(reliquidation) 실시¹⁶⁾
 - 정산에 의해 추가된 관세 등에 대해서는 재무부 고시 이자율이 적용¹⁷⁾
- 미국 세관의 정산 이전에 세액 적용이 잘못되었음을 수입자가 인지한 경우 사전에 정정 신고를 통해 추가로 관세 납부 가능
 - 사후납세신고 정정(PEA: Post Entry Amendment) 프로그램을 통해 정정된 납세신고서(Revised Entry Summary)와 기존의 납세신고서(Entry Summary)를 함께 제출하여 추가로 관세를 납부할 수 있음¹⁸⁾

15) 보통 10개월 또는 314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0일 이내에 재정산할 수 있음

16) USC sec.1501

17) USC 1505(b), CFR 24.3a

18) 한국무역협회 FTA무역종합지원센터, 『한-미FTA 검증 대응전략』, 2013. 3, pp. 85~87

〈표 Ⅲ-2〉 미국의 통관절차

유형	수입신고(entry)	납세신고(entry summary)	정산(liquidation)
의의	담보(customs bond) 제공 및 물품반출	세액 납부(deposit)	관세당국이 심사를 통해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확정
서식	CF 3461	CF 7501	CF 4333A 또는 EDI notice
기한	물품도착 후 15일 이내	수입신고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수입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자료: 정재호(2012), p. 26

2) 수입신고서 항목

- 미국은 물품신고와 납세신고가 분리되어 물품 도착 후 15일 이내¹⁹⁾ 화물반입신고서인 CBP Form 3461(Entry/Immediate Delivery)을 제출하고, 화물반출 후 10일 이내 납세신고서인 CBP Form 7501(Entry Summary)을 제출

가) 화물반입신고서(Entry/Immediate Delivery)

- 화물반입신고는 서면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는 방식과 통관자동화시스템(AMS) 또는 관세사 전용 인터페이스(ABI)를 통하여 전송하는 방식이 있음
 - 화물반입신고서(CBP Form 3461) 외에 적하목록(CBP Form 7533), 통관할 수 있는 권리의 증명서, 상업송장(견적송장), 포장명세서, 기타 물품의 반출 허가를 위하여 세관장이 요구하는 서류 제출²⁰⁾
- 화물반입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정보는 모든 신고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는 신고서 처리연번과 수입자 및 수출자 관련사항 외에 크게 입항정보와 화물정보로 구분

19) 해상운송의 경우 본선이 미국 통관항에 도착하기 5일전 이후부터, 항공운송의 경우 AMS를 통하여 적하목록을 사전제출한 이후부터 사전신고도 가능

20) 통합무역정보서비스-트레이드네비(<http://tradenavi.or.kr>), 국가별 시장정보, 미국의 수입통관절차

- 신고서 상단에 화물의 수입형태를 확인하는 2자리 코드를 기재
 - 무관세 및 일반관세, 쿼터, 반덤핑 및 상계관세, 자유무역지대, 정부물품 반입 등 수입의 종류 및 물품에 따라 코드 구분

- 운송정보는 입항일, 반입항 코드, 운송인코드, 항해 번호, 반입장소, 선(기)명, 양륙항 코드, 적하목록번호, G.O. 번호, B/L 번호의 내용을 포함
 - 입항일은 화물이 미국 통관함에 입항하는 날짜이며 사전신고의 경우에는 입항예정일을 의미하며 운송수단별로 규정된 입항일을 기재
 - 반입항은 화물을 반출하고자 하는 미국의 통관항구로 HTS(Harmonized Tariff Schedule)에 명시된 코드를 기재
 - 운송인코드는 운송형태에 따른 운송인의 식별코드로, 항공운송의 경우 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국제항공수송협회)에서 정한 항공사별 알파벳 코드를 기재
 - 민항기나 항공사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 표기
 - 해상운송 및 항공운송 이외의 경우에는 공란
 -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경우에는 “FTZ” 삽입 후 4자리 자유무역지역코드 기재
 - 운송인 코드와 함께 해상운송은 항해번호, 항공운송은 항공기번호, 육상운송의 경우 이동번호(trip number)를 기재
 - 화물의 반입장소는 검사가 가능한 장소의 코드를 기재하며 항공화물의 경우 항공기번호를 기재
 - 반입장소 코드의 기재가 불가능한 경우 화물이 반입된 장소명을 기재
 - 양륙항은 수입화물의 양하가 이루어지는 미국의 항구코드를 기재하며 코드 대신 항구명을 기재할 수 없음
 - 해상운송, 항공운송 및 철도운송이외의 운송수단에 의해 수입된 화물에 대해서는 공란으로 두며,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수입된 화물에 대해서도 역시 공란으로 둬

- 화물정보는 총금액, 상품명세, 수량, HS 코드, 원산지, 개별담보 여부로 구성

〈표 Ⅲ-3〉 미국 화물반입신고서에 기재되는 정보

구분	종류	상세
신고 유형 및 운송 정보	수입형태(Entry Type Code/Name)	화물의 수입형태를 확인하는 2자리 코드
	입항일(Arrival Date)	화물이 미국 통관항에 입항하는 날짜 - 사전신고의 경우 입항예정일
	수입일(Elected Entry Date)	화물수입신고일
	반입항(Port)	미국 통관항구 코드 기재
	운송인 코드(Carrier Code)	운송형태에 따른 운송인 식별 2자리 코드 - 선편 및 항공편 이외의 경우 공란
	항해번호 등(Voyage/Flight/Trip)	운송방법에 따라 선편의 경우 항해번호, 항공편의 경우 항공기 번호 등
	반입장소(Location of Goods-Code/Name)	검사 가능한 반입장소의 코드 및 반입장소명 기재
	선박명(Vessel Code/Name)	선편에 의한 수입의 경우 선박명 기재 - 선박명 대신 선박식별코드 기재 불가
	양륙항(U.S. Port of Unloading)	수입화물의 양하가 이루어지는 미국 항구 코드 기재 - 코드 대신 항구명 기재 불가 선편, 항공편 및 철도운송 이외의 운송 방식은 공란
	적하목록번호(Manifest Number)	미국 CBP에 의해 부여된 고유 식별코드
	G. O. 번호(G. O. Number)	화물이 일선보세창고에 반입된 경우 General Order 번호 기재
	B/L 코드 및 번호	Master B/L, House B/L 등 B/L 형태에 따른 알파벳 코드 및 적하목록에 기재된 B/L 번호 기재
화물 정보	총 금액(Total Value)	화물의 인보이스 금액 기재(달러화)
	상품 명세(Description of Merchandise)	물품의 내역을 간단히 기재
	적하목록 수량(Manifest Quantity)	각 B/L별 반입되는 상세수량 신고
	HS 코드(HS Number)	HTS(Harmonized Tariff Schedule)에 따른 10단위 물품분류번호 신고
	원산지(Country of Origin)	ISO 국가코드 기재
	개별 담보 여부(single transaction bond)	개별담보인 화물의 경우 "X" 표시

자료: CBP form 3461-Instruction, CBP

- 총수입금액은 상업송장상의 수입화물 금액을 달러화로 기재
- 상품명세란에는 수입화물의 내역을 간단히 기재
- 적하목록 수량은 각 B/L 단계별(Master B/L, House B/L, Sub-House B/L) 상세수량을 모두 기재
- HS 코드는 HTS에 따른 10단위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
- 원산지 규정에 따른 원산지에 대해 ISO 국가코드로 기재
- 1회용의 개별담보를 사용하는 경우 single transaction bond란에 “X” 표기²¹⁾

나) 납세신고서(Entry Summary)

- 납세신고는 수입물품의 화주 및 통관대리인이 신청하며 물품반입신고와 같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 가능
 - 납세신고서(CBP form 7501) 외에 물품의 반출이 허가된 후에 수입자 또는 대리인에게 반송된 통관관련 서류, 상업송장 등 관세를 책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²²⁾
- 납세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정보는 모든 신고서의 필수정보인 신고서 처리연번과 수입자 및 수출자 관련사항 외에 크게 입항정보와 화물정보, 납부세액의 계산으로 구분 가능
- 신고서 상단에 화물의 수입형태를 확인하는 2자리 코드를 기재
 - 무관세 및 일반관세, 쿼터, 반덤핑 및 상계관세, 자유무역지대, 정부물품 반입 등 수입의 종류 및 물품에 따라 코드 구분된 것은 물품반입신고서와 동일함
- 운송정보에는 반입항 코드, 반입신고일, 운송인명, 운송수단, 수입일, B/L 번호, 선적항,

21) 미국 세관이 자국에 입항한 선박에 벌금을 부과해야 할 때를 대비한 일종의 보증보험목적으로 미국에 기항하는 선박의 선주는 반드시 ICB(International Carrier's Bond)를 구입해야 하는데, 1회용의 Single Transaction과 지속적으로 미국에 기항하는 경우에 구입하는 Multiple Transaction이 있음

22) 통합무역정보서비스-트레이드네비(<http://tradenavi.or.kr>), 국가별 시장정보, 미국의 수입통관절차

양륙항, 반입장소, G.O. 번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물품반입신고서의 내용과 거의 동일함

- 반입항 코드, 운송인명, 양륙항, B/L 번호, 반입장소 및 G.O. 번호에 대한 항목은 물품반입신고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물품반입신고서 신고사항 외에 구체적으로 운송형태에 따른 운송수단 코드, 수입물품의 수출국가와 수출일, 선적항에 대한 내역 추가 기재
- 추가적으로 즉시운송(Immediate Transportation)을 위해 반입된 물품에 대한 확인 번호 및 즉시운송일자를 기입하는 I. T. 번호 및 I. T. 일자란이 있음

□ 화물정보는 Bond 형태, 원산지, 상품명세(HTS 번호, AD/CVD 번호, 총중량, 적하목록 수량, HTS에 기재된 단위 수량), 금액 및 비용, 특수관계 여부로 구성되어 물품반입신고서의 화물정보에 비해 더 구체적인 사항 요구

- 수입통관 시 부과될 모든 관세 및 비용에 대한 납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물품반입신고서 세관에 제공된 보증서에 대한 보증인 번호(Surety No.) 및 Bond 형태(Bond Type)에 대한 코드 기재
- 기타 화물정보 항목은 물품신고서와 유사하나, 일련번호에 따라 각 물품별 HTS 번호, 수량, 금액 및 비용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부가적으로 연번별 상품에 따라 특혜원산지,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사항, 거래당 사자의 특수관계 여부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

□ 물품반입신고에 없는 납세신고의 주요 정보인 납부세액의 계산에서는 관세율, AD/CVD(반덤핑 및 상계관세)율, IRC(내국세)율, Visa 번호, 총수입금액 및 기타 비용, 총관세 및 내국세, 총납부세액으로 구성

- HTS 번호에 따른 관세율 및 내국세율을 각 연번별로 기재하며 미 상무부 국제무역청에서 정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율을 케이스번호와 함께 기재
- 각 연번별 물품의 세율에 따른 관세액, 반덤핑 및 상계관세액, 기타 비용을 기재
 -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대하여 보증서가 허가된 경우에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액을 괄호로 별도 기재

- 신고서 하단에는 라인별 수입금액을 합산한 총수입금액 및 추정되는 총관세 및 내국세, 기타 비용을 기재
 - 기타 비용에는 추정된 총반덤핑 및 상계관세금액 또는 MPF(Merchandise Processing Fee), HMF(Harbor Maintenance Fee) 등의 기타 비용을 기재
 - 보증서가 제출되어 괄호 안에 별도 기재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금액은 총비용에서 기재하지 않음

- 기타 요건확인과 관련하여 각종 비자 및 증명서가 있는 경우 세율을 기재한 하단에 모든 비자 및 증명서 번호를 기재
 - 농산품관련 허가서, 섬유관련 증명서 등

〈표 Ⅲ-4〉 미국 납세신고서에 기재되는 정보

구분	종류	상세
신고 유형 및 운송 정보	반입형태(Entry Type)	화물의 수입형태를 확인하는 2자리 코드
	반입항 코드(Port Cord)	미국 통관항구 코드 기재
	운송인명(Importing Carrier)	- 선편의 경우 선박명(선박명 대신 선박식별코드 불가) - 항공편의 경우 전세계 항공사 부호 기재 - 선편 및 항공편 이외의 경우 공란 미국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수입된 경우 FTZ 번호 기재
	운송수단(Mode of Transport)	운송형태에 따른 2자리 코드(벌크선, 컨테이너선, 기차, 트럭, 항공 등)
	수입일(Import date)	미국 통관항 수입일
	B/L 또는 AWB 번호	적하목록에 기재된 B/L(AWB) 번호 기재
	선적항(Foreign Port of Lading)	- 선편의 경우 "Schedule K"에 기재된 5단위 코드 기재 - 실제 선적항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기타 항구"에 대한 코드 기재 - 2개 이상의 선적항이 필요한 경우 "MULTI"로 표기하고 상품 명세부분에서 상품별로 별도 기재 선편 이외의 경우 공란
	수출국가(Export Country) 및 수출일(Export Date)	수출국가의 ISO 코드 및 수출일자 기재 - 수출국 및 수출일이 2개 이상인 경우 "MULTI"로 기재하고 상품명세부분에서 상품별로 별도 기재
	I. T. 번호 및 I. T. 일자	즉시운송(Immediate Transportation)을 위해 반입된 물품에 대한 번호 및 즉시운송일자

〈표 Ⅲ-4〉의 계속

구분	종류	상세
	양륙항(U.S. Port of Unloading)	수입화물의 양하가 이루어지는 미국 항구 코드 기재 - 코드 대신 항구명 기재 불가 - 선편, 항공편 및 철도운송 이외의 운송 방식은 공란
	반입장소(Location of Goods-Code/Name) 및 G. O. 번호(G. O. Number)	검사 가능한 반입장소 기재 항공편의 경우 항공기 번호 기재 - 일선 보세창고에 반입된 화물의 경우 CBP에 의해 할당된 General Order 번호 기재
화물 정보 및 납부 세액 계산	보증인 번호(Surety No.) 및 Bond 형태(Bond Type)	통관보증을 하는 보증인 식별 3자리 코드 및 그에 따른 보증 코드 기재 - 보증서가 필요없는 정부물품 수입의 경우 "999" - 보증서 대신 현금이나 미국 정부채를 사용하는 경우 "998" - 보증서가 필요 없는 정부물품의 수입에 대한 보증코드 "0" - 포괄보증과 개별보증에 대한 보증코드는 각각 "8" 과 "9"
	원산지(Country of Origin)	원산지 국가의 ISO 국가코드 기재 - 2개 이상의 원산지인 경우 "MULTI" 표기 후 상품명세부분에 각 상품별로 원산지국가코드 표기
	연번(Line No.)	각 물품별 HTS 번호, 수량, 금액 및 비용 등을 기재하기 위한 일련번호 - 하나의 물품에 하나 이상의 HTS 번호가 필요한 경우 통관규정에 따라 각각 연번을 분리 - FTA GSP 등 특별규정에 따라 연번 하단에 원산지 등 관련 사항 기재 필요 - 선적항, 수출국가 및 수출항, 원산지 항목에 "MULTI"로 표기한 경우에도 연번 하단에 관련 사항 기재
	상품 명세(Description of Merchandise)	물품 내역을 상세히 기재(HTS의 표준 품명 기재 가능)
	HTS 번호 및 AD/CVD 번호	HTS(Harmonized Tariff Schedule)에 따른 10단위 물품분류번호 신고 - 품목분류사전심사에 의한 경우 "RLNG" 기재 -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에 해당되는 경우 HTS 번호 하단에 해당번호 기재
	총중량(Gross weight) 및 적하목록 수량(Manifest Qty.)	라인별 물품의 총중량 및 물품반입신고서와 같이 B/L상 수량인 적하목록 수량 기재
	HTS에 기재된 단위 수량(Net Quantity in HTSUS Units)	HTS 번호별로 지정된 측정단위로 수량 기재 수량단위가 "X"로 지정된 경우 수량 미기재 두 개의 측정단위가 지정된 물품의 경우 두 가지 측정단위 모두에 대한 수량 기재 필요

〈표 Ⅲ-4〉의 계속

구분	종류	상세
	수입 금액(Entered Value)	HTS번호에 따른 라인별 물품에 대한 가격을 달러화로 기재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평가액으로서 수입가격과 다른 경우 괄호안에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케이스 번호 및 세율 삽입 신고된 가격이 실제거래가격이 아닌 경우 조정가격기재
	비용(CHGS)	수입금액 하단에 수입시 발생한 운임, 보험료 및 기타 발생비용 을 합산하여 기재 단, 미국 수입관세 제외
	특수관계 여부(Relationship)	해당 거래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지 여부에 따라 “Y(related)” 또 는 “N(not related)”로 표기 라인별로 표기하거나 전체 물품이 동일한 경우 한 번에 표기 가 능
	관세율(HTSUS Rate) 및 반덤핑 및 상계관세율(AD/CVD Rate)	HTS 번호에 따른 관세율 및 미 상무부 국제무역청에서 정한 반 덤핑 및 상계관세율 기재
	내국세율(IRC Rate)	HTS번호에 지정된 내국세율 기재
	관세 및 내국세(Duty and I. R, Tax)	각 라인별 물품에 대한 세율에 따른 관세액, 반덤핑 및 상계관 세액, 기타 비용 기재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대한 보증서가 허가된 경우 반덤핑 및 상 계관세액은 괄호로 기재
	총수입금액(Total Entered Value)	라인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기재
	총관세 및 내국세(Duty & Tax)	추정된 총관세 및 내국세 기재
	기타 금액(Other)	추정된 총반덤핑 및 상계관세금액 또는 기타 비용(MPF, HMF 등)기재 보증서가 제출된 반덤핑 및 상계관세금액은 미기재
	총합계(Total)	총관세, 내국세 및 기타 금액을 합산한 금액 보증서가 제출된 반덤핑 및 상계관세금액은 미기재
요건 확인	Visa No.	모든 비자 및 증명서 번호 기재

자료: CBP form 7501-Instruction, CBP

나. 미국의 수출통관절차 및 수출신고서

- 과거 미국의 수출신고방식은 수출화주 수출신고(SED: Shipper's Export Declaration)에 의한 서면신고방식²³⁾이었으나, 미국의 상무부는 2008년 6월 2일부터 모든 화물의 수출정보를 자동수출신고시스템(AES: Automated Export System)을 통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서류에 의한 수출신고나 이에 따른 적하목록의 제출방식은 불편하거나 그 기재 내용의 정확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부정수출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나 수출통계의 정확한 계산을 도모하기 위해 수출신고절차의 전자화가 요구되었음
 - 자동수출신고는 미국세관·국경경비국(CBP)과 공동으로 관리하나, AES창구는 상무성 통계국으로 단일화되어 있음
 - 수출수속은 모두 무서류이지만 AES에서 내용심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 통과된 것에만 수출허가증인 ITN(International Transaction Number)이 발행
 - 라이선스가 요구되는 품목이나 군수물자 등은 AES에서 매우 엄격하게 심사·관리²⁴⁾

1) 수출통관절차

- 수출통관시스템(AES)를 통한 미국의 수출신고는 2,500달러를 초과하는 모든 수출화물에 대하여 이루어지며 수입통관에서 나타나는 서류심사, 현물검사의 절차는 생략²⁵⁾
 - 허가 대상 물품은 가격에 상관없이 전자수출정보를 신고할 의무가 있음
- 미국의 전자수출정보의 신고는 수출전(predeparture) 신고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사

23) 서면신고방식하에서는 미국의 수출업자가 직접 수출신고를 이행하기도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이 SED를 작성하여 화물과 함께 본선이 입항하는 선사의 터미널에 있는 운송인(carrier)에게 인도하면 운송인이 화물을 본선에 적입한 후 해당 본선이 출항 후 4일 이내 SED와 적하목록(manifest)을 관할세관에 일괄 제출

24) 한상현·최준호, 『수출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미국의 자동수출신고시스템(AES)에 관한 연구』, 2010

25) 15 CFR §30.2(a)

전송인을 받아 수출후(post departure) 신고 가능

- 수출전 신고는 선박화물의 경우 선적되기 24시간 전, 항공화물은 항공기 출발예정 2시간 전, 트럭화물은 트럭이 국경에 도착하기 1시간 전, 철도화물은 열차가 국경에 도착하기 2시간 전, 우편과 기타의 운송수단의 경우에는 수출하기 2시간 전까지 전자수출정보를 신고하여야 함
 - 운송수단별 화물정보의 제출기한은 수출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화물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수출허가 대상 화물은 화물정보의 사전제출요건을 규정한 다른 법령에 따라 출발 전에 화물자료 제출
 - 수출후 신고는 수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법령이 요구하는 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
- 수출자는 수출신고사실 또는 수출신고면제대상이라는 증명을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수출선적지시서, 기타 선적서류의 첫 페이지에 명확히 기재하여 수출운송인에게 제공
- 수출후 신고대상이라는 증명도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재
 - 수출신고사실은 수출정보가 송신된 대로 수리되었다는 것의 증거가 되며 수출후 신고증명 또는 면제증명은 수출하기 전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²⁶⁾
- 운송인도 출항적하목록에 수출신고사실 또는 수출신고면제 대상이라는 증명을 기재하여 세관에 제출
- 운송인은 수출자로부터 수출신고사실 또는 수출신고면제 대상이라는 증명자료를 제공받지 않으면 화물을 적재할 수 없음

2) 수출신고서

- 미국의 수출신고는 SED(Shipper's Export Declarations)의 서면방식으로부터 자동화된 수출시스템의 전자신고로의 전환을 통하여 문서를 전자화

26) 15 CFR §30.7(b)

- 자동수출신고시스템(AES)에 송신하는 전자수출정보 항목은 수출업자명과 ID, 수출일자, 최종수하인 등에 대한 필수정보 외에 크게 거래유형, 화물정보와 운송정보로 구분 가능

가) 신고유형 및 운송정보

- 수출물품이 구호나 자선목적의 기증품, 가정용품 등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유형이나 조건을 확인하는 수출정보 코드를 입력하고 해당 수출정보를 사전 신고하는지, 사후 신고하는지에 대하여 표시함

- 운송정보에는 운송방법, 운송인 식별코드, 운송인명, 최종목적국, 수출항, 외국의 양륙항 등의 내용을 포함
 - 수출물품이 노선 수출거래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표시 부분이 있으며,
 - 운송참조번호는 해상운송을 위한 예약번호, 항공운송의 AWB번호, 철도운송에 대한 B/L 번호, 트럭운송을 위한 운송장(Freight or pro Bill) 번호를 의미
 - 선택적 정보로서 컨테이너에 표시된 보안 봉인번호(Seal Number), 운송설비별 확인번호 등을 신고하도록 함

나) 화물정보 및 수출요건확인

- 화물정보에는 원산지, 상품명세, HTS 번호, 수량, 가격, 각종 요건사항 등을 포함
 - 원산지표시에서는 HTS가 동일하더라도 외국산 물품은 내국산 물품과 분리하여 신고
 - HTS 10단위로 품목번호를 기재하고 HTS 번호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상세하게 물품내역을 기재
 - 수량 및 단위는 HTS에 지정된 기본단위와 수량 및 보조단위와 수량을 기재할 수 있음
 - 화물의 무게는 수출물품의 무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포장무게를 포함한 무게를 의미

- 우편 및 파이프라인에 의한 수출에서는 기재할 필요없음
 -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컨테이너의 무게는 적하물 무게에 포함하지 않음
 - 그밖에, 수출화물이 담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운송되는지 확인하는 담보코드와 위험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표시하는 위험물표시 항목이 있음
- 수출요건확인 부분에서는 수출허가번호, 수출규제번호, 국무부 요건, 킴벌리프로세스 증명번호 등의 내용을 신고
- 정부기관이 요구하는 허가, 승인, 허가 예외 또는 허가 면제받은 물품을 확인하는 코드 및 이에 대해 상무부, 국무부, 재무부, 법무부 등이 부여하는 수출허가 및 승인번호를 기재
 - 상업규제리스트에 따른 수출규제번호를 신고
 -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중고자동차의 확인번호 및 유형을 기재하고 자동차등록청이 발급한 번호와 등록증을 발급하는 주정부 또는 지역의 우편번호를 기재하도록 함
 - 기타 미국 국무부 산하 국방물자수출통제국(DDTC)의 등록번호, 면제번호, 수출허가번호 등을 기재하고 다이아몬드 원석을 수출하는 경우 미국 KPC협회에서 발행하는 킴벌리프로세스증명 번호를 기재

〈표 Ⅲ-5〉 미국 수출통관시스템에 제출되는 정보

구분	종류	상세
신고 유형	수출정보코드(Export Information Code)	수출물품의 유형이나 조건을 확인하는 코드(구호나 자선 목적의 기증품, 가정용품 등)
	신고 옵션 표시(Filing Option Indicator)	수출정보를 사전 신고하는지, 사후 신고하는지에 대한 표시
운송 정보	최종 목적국(Country of Ultimate Destination)	물품이 소비되거나 추가 가공되는 수출상대국가
	운송방법(Method of Transportation)	물품이 미국으로부터 반출하여 운송하는 방식
	운송인명(Carrier Name)	미국에서 물품을 반출하여 운송하는 자

〈표 Ⅲ-5〉의 계속

구분	종류	상세
	운송인 식별코드(Carrier Identification)	운송형태에 따른 운송인 식별코드
	수출항(Port of Export)	수출물품이 선적되는 미국의 항구 또는 공항
	노선 수출거래 확인(Routed Export Transaction Indicator)	화물이 노선수출거래인지를 확인하는 표시
	외국의 양륙항(Foreign Port of Unloading)	물품의 하역되는 외국항으로 목적지국에 소재할 필요는 없음
	운송참조번호(Transportation Reference Number)	해상운송을 위한 예약번호, 항공운송의 AWB번호, 철도운송에 대한 B/L 번호, 트럭운송을 위한 Freight or pro Bill 번호 신고
	봉인번호(Seal Number) 및 설비번호(Equipment Number)	설비나 컨테이너에 표시된 보안봉인번호 및 운송설비별 확인번호 신고
화물 정보 및 수출 요건	원산지 표시(Domestic or Foreign Indicator)	수출물품이 내국산인지, 외국산인지 표시 HTS번호가 동일하더라도 외국산물품은 내국산물품과 분리 신고
	물품분류번호(Commodity Classification Number)	10단위 HTS 번호 신고
	상품 명세(Commodity Description)	HTS 번호 확인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물품내역 신고
	기본측정단위(Primary Unit of Measure) 및 기본 수량(Primary Quantity)	HTS 번호에 기재된 기본측정단위와 이에 일치하는 단위들의 합계
	보조측정단위(Secondary Unit of Measure) 및 보조 수량(Secondary Quantity)	HTS에 기재된 보조측정단위와 이에 일치하는 단위들의 합계
	적하물 무게(Shipping Weight)	수출물품의 무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포장무게를 포함한 무게 기재 우편 및 파이프라인에 의한 수출에서는 필요하지 않음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컨테이너의 무게는 적하물 무게에 포함하지 않음
	가격(Value)	판매하는 물품가격에 미국 내륙지점으로부터 선적항까지의 내륙운임, 보험, 기타 비용을 포함한 가격
	위험물표시(Hazardous Material Indicator)	화물이 위험물로 정의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표시

〈표 Ⅲ-5〉의 계속

구분	종류	상세
	담보 코드(Inbond Code)	화물이 담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운송되는지 확인하는 코드
	허가번호/허가면제번호(License Code/License Exemption Code)	정부기관이 요구하는 허가, 승인, 허가 예외 또는 허가 면제받은 물품을 확인하는 코드
	자유무역지역 표시(FTZ Indicator)	자유무역지역에서 물품이 반출되고 소비용으로 반입되지 않은 경우 표시
	수출허가번호 등	상무부, 국무부, 재무부, 법무부 등이 부여하는 허가 및 승인번호
	수출규제번호(ECCN)	상업규제리스트에서 물품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번호
	자동차 확인번호/제품번호(Vehicle Identification Number/Product ID) 및 자동차 번호 유형(Vehicle ID Qualifier)	중고자동차 수출신고 시 중고자동차의 확인번호 및 중고자동차 번호의 유형을 구분
	자동차 등록번호(Vehicle Title Number) 및 자동차등록증 주정보 코드(Vehicle Title State Code)	자동차등록청이 발급한 번호 및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하는 주정부나 지역의 우편번호
	국무부 요건(Department of State Requirement) 및 김벌리프로세스 증명(Kimberly Process Certificate)번호	- 국무부 산하 국방물자수출통제국(DDTC) 등록번호, 면제번호, 수출허가번호 등 기재 - 다이아몬드 원석을 수출하는 경우 미국 KPC협회에서 발행하는 KPC번호 기재
기타	특수관계 표시(Related Party Indicator)	수출자와 최종 양수인이 특수관계인 경우 표시

자료: 15 CFR 30.6 Electronic Export Information Data Element

3. 일본의 수출입신고서식 검토

가. 일본의 수입통관절차 및 수입신고서

- 외국에서 일본으로 도착한 화물은 수입신고에 따라 세관 검사와 관세, 내국소비세 및 지방소비세의 납부를 거쳐 수입허가를 받은 후에 국내로 반입할 수 있음²⁷⁾

- 화물이 일본에 도착하기 전이나 식품 수입시 수입관련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수입신고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세관의 심사·검사 여부를 사전통지받을 수 있는 예비심사제를 이용하여 신속통관 가능²⁸⁾
- 예비심사제를 이용한 항공화물 중에서 검사가 필요 없는 화물의 경우에는 화물의 도착을 확인 이후 곧바로 수입허가를 받을 수 있음
-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수입자가 지정받은 화물을 계속적으로 수입하는 것에 대해 법령 준수 확보를 조건으로 수입신고와 납세신고를 분리하여 먼저 납세신고 전에 화물을 반출할 수 있는 간이신고제도도 있음

- 일본에서는 점점 늘어나는 수출입화물을 처리하는 세관 소속의 IT화를 한층 강화하는 차원에서 NACCS(Nippon Automated Cargo and Port Consolidated System: 수출입·항만관련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 수출입 등 관련 업무 및 이와 관련된 화물관리 등의 민간업무를 처리, 세관 수출입신고의 약 98%가 전자문서로 처리되고 있음²⁹⁾
 - 수출입 과정에서 필요한 식품위생법 및 식물방역법에 근거하여 기타 정부기관의 수속 및 선박, 항공기의 입출항 관련 수속도 NACCS를 통해 통합처리 가능
 - NACCS에 입력된 정보는 세관의 CIS(Customs Intelligence Data Base System: 통관정보 종합판정 시스템)를 통해 리스크가 높은 화물과 낮은 화물을 선별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는 데 활용됨

1) 수입통관절차³⁰⁾

- 일본의 수입통관은 '보세구역에 화물반입 → 수입신고, 납세신고 → 세관의 심사 및 검사 → 관세 등 납부 → 수입허가 → 화물 반출'하는 순서로 이루어지며 수입절차의 90%

27) 정재호, 『주요국의 통관제도 및 개정교토협약 유보조항 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9. 8, pp. 71~72

28) 신선도가 중요한 화물, 거래처의 납기가 임박한 화물, 유통기한이 제한되어 있는 화물, 타법령의 절차가 필요한 화물, 수입신고되는 화물의 종류가 많아 서류심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이용

29) 정재호, 『주요국의 전자상거래물품 통관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8, p. 62

30) 주일대한민국대사관·토쿄AT센터·KOTRA 토쿄 무역관, 『일본수입규제대응가이드』 2012.

이상은 현재 전산화³¹⁾

- 해상 일반화물의 수입신고에서 수입허가까지의 통관소요시간은 3.1시간, 항공 일반화물의 통관의 경우 0.4시간이 소요
 - 선박의 입항으로부터 수입허가까지의 수입 수속 전체에 걸리는 평균 소요시간은 2.6일(62.4시간), 예비심사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2.2일(51.7시간)
 - 항공기 입항에서 수입허가까지의 수입 수속 전체에 필요한 평균 소요일수는 0.7일(16시간)이며, 도착 즉시 수입허가제도를 이용할 경우 0.1일(2.3시간)이 소요

가) 보세구역에 화물 반입

- 지정보세구역 등의 보세지역에 반입

나) 수입신고, 납세신고³²⁾

- 수입신고는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이 보세구역 또는 특별히 허가받은 보세구역 외의 장소에 반입된 이후지만,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선박에 물품을 적재한 채 또는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기 전에 신고 가능
- 수입신고는 수입신고서 외 송품장, 선하증권, 보험료명세서, 운임명세서, 포장명세서 등을 세관에 제출하며 추가적으로 타법령에 의한 허가·승인증, 특혜원산지증명서, 감면세명세서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 수입신고서에는 화물의 기호, 번호, 품명, 수량 및 가격, 화물의 원산지 및 적출지, 화물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또는 등록기호, 화물의 장치장소 등이 기재되어야 함

31) 정재호, 『주요국의 전자상거래물품 통관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8, pp. 61~62

32) 정재호, 『주요국의 통관제도 및 개정교토협약 유보조항 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9. 8, p. 72

다) 세관의 심사 및 검사

- 세관에 제출된 수입신고서는 기재사항의 정확성 여부, 과세표준과 품목번호 및 세율·세액의 정확성 여부, 법령에서 요구하는 경우 허가 또는 승인을 득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 심사받게 됨

- 검사는 수입신고 내용과 화물의 동일성을 확인, 수입 규제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확인, 권총 등 위험품 적발 등의 목적으로 시행
 - 수입 검사는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³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중량물품, 산물 또는 위험물품으로 지정검사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지정지역 외 검사 가능
 - 검사 방법으로는 전부 검사, 일부 지정 검사 또는 견본 검사가 있음

라) 관세 등 납부

- 관세 및 내국소비세, 지방소비세를 납부하는 절차

마) 수입허가

- 수입신고가 적법하고 신고서류의 심사 또는 물품의 검사 결과, 신고 내용과 화물의 동일성이 확인되고 법령상의 요건³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수입허가가 이루어짐
 - 수입허가 통지서가 교부됨

바) 화물 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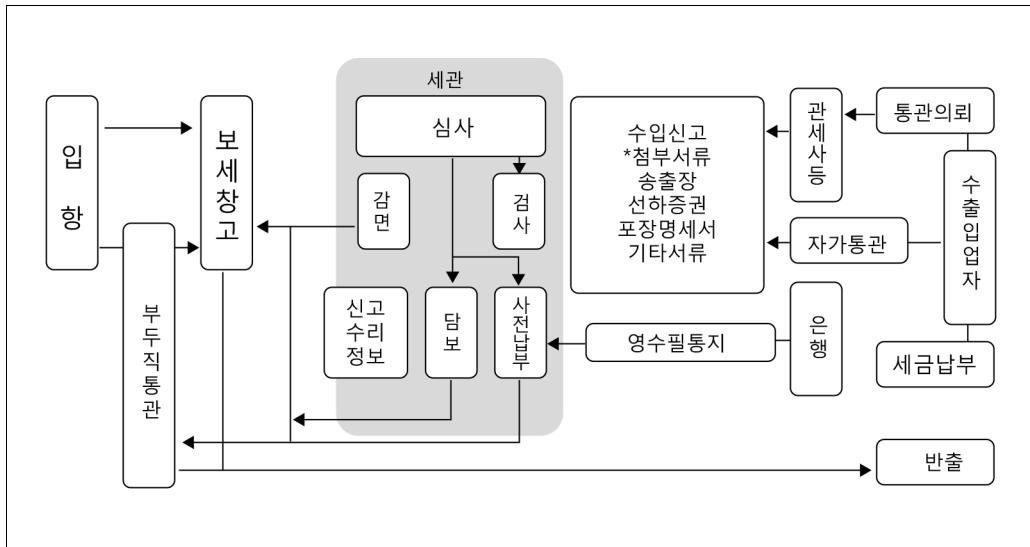
- 수입허가 통지서를 보세지역의 담당자에게 보이면 화물을 보세지역으로부터 일본 국내

33) 세관검사장, 보세구역 등

34) ① 관세, 내국소비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이들 세금을 납부하였을 것(납기 연장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제외), ② 물품이 아편, 마약, 기타 수입금지품이 아닐 것, ③ 타 법령의 규제를 받는 물품은 각각의 법령에 의한 허가, 승인을 취득할 것, ④ 물품의 원산지 등이 허위로 표시되어 있지 않을 것

로 인수 가능

[그림 Ⅲ-2] 일본의 일반적인 수입통관절차



자료: www.kati.net(일본의 통관검역제도)

2) 수입신고서(Customs form C-5020)

- 수입신고는 수입(납세)신고서(세관양식 C-5020) 외에 송장(Invoice),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B/L or AWB), 보험료명세서, 운임명세서, 포장명세서 등을 세관에 제출하며, 화물의 종류에 따라 허가 및 승인서, 원산지증명서, 감면세 명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음³⁵⁾
- 일본의 수입신고서는 신고일자, 수입자 및 수출자 관련사항 외에 크게 입항정보와 화물 정보, 납부세액의 계산 등으로 구분 가능

35) 정재호, 『주요국의 전자상거래물품 통관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8, p. 62

가) 신고유형

무역형태별 부호

- 무역형태별 부호는 세관에 확인하여 기재하며, 일반적인 수입의 경우 신고서 상단 IC란에 “X” 표기

나) 운송정보

운송정보는 입항과 관련된 정보인 입항연월일, 적출지, 선(기)명, 반입항, 선하증권번호, 반입장소 등의 내용을 포함

- 화물이 반입된 항구 및 공항의 명칭, 적출지, 화물이 적재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및 국적부호 기재
- 해상화물의 경우 선화증권, 항공화물의 경우 AWB 번호를 기재
 - 보세운송된 화물의 경우 승인서 번호 기재
- 수입화물이 반입되어 보관된 장소명을 기재

다) 화물정보 및 요건확인

화물정보는 품명, 수량, 신고가격, 원산지 등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음

- 수입화물이 생산된 원산지를 기재
- 상업송장상의 품명과 같이 일반적인 상품명을 기재하고 실행 관세율표에 따라 수입 물품에 해당하는 6자리 및 3자리 통계번호를 분리하여 기재
- 수량 및 단위는 관세율표상에 기재된 통계단위를 기준으로 수량을 기재하되, 두 가지 단위가 지정된 경우 두 가지 수량 모두 기재
 - 지정된 단위보다 수량이 적을 경우 왼편 칸에 “0”으로 기재 후 오른편 칸에 통계 단위 미만의 실제 수량 기재
- 신고가격은 CIF가격으로 신고하고, 내국소비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은 신고 가격에 관세액(백엔 미만 버림)을 더한 금액을 기입
- 왼쪽 하단에 수입화물의 외포장의 총개수, 마크 및 번호를 기재

- 요건확인부분은 수입승인 및 허가번호를 기재하도록 함
 - 수입화물의 총수량 및 번호를 적는 칸 하단에는 수입승인증서 또는 수입허가증서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번호를 기재하는 별도의 칸이 있음

라) 납부세액의 계산

- 납부세액의 계산에서는 관세율, 내국소비세율, 관세 및 내국소비세 등 세액, 감면세액, 감면조건 등의 내용으로 구성
 - 관세율 항목에는 실행 관세율표에 따른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기재
 - 관세가 면제된 경우 “Free”로 기재
 - 관세율 종류에 따라 구분된 해당 칸에 “X” 표기
 - 관세금액은 신고가격(1천엔 미만 버림)에 세율을 곱한 금액을 기재
 - 신고가격과 같이 세액이 1천엔 이상의 경우 왼쪽 칸에, 1천엔 미만인 경우 오른쪽 칸에 기재
 - 내국세는 소비세, 주세 등의 내국소비세 및 지방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에 대해 각각 해당 법령 칸에 “X” 표기하고 내국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계산하여 기재
 - 내국소비세는 신고가격에 관세액(100엔 미만 버림)을 더한 금액
 - 지방소비세는 내국소비세액에서 100엔 미만 반올림한 금액
 - 내국소비세율 및 지방소비세율을 기재하고 관세액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여 내국세액을 원단위까지 기재
 - 각 물품별 오른쪽에는 감면조건 부호를 기재하도록 함
 - 특이한 것은, 수입신고서 하단에 별도로 평가신고란을 두어 거래내용에 따라 평가신고서 종류 등 해당 부분에 “X” 표기
 - 종합(포괄)신고의 경우 접수번호를 포함

마) 기타

- 신고서 하단에 원산지증명서 등 첨부서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납부기한 연장에 관련된 사항 및 연장할 세액에 대해 기재하는 별도의 칸을 마련하

고 있음

〈표 Ⅲ-6〉 일본 수입신고서에 제출되는 정보

구분	종류	상세
신고 유형	무역형태별 부호 등	세관에 확인하여 기재하며 일반적인 수입의 경우 신고서 상단 IC 단에 "X" 표기
운송 정보	입항연월일	화물을 적재해 온 선박 또는 항공기의 연월일 기재
	반입항 및 반입항 부호	화물이 반입된 항구 및 공항의 명칭 기재
	선(기)명 및 선(기) 국적부호	화물이 적재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및 국적부호 기재
	적출지	화물이 선적된 도시 및 국가 기재
	선하증권번호	선하증권, 항공화물의 경우 AWB 번호를 기재 - 보세운송된 화물의 경우 승인서 번호 기재
	반입장소	화물이 보관된 장소 기재
화물 정보	원산지 및 원산지 부호	화물이 생산된 국가 기재
	품명	일반적인 상품명(상업용장 상의 품명) 기재
	품목번호	관세율표에 따라 수입물품에 해당하는 6자리 및 3자리 통계번호를 분리하여 기재
	수량 및 단위	- 수량단위는 관세율표상에 기재된 통계단위 기재(두 가지 통계 단위가 지정된 경우 모두 기재) - 수량은 지정된 통계단위에 의해 표시되는 수량으로 기재 - 화물 수량이 지정된 단위에 미달하는 경우 원편 칸에 "0"으로 기재하고 오른편 칸에 통계단위 미만의 실제 수량 기재
	신고가격(CIF) 및 내국소비세 등 과세표준	신고가격은 CIF 가격을, 내국소비세 등의 과세표준은 신고 가격에 관세액(100엔 미만 버림)을 더한 금액을 엔화로 기재 - 1,000엔 이상은 왼쪽 칸에 기재, 1,000엔 미만인 경우 오른쪽 칸에 기재
	화물 총수량 및 번호	화물의 외포장의 총개수, 마크 및 번호 기재
요건 확인	수입승인 및 허가 번호	수입승인증서 또는 수입허가증서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번호 기재

〈표 Ⅲ-6〉의 계속

구분	종류	상세
납부 세액 계산	관세율	실행 관세율표에 따른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기재 - 관세가 면제된 경우 “Free”로 기재 - 관세율 종류에 따라 구분된 칸에 “X” 표기
	관세액	신고가격(1,000엔 미만 버림)에 세율을 곱한 금액을 기재 신고가격과 같이 세액이 1,000엔 이상의 경우 왼쪽 칸에, 1,000엔 미만인 경우 오른쪽 칸에 기재
	내국세 종류	소비세, 주세 등의 내국소비세 및 지방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에 대해 각 해당 칸에 “X” 표기
	내국세의 과세표준	- 내국소비세는 신고가격에 관세액(100엔 미만 버림)을 더한 금액 기입 - 지방소비세는 내국소비세액에서 100엔 미만 반올림한 금액 기입
	내국세율	내국소비세율 및 지방소비세율 기재
	내국세액	관세액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여 원단위까지 기재
	세액 합계	각 세목마다 세금을 계산하고 각각의 합계액 기재
	감면 조건 부호	각 물품별 감면조건부호 및 감면율을 기재하고 감면세액 계산
	관세평가 신고	거래 내용에 따라 평가신고 관련 해당 부분에 “X” 표기 - 종합신고의 경우 접수번호 포함
	기타	첨부서류
납부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및 연장할 세액		세종별로 납부기한 등 연장관련 사항 및 연장할 세액 기재

자료: 일본관세청 <http://www.customs.go.jp/>

나. 일본의 수출통관절차 및 수출신고서

1) 수출통관절차

- 일본의 수출통관은 ‘보세구역에 화물반입 → 수출 신고 → 세관의 심사 및 검사 → 수출 허가 → 선적’하는 순서로 이루어짐

가) 보세구역에 화물 반입

- 수출물품은 세관영역이나 보관을 위해 특별히 허가된 보세구역에 반입
 -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특정 수출자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물품이 보관된 위치 또는 물품의 선적을 예정하고 있는 항구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하여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음

나) 수출신고

- 세관에 수출물품명, 수량, 가격 및 기타 필요한 내역을 신고하는 절차로 수출신고서(세관양식 C-5010)와 함께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 기타 필요서류를 제출³⁶⁾

다) 세관의 심사 및 검사

- 세관에서는 수출신고서를 함께 제출된 송장 및 기타 증빙서류와 대조하여 심사
 - 서류심사는 수출물품의 통계분류에 따라, 승인 및 허가가 요구되는 경우 및 소비세 면제신청서가 첨부된 경우에 이루어짐

- 서류심사에 있어 품목분류의 정확성 및 관세법 이외의 법령 및 규정에서 요구되는 검사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출물품의 물리적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원칙적으로 세관검사는 세관검사구역에서 진행되며 세관검사구역에 반입이 어려운 경우 수출물품이 저장된 장소에서 실시

다) 수출허가

- 일본은 물품을 수출하려고 할 때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해당 물품에 대해 필요한 검사를 거쳐 수출허가를 받아야 함

36) 수출관계 법령에 따른 인증서, 승인서, 허가서 등

라) 선적

- 수출허가 후 수출물품의 선적 가능

2) 수출신고서(Customs form C-5010)

- 일본의 수출신고 시 제출하는 수출신고서는 다른 국가에 비해 서식이 단순한 편으로 신고일자, 신고세관, 수입자 및 수출자 관련사항 외에 크게 거래유형, 운송정보, 화물정보 및 수출요건 확인 등으로 구분 가능

가) 신고유형

- 무역형태별 부호는 세관에 확인하여 기재하도록 함

나) 운송정보

- 운송정보는 출항연월일, 선적항, 선적일자, 선(기)명, 목적지, 반입장소 등의 내용으로 구성
 - 출항예정일을 기본으로 최종 목적지, 수출물품을 선적하는 항구 또는 공항의 명칭과 부호를 기재하며, 선박의 명칭이나 항공화물의 경우 항공기의 소속회사명 및 AWB 번호를 기재
 - 또한, 수출을 위해 화물이 보관된 장소명 및 따로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사항을 기재
 - 수출신고에 따라 보세운송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하단에 해당 구분과 운송기간을 기재

다) 화물정보 및 수출요건확인

- 화물정보는 품명, HS 코드, 수량 및 단위, 신고가격 및 결제금액 등으로 구성
 - 품명은 상업송장상의 품명과 같이 일반적인 상품명을 기재하며 수출통계품목표에 따른 6자리 및 3자리의 세번을 구분하여 기재

- 수량 및 단위는 관세율표상에 기재된 통계단위를 기준으로 표시되는 수량을 기재하
되, 두 가지 단위가 지정된 경우 두 가지 수량 모두 기재
 - 화물의 수량이 지정된 단위보다 적을 경우 왼편 칸에 “0”으로 기재 후 오른편 칸
에 통계단위 미만의 실제 수량 기재
 - 신고가격은 FOB가격을 엔화로 기재하고 하단에 총결제금액을 기재
 - 총결제금액이 100만엔을 넘는 금액의 경우 결제금액에 밑줄
 - 수입신고서와 마찬가지로 왼쪽 하단에 수입화물의 외포장의 총 개수, 마크 및 번호
를 기재
- 수출요건확인 등은 수출승인 및 허가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함
- 무기관련 화물, 마약, 유해폐기물, 희귀야생동식물 등 외환 및 대외무역법, 수출무
역관리령 규정에서 정하는 화물의 경우 해당 항목의 번호를 기재하고 적용란에 “X”
표시
 - 상기 규정사항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하지만 허가,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허가요청 및 허가필요란에 “X” 표시
 -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1의 16항에 따라 무기제조 등에 사용되는 화물의 경우 허
가요청란에 “X” 표시, 수출무역관리령 별표에 해당하지 않거나 무기제조 등에 이
용되지 않는 화물의 경우 허가필요란에 “X” 표시
 - 기타 수출허가 등이 있는 경우 허가증 등의 번호 기입
 - 또한, 신고서 하단에 수출거래승인서, 수출승인 및 허가증, 수출면세(환급) 관련서류
등의 첨부서류에 따라 해당 항목의 유무란에 “X” 표시가 필요

〈표 Ⅲ-7〉 일본 수출신고서에 제출되는 정보

구분	종류	상세
운송 정보	무역형태별 부호	세관에 확인하여 기재
	선적항 및 선적항 부호	화물을 선적하는 항구 또는 공항의 명칭 및 부호 기재
	선(기)명 및 선(기)국적부호	화물을 적재하는 선박의 명칭 기재 - 항공기의 소속회사명 및 AWB 번호 기재
	출항예정일	출항 예정일을 기재
	목적지 및 도착지 부호	화물의 최종목적지와 국가명 기재
	반입장소	화물이 보관된 장소의 명칭 기입
	보세운송	수출신고에 따라 보세운송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구분과 운송기간을 기재
화물 정보	선적일자	세관기재란
	품명	일반적인 상품명(예: 상업송장의 상품명) 기재
	품목번호(HS 코드)	수출통계품목표의 번호 6자리 및 세번 3자리 기재
	단위	수출통계품목표의 통계단위를 기재 - 두 개의 통계단위가 있는 경우 모두 기재
	수량	통계단위에 의해 표시되는 수량을 기재 - 화물의 전량이 단위에 미달하는 경우 원편 칸에 "0"을 기재하고 단위 미만의 숫자는 오른편 칸에 기재
	신고가격(FOB) 및 결제금액	FOB가격을 엔화로 기재하고 총 결제금액을 기재 - 총액이 100만엔을 넘는금액의 경우 결제금액에 밀출
	화물 총 수량 및 번호	화물의 총 개수, 외장 마크 및 번호 기재 - 컨테이너 포장인 경우 컨테이너 포장장소를 포함하여 컨테이너 포장임을 확인하는 문구 기재
요건 확인 등	수출승인 및 허가 번호 등	- 무기관련 화물, 마약, 유해폐기물, 희귀야생동식물 등 수출무역관리령에서 정하는 화물의 경우 해당 항목의 번호를 기입하고 적용표시 - 상기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하지만 허가,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허가요청 및 허가필요에 표시 - 수출허가 등이 있는 경우 허가증 등의 번호 기입
	첨부서류	수출거래승인서, 수출승인 및 허가증, 수출면세(환급) 관련서류 등의 첨부서류에 따라 유무란에 표시

자료: 일본 관세청 <http://www.customs.go.jp/>

4. 호주의 수출입신고서식 검토

- 호주의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과 국경 보안에 관한 업무는 호주 관세청(the Australian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ervice, ACBPS)과 농림수산부(DAFF Biosecurity) 산하 호주검역청(AQUIS, the 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에서 주관함

가. 수입통관절차 및 수입신고서

- 호주의 수입통관절차는 관세법 Section 71A ~ 71L 및 Section 181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수입신고 오류로 인한 벌칙 및 가산세는 동법 71G 및 243T, 243U에 규정

1) 수입통관절차

- 호주의 수입통관절차는 화물신고(cargo report), 수입신고서 제출(submit), 수입신고서 처리(lodgement), 첨부서류 제출 또는 검사, 수입신고서 수리, 관세 등 납부 및 물품 반출의 순서로 이루어짐
- 운송회사, 국제화물운송업자 등의 화물신고인은 수입물품을 호주로 반입하기 전에 관세청에 화물신고를 하여야 함
- 수입물품의 화주 또는 통관대리인 등의 수입신고인은 통합화물관리시스템(Integrated Cargo System, ICS)에 수입신고를 접수함
 - 수입신고인은 수입물품의 화주, 물품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거나 물품을 통제하는 자 및 관세사 또는 수입신고 대리인으로 고용한 사람으로 함
 - 호주의 수입신고유형은 N10, N20, N10-20, N30으로 구분
 - N10 수입신고는 사용 또는 소비를 위해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통관절차가 완료됨

- N20 보세창고 반입신고는 보세창고 반입을 위해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로, 보세창고에서 반출되기 전까지는 관세 등을 징수하지 않음. 이 신고유형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세관의 허가를 받은 보세창고에 장치하여야 함
 - N10/20 수입/보세창고 혼합신고는 하나의 탁송건이 소비용 또는 보세창고 반입용 물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하며, 호주 관세청과 검역청에 제반 서류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N30 보세창고 반출신고는 보세창고에 장치되었던 물품이 사용 또는 소비를 위해 반출될 때 사용하는 신고유형
- 1천호주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간이신고(SAC, Self Assessed Clearance)를 하게 되며, 이 경우 일반적으로 운송주선인 또는 특송업자가 수입자를 대신하여 신고하게 됨
- 세관공무원은 ICS시스템에서 신고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진행
- 수입자에 대한 신원증명(EOI, Evidence of Identity)³⁷⁾을 거쳐, ICS시스템에 신고번호를 부여
 - ICS 시스템의 신고서 검증에 의해 오류가 발견된 경우, 화주에게 통지하여 서면으로 수정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신고서의 보안을 통해 모든 수정이 완료된 때에 접수된 날과 같은 날에 신고서가 최종적으로 처리(lodge)됨³⁸⁾
- 수입신고서가 접수되면, ICS시스템에서 보안 심사(Community Protection questions) 및 요건확인 심사(lodgement questions)절차가 생성되며, 이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어야 신고서 제출이 가능함
 - 세관공무원은 수입허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물품, 수입금지물품 등에 대한 추가

37) 수입신고인의 신원을 검증하는 것으로 신분증, 여권,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신원보증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루어짐

38) 신고서가 접수된다는 것은 시스템에서 처리된 상태로, 이 단계에서는 보안심사 및 요건확인 심사절차가 생성됨. 보안심사와 제출심사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어야 신고서의 제출이 완료되며, 공문서의 효과가 발생. 신고서는 접수된 날 제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제출심사를 다시 생성하기 위하여 신고서를 다시 접수하여야 함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입신고인은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함. 주로 물품의 설명 및 품목분류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짐

- 신고서 정보는 농림수산부에 이관되어 해당 신고항목을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함

□ 세관은 제출된 신고서에 대해 즉시 통관될 수 있는 ①녹색신고(Green Line), 정밀검사 대상인 ②적색신고(Red Line) 또는 검사대상인 ③황색신고(Amber Line)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처리

- 녹색신고는 검사 없이 관세 등을 납부하면 수입신고가 수리됨
- 적색신고는 일반적으로 가격 또는 품목분류의 오류, 호주 검역청의 검역을 받지 않은 경우 등
- 황색신고는 관세포탈의 우려가 있는 물품, 마약, 검역대상물품 등 수입 금지 또는 제한 물품, 관세사 또는 수입자가 신고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요청한 물품을 대상으로 함

□ 신고서가 최종적으로 제출되기 전 및 관세, 통관처리수수료 등을 납부하기 전에 신고내용을 정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납부 세액의 변경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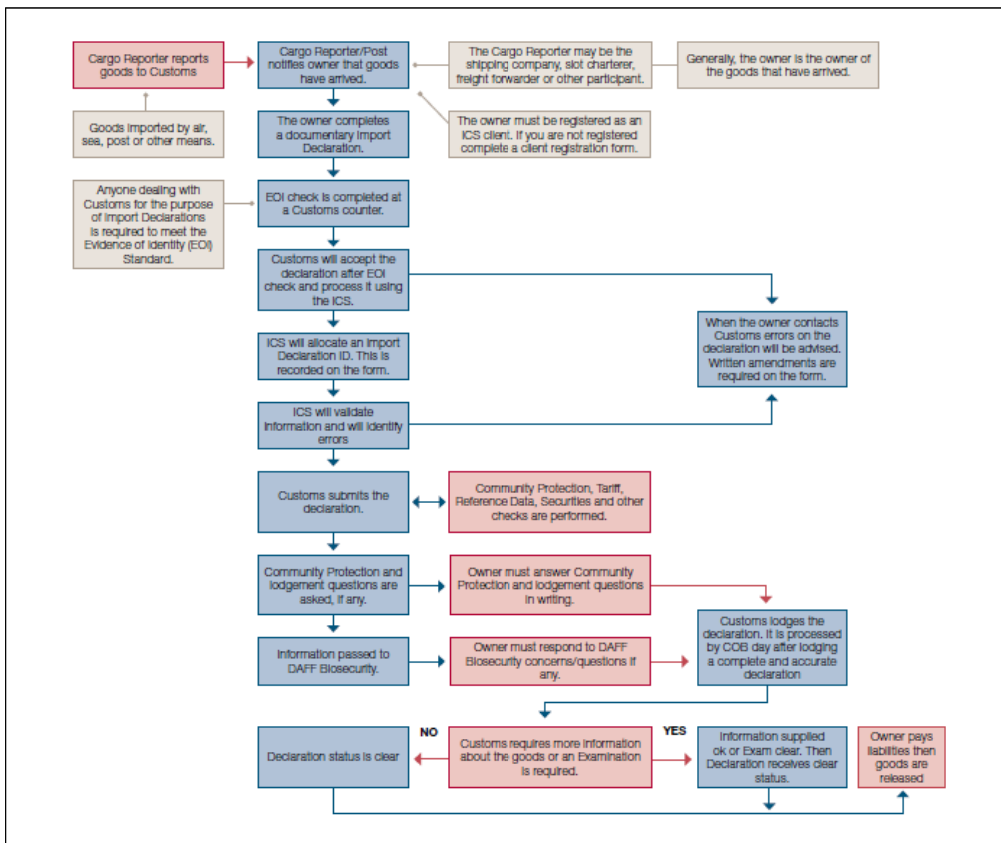
- 수입신고서가 접수되면, ICS시스템에서 보안 심사(Community Protection questions) 및 요건확인 심사(lodgement questions)절차가 생성되며, 이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어야 신고서 제출이 가능함
- 신고세액을 납부한 후에는 과다신고한 세액을 수정하는 경우 환급(양식 B53)을 받고, 부족세액을 수정한 경우 추가세액에 대한 납부고지서(outstanding payment advice)를 통지받게 됨

□ 녹색신고 대상으로 분류된 수입물품의 수입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물품을 반출할 수 있음

- 수입물품에는 관세 이외에 와인균등세(WET, Wine equalisation tax), 고급자동차세(LCT, luxury car tax) 및 부가가치세(GST, Goods and Services Tax)가 부과되

- 며, 수입 건별로 통관처리수수료(Import Processing Charges)를 납부하여야 함
- 관세 등의 납부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납부고지서 (Outstanding Payment Advice)를 송부함
 - 납부고지서가 송부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수입신고서는 자동으로 취하됨
 - 신고인은 관세 등 납부세액을 계산할 필요 없이 ICS시스템에서 자동 산출되어 관세청에서 통지한 세액을 납부함³⁹⁾

[그림 Ⅲ-3] 호주 수입통관절차



자료: ACBPS(2013), p. 32

39) ACBPS, 「Documentary Import Declaration Comprehensive Guide」, 2013. 1, p. 5. 관세법 71c에 따른 수입신고 통지서(Import Declaration Advice)를 교부받는데, 'Payment Advice' 양식에 수입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산정한 관세, 내국세, 통관처리수수료의 내역이 기재됨

2) 수입신고서

- 호주의 수입신고서 양식 'B650'은 크게 화주, 신고가격 등 기본사항을 기재하는 Section A, 해당 운송수단을 선택하여 운송 정보를 기재하는 Section B(Transport Details)와 납부세액 산정과 관련된 과세가격, 세율 등의 정보를 기입하는 Section C(Tariff Details) 등 3개의 Section으로 구성
 - 세부적으로 기입하는 난은 화주, 화물, 가격 등 약 20개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음

1) 신고유형

- 수입신고서 상단에 관세법 s71A에 따른 일반수입신고와 관세법 s70(7)에 따른 특별통관대상 여부인지를 명시하여 신고 유형을 구분
 - 일반수입신고는 관세법 section 68에 해당하는 물품과 Nature 30 유형의 수입신고가 필요한 보세장치 물품의 경우를 포함
 - 특별통관대상물품은 관세법 section 70에 따라 재난 구호물품 또는 긴급 의료물품, 긴급하게 필요한 공용 선박 또는 항공기 또는 기타 기계류의 엔진 또는 부분품으로 호주 내에서 조달 불가능한 물품 및 부패성 물품으로 함

- Section A에는 이의신청, 황색신고 사유(payment under protest, amber statement and declaration)를 기재하여 납부 또는 신고내용의 특이사항을 표시하도록 함
 -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수입신고서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사유를 첨부하여야 함. 행정심판원(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에 제기하는 심판 대상에 적용
 - 수입신고인이 신고서에 제출한 내용에 대해 확신이 없거나 정보를 누락하여 신고서의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수입자 또는 관세사는 신고서의 해당 항목에 '황색신고 사유(amber reason)'을 표기하고 관련 '황색신고 사유서'에 세부 내용을 작성하여야 함
 - Header 황색신고 사유 유형: 반덤핑관세/상계관세, 원산지, 특혜관세, 수량, 관세

평가

- Line 황색신고 사유: 품목분류, 반덤핑관세/상계관세, 원산지, 특혜관세, 수량, 특혜관세 코드, 관세평가

2) 운송정보

- 호주의 수입신고서에는 Section B(Transport Details)의 운송정보에 화물정보(Cargo Details)란이 별도로 있으나, 여기에는 물품이 호주에 도착한 상태에 관한 중량 정보만을 신고하도록 하고, Section C(Tariff Details)에 품목분류를 위한 물품설명을 신고하도록 함
- Section B(Transport Details)의 항공, 해상, 우편 및 기타 등 가운데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선택하여 해당 운송수단별로 '화물정보'란에는 선적항, 양륙항, 화물의 중량에 관한 내용을, '운송정보'란에는 선사번호, 운송서류, 포장수량 등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 항공운송 - 화물정보(Air Transport - Cargo Details)
 - IATA(The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코드, 선적, 양륙항 등
 - 항공운송 - 운송정보(Air Transport - Line Details)
 - 선사 번호, Master AWB, House AWB, 포장수량, 포장명세(Marks & Numbers of Description) 등
 - 해상운송 - 화물정보(Sea Transport - Cargo Details)
 - 선적항, 양륙항, 운항번호(Voyage No.), 총중량, 순중량 등
 - 해상운송 - 운송정보(Sea Transport - Line Details)
 - 선사 번호, 화물 유형(컨테이너, 비컨테이너, 벌크), 컨테이너 번호, Ocean B/L 번호, House B/L 번호, 포장수량, 포장명세 등
 - 우편: 선적항, 최초 도착항 및 도착일, 양륙항, 총중량, 순중량, 포장수량, 포장명세 등
 - 기타 운송수단
 - CBP 화물인수증, 선적항, 양륙항, 최초 도착항 및 도착일, 총중량, 순중량

- 운송수단의 종류에 관계없이 수하인의 연락처 등에 관한 배송지(Delivery Address Details) 정보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Section A 검역장소(AQUIS Inspection Location)란에 호주 검역청(AQUIS)에서 주관하는 검역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재

3) 화물정보 및 납부세액의 계산

- 납부세액의 결정에 관한 내용은 Section A의 기초화물정보(Header Cargo Details)란과 Section C에 납부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관세평가, 품목분류, 원산지, 특혜관세 및 감면 등의 적용 여부를 기재하여 신고함
- Section A에 양륙항, 적출일, 송장상의 가격조건(Incoterms), 과세가격 사전심사 번호(Valuation Advice Number)를 기재
 - 관세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관한 사전심사를 받았거나 심사 중에 있는 경우 해당 심사번호를 기재하여 세관이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데 참고하도록 함
 - 가격 결정 요소(Valuation Elements): 송장 총액, 국제운송비, 포장비, 내륙운송비, 하역비 등
 - CIF, FOB 가격
- Section C(Tariff Line Details)에 물품설명, 수량 등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신고
 - 품목번호(8단위), 통계부호(2단위), 물품 설명 및 수량(Goods Description and Quantity Details)
 - 품목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 설명, 수량, 단위
- Section C(Tariff Line Details)에 과세가격 결정방법, 특수관계 여부 등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되, 필요한 경우 관세평가에 관한 추가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 관세평가

- 연번(추가 가능), 공급자 CCID(The Customs Client Identifier) 및 이름, 특수관계 여부, 과세가격 결정방법(valuation basis type): 제1방법 내지 제6방법, 감면부호(treatment code), 부가가치세(GST) 면세 여부
- 관세평가 요소(valuation elements type)
 - 가격, 금액, 통화단위
 - 필요한 경우 ICS에서 자동으로 산정된 금액 대신에 수입자가 신고하고자 하는 관세액, 운임 및 보험료, 송장금액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금액, 덤핑수출가격 및 과세환율 등을 추가적으로 신고할 수 있음
- 일반원산지 국가, 특혜원산지 국가, 특혜관세의 종류, 특혜 원산지 규정을 신고
 - 기본세율인 경우에는 'GEN'을 입력하고, 특혜세율인 경우 개발도상국에 대한 양허세율, FTA 협정세율 등의 적용 사유를 기재
 - 특혜원산지규정은 완전생산기준, 역내 부가가치기준 40%(Regional value content of 40%), 최소 30% 누적 기준(Minimum 30% content accumulation rule-tariff classification) 등 특혜 원산지 결정기준을 기재
- 감면 등 내국법령에 의해 적용한 관세율의 적용 사유(Tariff Instruments Details)를 기재함
 - 조례, 결정, 감면, 관세율 할당 등

4) 요건확인

- 신고서 하단의 추가정보 기재란에 해외공급자가 호주검역청 생산자 부호를 발급받은 경우 그 번호를 기재

나. 수출통관절차 및 수출신고서

- 수출신고의 절차 및 허위신고 등 수출신고 관련 벌칙은 호주관세법 section 113 ~

section 119에 규정함

- 호주에서는 수출허가, 환급 또는 소비세가 아직 납부되지 않은 물품 및 2천호주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출신고를 하며, 개인 휴대품 등 아래의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신고가 필요하지 않음
 - 개인 휴대품, 2천호주달러 이하의 소액물품, 애완동물, 관세법 162A에 따른 까르네 수출신고물품, 우편물, 외교관용 물품, 운송용구, 호주 국방부에서 수출하는 군수물품 등

- 호주의 수출신고서는 관세법 Sections 114(3)(c)와 162AA(3)(a)에 따른 B957 서식과 추가 정보를 기재하는 B957A를 사용

1) 수출통관 절차

- 수출물품의 화주 또는 대리인은 ICS에 수출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관에서는 수출신고번호(EDN, Export Document Number)를 부여하고 신고서 처리를 진행
 - 화물을 컨테이너 터미널에 이동시키기 위해 병합하는 경우, 세관에서는 병합 참조번호(CRN, Consolidation Reference Number)를 부여

- 신고서 내용 및 수출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고인에게 신고서의 보완 또는 수정통지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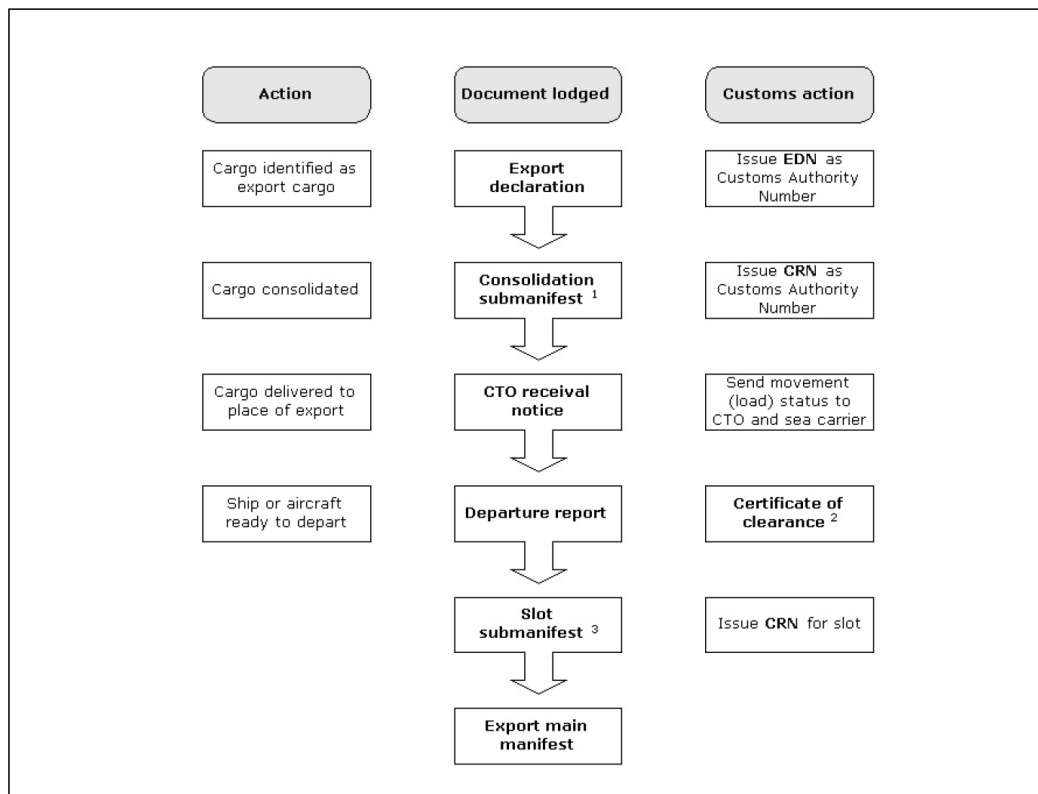
- 수출항에 도착한 물품은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인의 화물 수령 통지 후에 물품을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할 수 있음

- 출항신고서를 제출한 후에 세관에서 수출통관증명서(certificate of clearance)를 발급함
 - 선박 또는 항공기가 출발하기 3일 전까지는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세관에 출항신고를 하여야 함

- 컨테이너를 병합하기 전에 적하목록을 발행하여 화물을 관리하고, 통관절차의 마지막에 선적된 화물의 최종 적하목록을 발행

- 수출통관절차가 완료된 물품이 수출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출되지 않는 경우 수출신고는 자동으로 취하됨
- 수출신고인은 수출신고 관련 자료를 수출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세관에 제출한 수출통관정보는 호주통계청(ABS,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과 수출허가 발급기관과 공유함

[그림 Ⅲ-4] 호주 수출통관절차



자료: ACBPS, Export cargo reporting overview manual - V1.1 29/02/2008, p. 1.4

2) 수출신고서

- 수출신고서는 크게 기본정보(Header Details), 화물정보란(Line Details) 및 서명란(declaration)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기본정보는 운송수단, 화물 유형, 총FOB 가격, 총수량 및 총포장 및 컨테이너 수량, 적재항 등
 - 화물정보는 품목별 원산지, 물품 설명, FOB 가격, 순중량, 총중량 등으로 구성

가) 신고유형 및 운송정보

- 출항예정일, 보세구역장치물품 또는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으로 소비세(excise duty) 부과대상인 물품(담배 또는 주류)인지 여부를 반드시 표시
 - 보세구역장치물품인 경우 및 소비세 부과대상물품에 대해서는 보세구역을 표시
 - 화물고유번호, 신고대리인이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화주의 통관고유번호를, 필요한 경우 지사 ID, 병합 참조번호를 입력
- 수출신고의 잠정신고 후 사후보완 여부와 화물의 유형(export goods type)은 필수항목으로 함
 - 경매에 부쳐지거나 벌크화물 등은 수출신고를 하는 때에 화물의 가격, 중량, 수량 등이 확정되지 않고 선적된 후 확정됨. 이렇게 수출물품이 수출 후에 정기적으로 신고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출자는 세관에 수출신고 사후보완(confirming exporter) 자격을 승인받아 불확실한 신고항목에 대해 잠정신고를 한 후, 물품이 수출된 날로부터 세관에서 통지한 기한 내에 신고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음
- 화물을 적재부터 목적국 도착까지의 운송방법 및 운송용기에 관한 내용을 항목별로 신고
 - 적재항, 최초로 화물을 양륙하는 항구, 최종목적국, 항공 또는 해상운송수단, 선박 ID, 화물의 종류(컨테이너, 혼합, 비컨테이너, 벌크), 총포장수량, 총컨테이너 수를 신고

나) 화물정보

- 품목번호, 물품설명, 원산지, 수출요건 확인 등의 품목별 정보는 대부분 필수기재항목이며, 품목별로 서식 B957a에 추가로 작성할 수 있음
 - 일시수입신고번호, 해외 원산지 코드 및 순중량 항목은 선택하여 추가로 작성 가능
- 물품의 순중량, 순중량 단위, line별 FOB가격, 외포장을 포함하고 컨테이너 중량을 제외한 적재 시 화물의 총중량 및 총중량 단위를 신고
- 수출품목번호(AHECC, Australian Harmonized Export Commodity Classification), 물품설명, 원산지(Goods origin code), 순중량, 일시수입신고번호, 호주 이외의 국가에서 생산된 경우 해당 원산지(Goods origin country code)
 - AHECC는 수출물품의 품목분류를 위해 HS코드 6단위를 기초로 한 8단위 수출품목 코드로서, 호주 통계청에서 관리함. 품목번호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관세청에 Form B318에 수출품목번호 사전심사신청을 할 수 있음
- 수출신고물품 전체에 대한 결제금액에 대한 송장상의 총FOB 가격, FOB 가격 환산단위, 통화단위를 신고하여야 함

다) 수출요건확인

- 수출신고서에 수출요건 승인기관의 수출허가 또는 승인번호를 입력하여 ICS시스템에 연계된 호주검역청 등 요건확인기관의 수출승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ICS에는 AHECC와 수출허가 필요 여부가 자동으로 연계되어 수출허가 대상, 수출허가여부 확인대상 및 일반통관품목으로 분류
 - 수출품목번호별로 수출허가 번호, 요건확인 관련 법령부호 등
 - 신고인이 호주 검역청에서 수출물품에 대한 수출승인 및 검역을 관리하는 수출문서화시스템(Export Documentation System)에 수출허가를 신청하면 ICS시스템에 해당 정보가 전송되어 수출요건확인을 처리함

- 호주 통계청에서는 금속광물에 대한 화학검사(Assay) 결과 특정 화학성분 또는 이온으로 구성된 광석의 성분비율을 수출신고서에 기재하도록 함
 - 금속성분, 농도 및 단위를 신고하여야 함

5. 영국의 수출입신고서식 검토

- 영국⁴⁰⁾은 EU 회원국으로서 EU 관세법의 통관절차를 따르며, 국경 보안 및 통관의 적법성 관리는 국세청(HMRC, Her Majesty's Revenue and Customs)이 주관하고 있음

가. 통관절차

1) 수입통관절차

- 영국은 EU 회원국으로서 EU 관세법에 따라 역내물품과 역외물품에 대해 각기 통관절차를 달리함
 - EU 역외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당국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⁴¹⁾, 수입관세와 수입부가세(import VAT)를 납부하여야 함
 - EU 회원국 사이의 물품 이동에 대해서는 대부분 관세와 VAT가 부과되지 않으며 최소한의 세관 통제 하에 물품의 이동을 허용함⁴²⁾
- 영국의 수입통관절차는 일반적으로 ENS(수입요약신고, Entry Summary Declaration), 수입물품 제시(present), 요약신고(summary declaration), 수입신고 및 관세 등 납부,

40) EU 관세법상 수출입신고서식을 회원국들로 하여금 공통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일부 항목은 각 국가에서 선택가능하도록 함. 따라서 EU 회원국들을 대표하여 영국의 수입신고서식을 조사함

41) EU 관세법(Council Regulation(EEC) No. 2913/92) 제59조 내지 87조, 역외물품의 신고

42) '수입(importing)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EU 역외에서 수입되는 것을 내포하는 의미로 사용되며, EU 역내에서는 대부분의 물품은 자유유통 상태로 EU 회원국 간의 물품 이동은 '수입(importing)'으로 간주되지 않고 물품의 '이동(movement)' 또는 '수령(acquisition)'으로 분류함

물품 반출의 절차로 이루어짐

- 2011년 1월부터 새로운 안전 및 보안법이 시행되어 EU에 도착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화물운송인은 화물 적재 24시간 전에 회원국 간의 입항관리시스템인 ICS(Import Control System)에 ENS가 제출되어야 함
 - 영국의 ICS시스템에 신고된 ENS상의 입항번호(Movement Reference Number)가 운송인 또는 신고대리인에게 통지됨

- 운송인은 수입물품이 도착하면 세관에 물품을 제시하고 도착 후 3시간 이내에 요약신고를 하여야 함
 - 요약신고 양식은 C1600A를 제출하여야 하나, 그에 상응하는 내용의 상업서류 또는 전산기록으로 대체 가능

- 수입화주 또는 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이나 신고인과 같은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음
 - 통관대리인의 유형은 직접대리와 간접대리로 구분할 수 있음
 - 직접대리의 경우 통관대리인은 신고가 수리된 경우 관세 또는 VAT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
 - 간접대리의 경우, 자신의 명의로 공동으로 모든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음
 - 대리인은 통관절차를 진행하고 위임을 받은 경우 관세 등을 대신 납부할 수 있음

- 수입신고서는 전자통관시스템인 CHIEF(Customs Handling of Import and Export Freight system)⁴³⁾에 전자적 방식 또는 수동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일반수입신고는 C88양식을 사용
 - 관세사 등 수입신고인이 통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CHIEF에 전송

43) <https://www.gov.uk/chief-trader-import-and-export-processing-system>

- 제출된 수입신고서는 심사를 거쳐 4가지의 통관유형으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통관시간이 달라짐. NCH(National Clearance Hub)에서 물품 도착 후 2시간 이내에 CHIEF에서 선별한 검사대상 물품에 대해 추가로 제출한 서류를 심사⁴⁴⁾
 - Route 1: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물품 반출 전에 일반적인 서류심사를 수행
 - Route 2: 서류심사 및 화물에 대한 물리적 검사를 수행
 - Route 3: 세관공무원에게 물품의 정밀검사를 수행하고 수입신고서 내용에 대해 추가로 정보를 제출할 수 있어 심사시간이 길어짐
 - Route 6: 전산심사만을 수행하고 추가적인 서류제출 요구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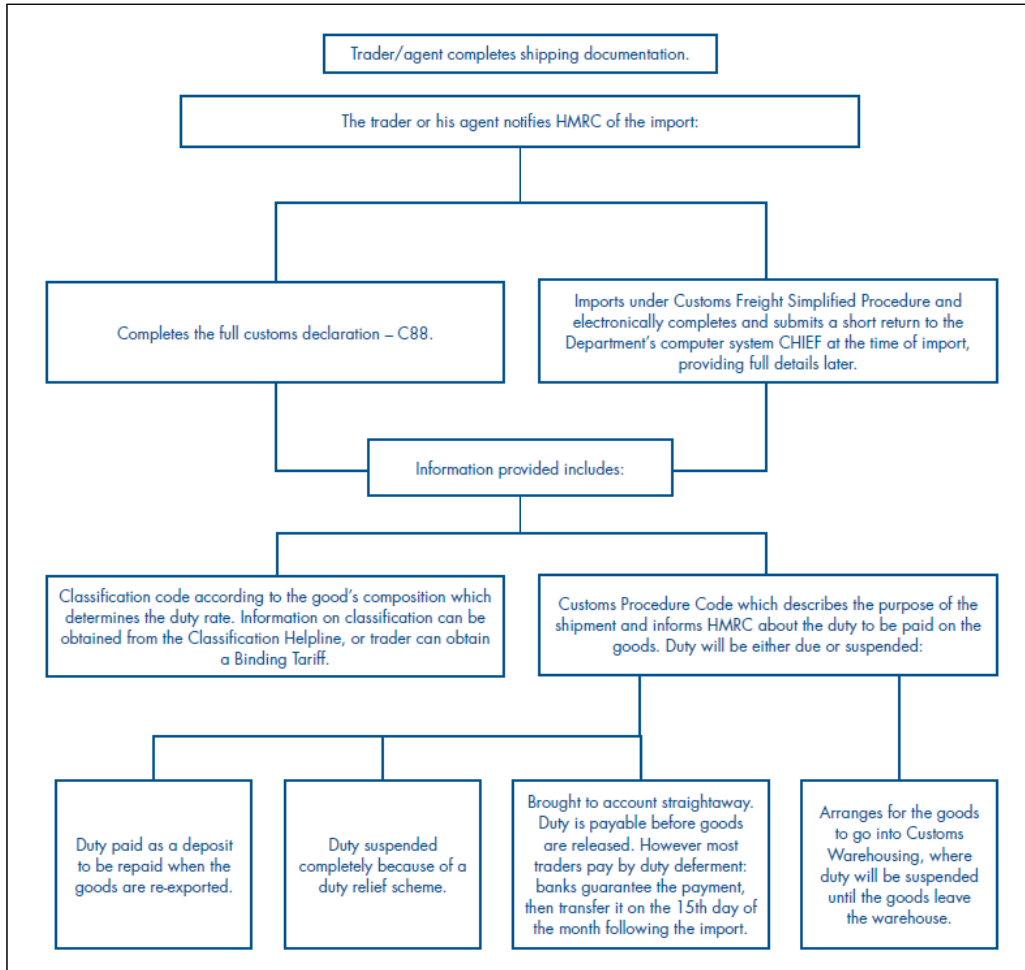
-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수입신고인이 계산하여 신고하고 그에 따른 서류 보관 등의 의무를 가짐
 - 수입물품에는 관세와 소비세, 부가세 및 담배와 주류에 대해서 소비세(excise duty)가 부과됨

- 관세 등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기 전에 물품을 반출할 수 없음
 - 다만 정기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납부기한 이후에 월별 납부를 신청하거나(defer payment)를 신청하여 납부를 연기할 수 있음. 이 경우 채무에 대해 은행, 보험회사 등에서 발급한 보증서를 제공하여야 함

- 수입신고를 한 자는 관련 기록을 4년간 보관하여야 함
 - HMRC는 필요한 경우 4년간의 신고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할 수 있음

44) <https://www.gov.uk/national-clearance-hub-for-goods-entering-leaving-or-transiting-the-eu>

[그림 Ⅲ-5] 영국 수입통관절차



자료: National Audit Office, "HM Revenue & Customs, The Control and Facilitation of Imports", 2008, Appendix 2, overview of the importing process

2) 수출통관절차

- 수출신고는 물품의 화주 또는 수출신고인이 할 수 있으며, 신고 권한의 위임은 직접대리 또는 간접대리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음
- 수출신고유형은 C88을 제출하는 일반수출신고 또는 SDP(simplified Declaration

Procedure) 또는 LCP(Local Clearance Procedure)의 신속한 수출통관 절차를 이용할 수 있음

○ NES에는 일반수출신고, 간소화된 수출신고 등 6가지 신고방법 가운데 선택

□ 수출신고인은 CHIEF에 신고서를 제출하며 수출물품을 적재하는 운송인이 ‘도착’ 메시지를 보내 물품을 세관에 제시

○ 물품적재인이 물품의 도착 통지를 하고, 세관에 메시지가 뜨면 법적으로 물품이 세관에 제시됨

□ 제출된 신고서는 NES(National Export System)에서 처리

○ NES는 전자수출통관시스템으로 국제화물을 전사적으로 관리하는 CHIEF 안에서 운영됨

○ 또한 CHIEF에는 EU 역내의 수출물품에 대한 보안 및 위험 관리를 수출관리시스템(ECS, Export Control System)과 연계되어, EU의 수출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함

□ 수출신고가 허가(Permission to Process)되면 물품을 적재하고 수출할 수 있음

○ 수출신고는 수입통관절차보다 일반적으로 덜 복잡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출신고는 제출하는 즉시 수리됨

□ 수출신고를 한 자는 신고관련 자료를 6년간 보관하여야 함

나. 수출입신고서

1) 개요

□ EU 관세법 제182조 3항, 관세규정 제205조 내지 217조에 따라 유럽연합(EC, European Community) 회원국들은 SAD(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를 수출입신고서로 사용하며, 영국에서는 이를 ‘C88’이라고 함

- EU 관세법상 수출입신고서 서식은 부속서 31(전산출력용: 부속서 32)과 품목별로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는 서식을 부속서 33(전산출력용: 부속서 34)에서 찾아볼 수 있음
 - EU 역내에서 역외물품의 이동을 위하여 필요하기도 하나, EU 역내에서의 거래에는 필요하지 않음
- 영국은 EU 관세규정(Commission Regulation(EEC) No. 2454/93) 부속서 37에서 정한 수출입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부속서 31~34의 수출입신고서를 사용
- EU에서는 일부 항목에 대해 각 회원국의 특징에 맞도록 변형하여 사용하도록 허용
- 수출입의 경우에 모두 사용하도록 거래종류별로 8부의 신고서가 하나의 세트를 이루며, 각 신고서 양식은 거래 종류에 따라 여러 양식을 함께 제출할 수 있음
- Part 2, 3는 수출신고, Parts 6~8은 수입신고의 경우, Part 1, 4, 5는 환적(transit)의 경우에 사용
 - copy 1(발송/수출국 세관용): 수출(발송) 또는 역내운송의 경우 회원국 관세당국에서 보관
 - copy 2(발송/수출국 세관-통계용): 수출(발송)국의 통계 목적으로 사용됨
 - copy 3(송하인/수출자용): 수출자 보관용
 - copy 4(목적국 세관용): 역내운송 목적국 세관에서 보관
 - copy 5(역내운송-반송): 역내운송의 반송본
 - copy 6(목적국): 수입 회원국 관세당국에서 보관
 - copy 7(목적국-통계용): 수입국의 통계 목적으로 사용
 - copy 8(수하인): 수입자 보관용
 - 거래 종류에 따라 수출/재수출 거래에 1, 2 및 3양식을, 역내운송의 경우 1, 4 및 5 양식을, 수입거래에 6~8 양식을 사용할 수 있음
 - 전산시스템에서는 신고건당 수입신고인용과 세관용의 2본(part 1/6, 2/7, 3/8, 4/5)이 함께 생성됨

- 수입통관 시 수입신고서와 함께 선하증권 또는 항공운송장, 상업송장, 원산지증명서, 포장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과세가격이 6,500파운드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C105A, C105B, C109 등의 서식에 특수관계 여부 및 과세가격 산정 내역을 기재하는 가격신고서(GVS, General Valuation Statement)를 제출하여야 함
 - 45유로 이상의 섬유제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서식 Form A와 같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향수, 주류, 화학제품 등 위험물에 대해서는 위험물품증명서(Dangerous Goods Certification)를, 개인 휴대품의 경우 C2, C3의 서식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또한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납부세액의 계산과 통계 목적의 납세신고서 (Supplementary Declaration)도 제출하여야 함⁴⁵⁾

- 수출입신고서 양식은 54개의 항목(boxes)이 모두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EU관세법에서 거래유형별로 필수항목을 지정하고 있음
 - 8가지의 통관 유형에 따라 필수, 각 회원국에서 선택 가능 또는 각 회원국 필수항목이지만 화주가 선택 가능함
 - 수출, 재수출, 환급, 역외가공, 역내수입을 위한 보세창고의 저장 또는 보세가공 통관절차를 위한 신고를 하는 경우 과세가격 세부정보, 특혜관세, 쿼터 등은 작성하지 않음
 - 자유유통, 역내가공, 일시수입, 자유무역지역에 물품 반입 등의 통관절차를 위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양륙지 등은 작성하지 않음
 - 환적의 경우 환적(transhipments)와 운송 중 기타 특이사항(other incidents during carriage)를 별지에 추가로 작성하여야 함
 - 인도조건(delivery terms)은 신고인이 아닌 관세당국이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부과지제도를 둔 나라에서만 기입하는 항목임
 - 원산지(Country of Origin), 공동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관

45) <https://www.gov.uk/supplementary-declarations-for-import>

련 등의 신고항목은 세관 입력란으로 함⁴⁶⁾

〈표 Ⅲ-8〉 EU 수출입신고서 신고 내용

연번	신고 내용	수출	수입	연번	신고 내용	수출	수입
1	신고유형(Declaration)	○	○	28	재무정보(Financial and banking data)	-	-
2	송하인/수출자 (Consignor/Exporter)	○	○	29	입항세관(Office of entry)	○	○
3	별지(Forms)	○	○	30	물품소재지(Location of goods)	○	○
4	적하목록(Loadng lists)	○	○	31	물품설명 및 중량(Packages and description of goods)	○	○
5	신고물품 수(Items)	○	○	32	품목 수(Item No)	○	○
6	포장수량(Total packages)	○	○	33	품목번호(Commodity Code)	○	○
7	화물식별번호 (Reference number)	○	○	34	원산지 부호(Country origin Code)	○	○
8	수하인(Consignee)	○	○	35	총중량(Gross mass(kg))	○	○
9	보증인(Person responsible for financial settlement No)	-	-	36	특혜관세 종류(Preference)	x	○
10	최초목적국 (Country first destin.)	-	-	37	통관절차(Procedure)	○	○
11	교역국(Trading country)	-	-	38	순중량(Net mass(kg))	○	○
12	가산, 공제요소 (Value details)	x	○	39	쿼터(Quota)	x	○
13	공동농업정책(CAP)	-	-	40	요약신고/연관신고서류(Summary declaration/Previous document)	○	○
14	신고인번호(Declarant/Representative)	○	○	41	추가 수량단위(Supplementary units)	○	○
15	탁송국(Country of dispatch/export)	○	○	42	물품가격(Item price)	x	○
16	원산지(Country of origin)	-	-	43	과세가격결정방법(VM code)	x	○
17	목적국(Country of destination)	○	○	44	추가정보/인증 등(Additional information/Documents produced/Certificates and authorisations)	○	○

46) 세관 입력란(신고항목 번호 9, 10, 11, 13, 16, 28)은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음(EU 관세규정 부속서 37)

〈표 Ⅲ-8〉의 계속

연번	신고 내용	수출	수입	연번	신고 내용	수출	수입
18	출항/입항 운송수단 국적(Identity and nationality of means of transport at departure/on arrival)	○	○	45	과세가격조정요소(Adjustment)	x	○
19	컨테이너(ctr.)	○	○	46	통계용 가격(Statistical value)	○	○
20	인도조건(Delivery terms)	○	○	47	세액의 계산(Calculation of taxes)	○	○
21	국경운송수단의 국적(Identity and nationality of active means of transport crossing the border)	○	○	48	납부유예 신청여부(Deferred payment)	○	○
22	통화 및 송장가격(Currency and total amount invoiced)	○	○	49	보세창고(Identification of warehouse)	○	○
23	환율(Exchange rate)	○	○	50	신고인(Principal)	○	x
24	거래유형(Nature of transaction)	○	○	51	경유예정지(Intended offices of transit(and country))	○	x
25	국경운송수단(Mode of transport at the border)	○	○	52	보증서(Guarantee)	○	x
26	내륙운송수단(Inland mode of transport)	○	○	53	목적지세관(Office of destination(and country))	○	x
27	양륙지(Place of unloading)	○	x	54	장소 및 일시(Place and date:)	○	○

주: 1. -: 세관 입력란
 2. 4, 9~13, 16, 20, 24, 27~29: 각 회원국에서 선택 가능한 항목들로 영국은 이 항목들을 채택하지 않음, 15, 19: 수동신고의 경우에만 작성, 50~53: 환적의 경우에는 필수

2) 신고 내용

- 영국은 수출입신고서 C88의 54개 항목 가운데 과세가격 세부내용, 인도조건 등 일부 항목들을 채택하지 않아 신고인은 이 내용들을 작성하지 않아도 됨
- 납부세액을 결정하고 통관절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은 품목번호(Commodity Code)와 통관 유형부호(Customs Procedure Code)임
 - 품목번호란(box 33)에는 수입의 경우 10단위 품목번호를, 수출의 경우 8단위 품목번호를 기재

- CPC(box 37)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사유로서, 일시수입물품,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인지 여부 등을 표시함⁴⁷⁾

가) 신고유형 및 운송정보

- 신고(Declaration): 물품이 EU 역내에서 자유유통 상태인지의 여부 및 물품의 도착 여부를 표시
 - EU는 EU 역내물품과 역외물품에 대한 수출입통관절차를 달리 운영하고 있음
 - EU 역내에서 완전 생산된 물품은 역내물품(Community status)으로, 관세 등을 납부한 수입물품도 이에 해당함. 역내물품은 관세 등을 부담하지 않고도 EU 회원국 간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함
 - 역내 수입(community/common transit)⁴⁸⁾은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물품의 EU 회원국 간의 이동에 대한 통관 절차로, 자유유통(free circulation) 상태가 되기 위한 절차를 역내물품보다 복잡하게 운영. EFTA 회원국 간의 이동에도 적용
 - EFTA 국가에 대해서는 'EU' 부호를 사용하며, EU의 특별 영역에 대해서는 'CO'를, 기타 물품에 대하여는 'IM'을 표기
- 통관절차(Procedure): 7단위의 통관부호로, 각 부호에 따른 통관절차 의무를 나타냄
 - 앞의 두 자리 숫자는 적용되는 통관절차를, 그 다음 두 자리 숫자는 당해 통관절차의 이전에 수행된 통관절차를, 나머지 세 자리 부호는 실제 적용되는 통관절차를 표시함
 - 앞의 네 자리 숫자는 수출, 수입, 보세가공 등의 통관유형을 세분화하여 표시하고, 뒤 세 자리 알파벳 코드는 역내가공, 역외가공, 감면, 일시수입, 농산물, 기타로 나누어 용도 또는 품목별로 적용되는 징수 코드의 기능을 함

47) 2008년 1월 SAD Harmonisation을 통하여 다른 EC 회원국들과 동일하게 6단위에서 7단위로 변경

48) 'Common Transit 협약' 가입국(EU국가,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크로아티아 및 터키) 간 교역에 있어, NCTS(New Computerized Transit System) 시스템을 통해 출발-도착간 모든 운송 과정을 전자 모니터링하여 운송 시간 및 비용을 감축하는 제도

- 물품이 도착한 상태와 운송방법 및 물품의 수출국, 목적국을 신고
 - 적하목록>Loading list)에는 적재한 물품 목록의 수를 기재하며, 포장 수량>Total Packages)에는 포장단위의 수를 신고
 - 운송방법과 물품소재지(Location of goods)를 기재
 - 운송수단의 국적(Identity and Nationality of means of Transport on arrival), 육상운송수단의 국적(Identity and Nationality of means of Transport crossing the border), 국경 운송수단(Mode of transport at the border), 내륙운송수단(Inland mode of transport)

- 요약신고/연관 신고서류(Summary declaration/Previous document)에 요약신고 여부와 당해 신고와 관련된 무역 서류와 신고서번호를 기재하여 화물반입단계 또는 이전의 화물 신고 내용을 참조함
 - 첫 번째 자리는 요약신고, 최초 신고 또는 연관 신고서류에 해당하는 부호를, 나머지는 요약신고서, 적하목록,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등의 제출서류에 해당하는 부호를 기재
 - 이전에 수입된 적이 있는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번호와 신고일을, 수출보세창고에서 반출하여 재수출하는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번호를, 역내수입물품의 경우 이전 통관신고번호를 기재

나) 화물정보

- 신고품목이 1개 이상인지 여부를 기재하고, 화물식별번호를 신고
 - 별지(Forms): 물품이 단일 품목(single item)인 경우에는 공란으로 둘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추가하는 별지의 수를 기재
 - 신고물품 수(Items): CHIEF시스템으로 신고하는 물품의 총수량을 기재
 - 화물식별번호(reference Number): 물품의 화주 또는 이해관계자가 부여한 화물 고유번호로, EU 이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통관목적의 물품 고유번호인 UCR(Unique Consignment Reference Number)를 사용하도록 권장

- 물품에 대한 설명, 품목분류에 따른 품목 번호, 물품의 중량 등을 기재
 - 물품 설명 및 중량(Packages and description of goods): 포장과 물품을 설명.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경우 컨테이너 식별 부호를 입력
 - 품목 수(Item number): 물품의 품목 번호에 따른 연번을 입력
 - 33a 품목번호(Commodity code): 연번에 따른 물품의 개별 품목번호를 입력, CAP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로 4단위를 기재
 - 총중량(Gross mass)에는 포장을 포함한 물품의 총중량을, 순중량(Net mass)에는 포장을 제외한 물품의 순중량을 기재
 - 추가 수량단위(Supplementary Units): 품목번호당 수량 단위가 1개 이상인 경우에 관세납부대상물품에 대한 수량을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또는 반올림함

- 수입신고서의 원산지란은 세관에서 기재하며, 신고인이 기재하는 난은 '34 원산지 부호(Country of Origin code)' 항목으로 수출, 재수출 또는 보세가공의 경우에만 해당함
 - 34a: CAP 수출 환급이 적용되는 경우 원산지를 기재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공란으로 둬. EU에서는 2란의 송하인 또는 수출자에 해당하는 국가를 기재하도록 함
 - 34b(세관 입력란): 보세가공의 경우 최종 실질적인 가공이 수행된 지역(region)을 기재

다) 납부세액의 계산

- 과세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표시하고, 추가정보란에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서류를 첨부할 수 있음
 - 물품가액(Item Price): 수입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송장상의 거래조건을 기재
 - 송장 금액 및 통화단위(Invoice currency and total amount invoiced): 통화단위와 송장 총액
 - 환율(Exchange Rate): HMRC에서 고시하는 환율을 기초로 환산된 영국 통화단위 금액
 - 과세가격 결정방법(Valuation Method): 제1방법 내지 제6방법 가운데 실제 적용된

방법을 선택

- 추가정보: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설명, CAP 쿼터 허가 및 신청서류 등을 첨부할 수 있음
- 과세가격 조정요소(Adjustment): 가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세가격 산정에 관한 세부내용을 기재
- 통계용 가격(Statistical Value): 파운드 단위로 물품의 통계용 가격을 기재

□ 특혜관세 적용사유, 관세쿼터 적용물품에 대한 감면코드 등을 신고하여 특혜관세 적용 여부를 신고서에 나타냄

- 특혜관세 종류(Preferences): 역외국으로부터 자유유통으로 수입되는 경우 기재하며, 감면 종류를 3단위 부호로 구분
 - 첫 번째 숫자는 4가지 특혜관세의 종류(무역협정에 의한 특혜관세, 일반특혜관세(GSP, Generalised System of Preferences), 기타 특혜관세, EU 회원국 간의 협정에 의한 관세)를 구분하고, 다음 두 자리 숫자는 관세 유예(tariff suspension), 용도세율, 관세율 할당 등의 적용 여부를 구분
- 쿼터(Quota): 관세쿼터 적용 신청 및 CAP 쿼터 허가를 받은 물품에 대한 감면 신청

□ 납부할 세액의 산정 내역을 ‘세액의 계산(Calculation of taxes)’란에 5개 항목별로 신고하고 납부 유예 신청 여부(Deferred Payment)를 입력하여야 함

- 세종과 세율의 해당 부호를 기재하는 세종(type), 관세 등을 계산하기 위한 가격 또는 수량을 기재하는 과세가격(tax base), 적용 세율에 관련된 정보를 기재하는 세율(rate), 납부할 세액(amount) 및 결제방법(method of payment)의 5개 항목을 기재

IV. 국제비교 및 시사점

1. 국제비교

가. 국가별 특징

- 개정교토협약의 권고내용과 같이 물품신고양식은 전자정보교환에 관한 국제표준에 기초하여 최소한의 신고사항을 요구하도록 하여야 함

- 조사대상국가의 통관절차는 큰 흐름을 같이 하지만, 수출입신고서 항목은 상이한 편임
 - 신고인, 수출국, 목적국 등의 기본정보를 제외하고는, 운송, 화물, 세액산정 근거의 구체적인 항목은 통일성을 찾아보기 어려움
 - 각국의 무역환경, 거래관습 및 통관정책을 반영하고 있어 수출입신고 정보를 일관되거나 유사하게 통일하는 것은 어려울 것임
 - WCO CDM을 통해 전자통관정보의 표준화가 시작되었으나, 지속적인 개정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수출입신고서는 국가별로 통관 특징을 반영하고 있음
 - 미국은 수입신고와 납세신고가 분리되어 있어 세액산정 근거는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후 1년 이내에 납세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하며, 수출 규제가 엄격하여 수출신고서에 각 법령에 따른 수출요건확인을 상세히 신고하여야 함
 - 호주는 수입신고내용에 대해 신고내용에 확신이 없거나 누락한 경우 수입신고서에 사전세액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출잠정가격신고제도를 두고 있음
 - 영국은 EU 회원국으로서 역외수입과 역내수입으로 구분하여 각 통관절차에 따른 항목들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음

-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영국의 수출입신고서와 비슷하게 신고내용이 상세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반면 일본과 호주는 신고 구성이 매우 간소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아래에서는 수입 및 수출신고서의 항목을 신고유형 및 운송정보, 화물정보, 세액계산으로 나누어 살펴봄

나. 수입신고서

1) 신고유형 및 운송정보

- 조사대상 국가들의 수입신고서에는 상단에 물품의 수입유형과 입항단계의 적하목록번호, 운송경로, 운송수단, 운송서류 번호 등의 운송정보를 기입함
 - 운송정보는 각 국가에서 공통으로 적하목록번호, 수출국, 입항(반입)일, 국내도착, 운송형태, 선(기)명, 선사(운송인) 이름, Master B/L번호, B/L(AWB)번호 및 포장수량을 신고하고 있음
 - 다만, 영국은 EU회원국으로서, EU 역내로 수입할 때 ENS와 수입신고 전에 요약 신고에 입항에 관한 대부분의 정보가 전송되기 때문에, 적하목록번호, 입항일 등의 정보는 수입신고서에 입력하지 않음
- 우리나라는 신고유형에 대한 신고내용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다소 복잡하고 상세히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는 징수형태, 출항전, 입항전, 보세구역 장치 후 등의 수입신고 시기에 따른 신고유형을 '통관계획'란에 기재하고, '신고구분'란에 일반신고, 간이신고, 서류제출 대상여부 등을, 일반수입, OEM 방식 등의 수입거래를 '거래구분'란에, 내수용 또는 외화획득 등 수입의 목적을 나타내는 '종류'를 신고하여야 함
 - 미국, 일본, 호주 및 영국에서는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통관절차를 간략히 신고하도록 함
 - 미국은 '반입형태'란에 화물의 수입형태를 확인하는 2자리 코드를 기입하고, 납세

신고를 하는 때에 즉시운송(Immediate Transportation)을 위해 반입된 물품에 대한 번호 및 즉시운송일자를 신고

- 일본에서는 세관에서 일반수입과 그 외의 무역형태로 구분하여 '무역형태별 부호'를 기재
- 호주는 일반수입통관 또는 긴급한 통관을 요하는 재난 구호물품, 긴급 의료물품, 선박·항공기 등의 수리용 부품 등에 대한 특별통관대상인지 여부만을 표시
- 영국은 EU회원국으로서 역내 또는 역외수입 여부를 '신고유형'란에서 구분하고, '통관절차'란에 수출, 수입, 보세가공 등의 통관절차와 역내가공, 역외가공, 감면, 일시수입 등의 추가서류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는 7단위 부호를 입력

□ 운송정보는 입항일, 운송서류, 운송수단, 반입장소 등 다른 국가들에서도 신고내용이 우리나라와 대략 유사함

- 우리나라에서는 입항에 관한 운송서류, 반입장소 등의 정보 이외에 전자인보이스 제출번호를 신고하여야 함
- 미국은 물품신고와 납세신고서에 모두 운송정보를 신고하여야 함
- 일본에서는 요약신고를 제출하기 때문에 비교적 간략하게 입항일, 반입항, 선(기)명, 적출지, 선하증권번호, 반입장소의 신고항목들로 이루어짐
- 호주는 수입신고서의 세 부분(section) 가운데 Section B(Transport Details)에 해당 운송수단별로 '화물정보'란에는 선적항, 양륙항 등에 관한 내용을, '운송정보'란에는 선사번호, 운송서류 등을 신고하도록 되어있음
- 영국에서는 물품이 도착한 상태와 운송방법 및 물품의 수출국, 목적국을 신고하며, '요약신고/연관 신고서류'란을 두어 화물반입단계 또는 이전의 화물 신고 내용을 참조하도록 함

〈표 IV-1〉 수입신고서의 신고유형 및 운송정보 국제비교

구분	우리나라	미국		일본	호주	영국
		화물반입신고	납세신고			
신고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수형태 • 통관계획 • 신고구분 • 거래구분 •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입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입형태 • I.T. 번호, 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형태별 부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수입신고/특별통관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유형 • 통관절차
입항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관리번호 • 입항일 • 반입일 • 국내도착항 • 적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하목록수량 • 적하목록번호 • 입항(반입)일 • 반입항 • 양륙항코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일 • 반입항코드 • 수출국, 수출일 • 선적항 • 양륙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항일 • 반입항(부호) • 적출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적항 • 양륙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하목록 수 • 수출국 • 목적국 • 도착지
운송 및 포장 명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형태 • 선(기)명 • 운수기관부호 • Master B/L 번호 • 총중량 • 총포장개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형태 • 선(기)명 • 운송인코드 • B/L(AWB) 번호 • 항해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수단 • 운송인명 • B/L(AWB) 번호 • 총중량, 적하 목록수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기)명, 국적부호 • B/L(AWB)번호 • 외포장 수량 및 포장명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사 번호 • 화물 유형 • 컨테이너번호 • Ocean B/L(AWB) 번호 • House B/L(AWB)번호 • 외포장수량 • 포장명세 • 총중량 • 순중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테이너의 국적 • 육상운송수단의 국적 • 국경 운송수단 • 내륙운송수단 • 포장 수량 • 총중량
반입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반입)장소 • 전자인보이스 제출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고번호 • 검사(반입)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입장소 및 G.O. 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입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역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 소재지 • 보세창고 • 요약신고/연관 신고서류

2) 화물정보 및 납부세액의 계산

- 관세액의 계산은 품목별 및 전체 세액을 신고하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품목분류 결정을 위한 물품명세, HS번호 등의 내용을 화물정보로 분류함
- 신고품목이 1개 품목 이상인 경우 품목별로 과세가격, 품목분류, 품목별 결제금액, 적용세율, 원산지 등의 신고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 화물정보의 내용은 대부분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HS코드 결정을 위한 물품 설명, 수량, 중량, 단위의 항목으로 구성되나, 우리나라는 품목분류 결정을 위한 물품설명을 모델, 규격, 성분란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신고서 항목이 많은 편임
 - 우리나라는 품명, 거래품명과 상표 외에도 품목분류, 세율확인,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 관세감면, 분할납부 대상 확인에 필요한 모델, 규격, 성분을 신고하는 란이 있음
 - 미국에서는 화물반입신고 시에는 간략하게 신고하되, 납세신고서를 하는 때에 관세율 결정에 관한 물품 명세 등을 상세히 신고하도록 함
 - － 화물반입신고 내용: 송장상의 총금액, 원산지, 상품명세, 적하목록사의 수량, HS 코드, 개별담보 여부
 - 일본은 원산지, 품명, HS 코드, 수량 및 단위 등 신고내용이 매우 간단함
 - 호주에서는 신고서의 Section C(Tariff Details)에 품목분류와 관계된 물품설명을 기재하도록 함
 - － Section B(Transport Details)의 운송정보에 화물정보(Cargo Details)란이 별도로 있으나, 여기에는 물품이 호주에 도착한 상태에 관한 중량 정보만을 신고하도록 하고, Section C(Tariff Details)에 품목분류를 위한 물품설명을 신고하도록 함
- 한편, 호주와 미국에서는 원산지를 일반원산지와 특혜원산지를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호주와 미국에서는 일반원산지와는 별도로 특혜원산지를 기입하고, 특혜원산지 등 특혜관세의 적용에 관한 내용을 신고하여야 함
 - －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수입신고서에 일반원산지만을 기재함

〈표 IV-2〉 수입신고서의 화물정보 국제비교

구분	우리나라	미국	일본	호주	영국
		납세신고			
물품 명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 • 거래품명 • 상표 • 모델·규격 • 성분 • 세번부호(HS코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련번호 • 상품명세 • HS코드, AD/CVD 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설명 • HS코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 설명 • HS코드 • 통계부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지 • 신고물품 수 • 화물식별번호 • 품목별 연번 • 물품 설명 • HS코드
원산지 및 수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 • 수량(품목별) • 순중량 • 수량(HS단위) • 환급물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 • 수량(HS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부호) • 수량(HS단위) 및 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원산지 • 특혜원산지 • 수량 • 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 부호 • 총중량 • 순중량 • 추가 수량단위

□ 관세 및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의 계산은 품목별로 물품가액, 과세가액 결정방법, 운임 및 보험료 등, 관세율, 내국세율, 감면 또는 특혜관세종류, 그리고 신고물품 전체에 대하여 송장상의 결제금액, 납부할 세액

□ 일본의 신고내용이 매우 간소하고 다른 국가들은 신고항목이 유사한 편이나, 이 부분 역시 우리나라는 다소 복잡하게 구성된 편임

○ 우리나라는 품목별로 기재하는 난에 과세가액, 적용세율 및 관세액을 신고하고, 전체 신고물품에 대한 동일한 내용과 과세가액 조정, 내국세 과세표준 등 상세한 세액 산출 과정이 신고서 하단에 나타남

○ 미국도 납세신고서에 품목별 관세액과 신고물품 전체에 대한 관세액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음

○ 일본과 호주의 신고서는 품목별 관세액 신고란은 없으나, 호주는 품목별로 과세가액 결정방법 및 세율 등의 과세요건을 기재하여야 함⁴⁹⁾

□ 우리나라는 수입신고서에 가격신고서 유무만을 표시하고 과세가액 결정방법에 관한 내

49) 신고정보에 따라 세관에서 산출한 세액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수입신고서에 납부할 세액이 나타나지 않음

용은 신고하지 않는 반면, 다른 국가들은 과세가격 결정방법 또는 특수관계 여부 등 거래가격결정에 관한 내용을 수입신고서에 나타내도록 하고 있음

- 미국은 납세신고서에 특수관계 여부를 표시하고, 관세평가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일본도 제1방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평가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나, 수입신고서의 평가신고란에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호주는 특수관계 여부, 과세가격 결정방법(제1방법 내지 제6방법), 관세평가 요소 등 수입신고서에 과세가격에 대한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신고
- 영국도 우리나라와 같이 가격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입신고서에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기입하는 난을 두고 있음
 - ‘과세가격 조정요소(Adjustment)’란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세가격 산정에 관한 세부내용을 기재할 수 있음

□ 우리나라와 달리, 협정에 의한 특혜관세 적용사유를 기재하고 특혜원산지를 신고하도록 하는 국가는 미국과 호주로 조사됨

- 미국에서는 납세신고를 하면서 특혜협정명칭 및 특혜원산지를 따로 표기
- 일본은 감면 조건 및 감면부호란을 두어 특혜세율을 표기하도록 함
- 호주는 협정에 의한 특혜세율과 내국법령에 의한 감면 등에 의한 세율을 구분하여 신고하도록 함
 - 일반원산지 국가, 특혜원산지 국가, 특혜관세의 종류, 특혜원산지 규정을 신고하고, 감면 등 내국법령에 의해 적용한 관세율의 적용 사유를 기재하는 난을 별도로 두고 있음
- 영국은 특혜관세 종류(Preferences)란에 특혜관세 적용사유, 관세 유예(tariff suspension), 용도세율, 관세율 할당 등의 적용 여부를 구분하도록 함

□ 호주 수입신고서의 특이사항은 신고내용에 대해 확신이 없거나 정보를 누락하여 신고서의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수입신고서에 해당 항목에 대하여 세관에 수

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수입자 또는 관세사는 ‘황색신고 사유(amber reason)’에 해당하는 신고항목을 표기하고, 관련 ‘황색신고 사유서’를 첨부하여 세부 내용을 작성하여야 함
- 황색신고 사유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황색신고 대상으로 분류되어, 세관공무원은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물품검사를 수행할 수 있음

〈표 IV-3〉 수입신고서의 관세액 계산 국제비교

구분	우리나라	미국	일본	호주	영국
		납세신고			
과세 가격 및 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가 • 금액 • 과세가격 • 특수세액 • 세율의 종류 • 세율 • 감면율 • 세액 • 감면분납부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금액 • 운임, 보험료 등 • 특수관계여부 • 관세율, AD/CVD • 내국세율 • 관세 및 내국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가격(CIF) 및 내국소비세등 과세표준 • 관세평가신고 • 관세율 및 내국세율 • 감면조건 및 감면부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관계해당 여부 • 과세가격결정 방법 • 운임, 보험료 등 • 감면부호 • GST 면세 여부 • 특혜관세적용 사유 • 특혜원산지규정 • 내국법령에 의한 관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가액 • 환율 • 과세가격 결정방법 • 추가 제출서류 • 과세가격 조정요소 • 통계용 가격 • 특혜관세종류 • 쿼터
납부 세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제금액 • 환율 • 총과세가격 • 운임 • 보험료 • 가산금액 • 공제금액 • 총부가가치세과표 • 세종(합계) • 세액(합계) • 총납부세액 • 납부(고지)서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금액 • 총관세 • 총내국세 • 기타비용(MPF등) • 총 납부 세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액 및 내국 소비세 등 세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조건 • 결제금액 • 운임, 보험료 등 • CIF, FOB 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장 금액 및 통화단위 • 세액계산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신고서 유무 • 원산지증명서 유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인번호 및 Bond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및 연장할 세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가격 사전심사번호 • 황색신고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유예 신청 여부

- 우리나라의 사전세액심사제도와 유사하지만, 납세의무자가 사전세액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과 사전세액심사 신청 대상이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소들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법규준수도가 낮은 신고인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세관에서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지정하는 것과 달리, 호주에서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사전세액 심사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황색신고 신청 대상으로 품목분류, 반덤핑관세/상계관세, 원산지, 특혜관세, 수량, 관세평가 등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품목분류나 과세가격결정에 대한 납세심사보다 광범위하게 정하고 있음

3) 검사 및 요건확인

- 영국을 제외하고는 수입신고서에 검역 등 물품별로 수입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기관의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관련 법령, 요건확인기관, 요건확인 여부 등을 신고하도록 함
 - 우리나라는 타 법령에 의한 수입요건확인 관련사항으로 관련 법령, 수입요건확인서류명 및 발급일자 등을 신고
 - 미국은 기타 요건확인과 관련하여 각종 비자 및 증명서가 있는 경우 농산품관련 허가서, 섬유관련 증명서 등 모든 비자 및 증명서 번호를 기재하도록 함
 - 일본 수입신고서에는 수입승인 및 허가번호를 기재
 - 호주는 시스템에 전송된 신고내용이 검역청에 전달되어 관련 내용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어 별도로 요건확인에 관한 내용을 신고하지 않아도 됨
 - 영국은 요건확인란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표 IV-4〉 수입신고서의 요건확인 국제비교

우리나라	미국	일본	호주	영국
	납세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S 검사 • 검사변경 • 사후확인기관 • 수입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sa 및 증명서, 허가서 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승인 및 허가 번호 • 첨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검역청 생산자 부호 	-

다. 수출신고서

- 수입신고서와 달리 수출신고서는 비교적 간단한 항목으로 구성되며 그 신고내용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와 조사대상 국가들이 비교적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음
- 각국의 수출신고서는 신고유형 및 운송정보, 화물정보, 수출요건확인으로 구분하여 비교함

1) 신고유형 및 운송정보

- 호주를 제외한 모든 조사대상국에서 수출신고서에서 신고유형의 구분을 하고 있고, 수출신고서에서 요구하는 운송정보에 대한 내용도 대부분 유사함
- 다만, 미국, 일본, 영국은 신고유형을 하나 또는 두 개의 항목으로 비교적 단순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신고구분, 수출거래구분, 수출종류 구분으로 세분하여 보다 상세적인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그밖에 우리나라는 무역거래에 대한 대금결제방법, L/C거래인 경우 L/C 번호, 반송하는 경우의 반송사유도 기재하도록 함
- 운송정보는 모든 조사대상국에서 선적항, 목적지, 운송수단에 대한 내용, 출항예정일 등의 사항을 신고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비교적 표준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미국은 노선수출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이 추가되어 있음
- 일본은 수출화물이 보세운송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보세운송기간 등 관련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호주는 담배 또는 주류와 같이 소비세 부과대상인 물품인지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특징이 있음

〈표 IV-5〉 수출신고서의 신고유형 및 운송정보 비교

구분	우리나라	미국	일본	호주	영국
신고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구분 • 거래구분 •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옵션표시 • 수출정보코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형태 부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유형 • 통관절차
운송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국 • 적재항 • 출항예정일자 • 운송형태 • 선박회사(또는 항공사) • 선박명(또는 항공편명) • 적재예정보세구역 • 물품소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목적국 • 수출항 • 수출일 • 운송방법 • 운송인명 • 운송인식별코드 • 운송참조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지 및 도착지 부호 • 선적항 및 선적항 부호 • 출항예정일 • 선적일자 • 선(기)명 및 선(기)국적부호 • 반입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목적국 • 최초 양륙항 • 적재항 • 출항예정일 • 운송수단 • 선박 ID • 보세구역장치물품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국 • 도착지 • 수출국 • 운송수단의 국적 • 육상운송수단의 국적 • 국경 운송수단 • 내륙운송수단 • 물품 소재지 • 보세창고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송사유 • L/C번호 • 결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선수출거래 확인 • 봉인번호 및 설비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세운송(승인, 기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세 부과대상 물품여부 • 총 컨테이너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하목록 수 • 컨테이너의 국적

2) 화물정보

- 우리나라와 조사대상 국가들이 상품 명세, HS 코드, 수량, 신고가격 및 결제금액 등에 대한 내용을 신고한다는 전체적인 틀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각국의 상황에 따라 일부 신고항목이 추가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음

- 우리나라는 수출물품이 신품인지, 중고품인지의 물품상태를 나타내는 항목과 품명 이외에도 상표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수출조건부 수입물품의 수출신고시에는 해당 수입신고번호를 기재, 송품장의 번호까지 기재하는 항목까지 마련하고 있음
 - 미국은 위험물 표시 및 자유무역지역에서 반출된 물품을 확인하기 위한 표시, 그리고 화물이 담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운송되는 경우에 있어 담보코드를 기재하도록 함
 - 일본은 화물에 대한 필수정보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조사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음
 - 호주는 화물의 가격, 중량, 수량 등이 확정되지 않고 선적된 후 확정되는 경우 잠정 수출신고 가능
 - 영국은 화물 고유식별번호인 UCR을 기재하고 요약신고 및 요약신고서류에 대한 내용에 대한 항목을 추가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임
- 특히, 호주에서는 우리나라의 수량에 대한 잠정수출신고와 달리, 수출신고를 하는 때에 화물의 가격, 중량, 수량 등이 확정되지 않는 경매에 부쳐지는 물품, 벌크화물 등의 물품에 대해 수출신고 사후보완(confirming exporter) 제도를 두고 있어 잠정 수출신고를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가스, 액체 등 수출신고시 수량 확정이 곤란한 물품에 대한 잠정수량신고 형태의 수출신고를 할 수 있음
 - 배관 등 고정운반설비를 이용해 적재하는 경우 또는 제조공정상의 이유로 수출신고시에 수량확정이 곤란한 물품(가스, 액체, 전기, HS 제50류 내지 제60류 중 직물 및 편물 등)을 대상으로 함

〈표 IV-6〉 수출신고서의 화물정보 비교

구분	우리나라	미국	일본	호주	영국
물품명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상태 • 품명 • 거래품명 • 상표명 • 모델·규격 • 성분 • 세번부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명세 • 물품분류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 • HS 코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의 유형 • 화물의 종류 • 물품설명 • 수출품목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식별번호 • 신고물품 수 • 물품 설명 • 품목번호
수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량 • 포장개수 • 순중량 • 총중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측정단위 및 기본수량 • 보조측정단위 및 보조수량 • 적하물 무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량 및 단위 • 화물 총 수량 및 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포장 수량 • 순중량 • 순중량 단위 • 총중량 • 총중량 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 수량 • 추가 수량단위 • 물품별 중량 • 총중량 • 순중량
신고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가 • 금액 • 신고가격 • 수출결제금액 • 운임 • 보험료 • 결제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가격(FO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ne별 FOB가격 • 송장상의 총 FOB 가격 • FOB 가격 환산 단위 • 통화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장 금액 및 통화단위 • 환율 • 통계용 가격
원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 • 해외 원산지 코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 부호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 부호 • 수입신고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표시 • 담보코드 • 자유무역지역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잠정신고 • 일시수입신고 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약신고/연관 신고서류 • 추가 제출서류

3) 수출요건확인

□ 수출요건과 관련한 신고항목은 각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는 수출요건별 요건승인번호 등 요건확인 일련번호를 기재하는 것 외에 수출검사희망일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미국은 각종 수출허가 및 수출규제번호, 중고자동차의 경우에 있어서의 등록번호 및 제품번호 등의 정보 요구, 킴벌리프로세스 증명번호 등을 비교적 다른 국가에 비해 상세히 신고하도록 구성하고 있으며 특이한 것은 수입신고서와 마찬가지로 수출신

- 고시에도 거래당사자의 특수관계 여부를 표시하도록 한다는 점임
- 일본은 수출요건을 규정하는 관계법령을 표기하고 수출승인 및 허가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호주는 제품별 수출허가 번호 등 요건확인 관련 사항 외에 금속광물에 대한 화학검사결과 특정 화학성분 등을 신고하도록 함
 - 영국은 수출요건과 관련한 신고항목이 없음

〈표 IV-7〉 수출신고서의 수출요건확인 비교

우리나라	미국	일본	호주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회망일 • 수출요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 번호 또는 허가 면제 번호 • 수출허가 번호 • 수출규제 번호 • 자동차 확인번호 및 제품번호 • 자동차 등록번호 및 자동차등록 주 정보 코드 • 국무부 DDTC 요건 및 김벌리프로세스 증명 번호 • 특수관계여부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법령 해당 여부 • 수출승인 및 허가번호 • 첨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번호별 수출 허가 번호 • 품목번호별 요건 확인 관련 법령부호 • 수출요건 확인번호 • 금속광물에 대한 화학검사(Assay) 결과 	-

2. 시사점

- 본고에서는 신고서식 항목의 축소, 원산지 항목 분리, 그리고 별도 신청서의 내용 편입 등에 초점을 맞춰 살펴봄
 - 유사한 내용을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들을 통합하여 축소하는 방안
 - 일반원산지표시항목과 특혜원산지항목을 분리하는 방안
 - 과세가격이나 특혜관세의 적용을 위하여 별도로 제출하는 각종 신청서들의 내용을

수입신고서에 편입하는 방법 등

가. 신고서식 구성의 간소화

-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입신고서는 내용이 중복되거나 형식적인 내용을 입력하는 항목이 다소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구체적으로는 신고유형, 화물정보기재란, 관세액 산출의 신고항목들이 이에 해당함
- 우선 우리나라의 수입신고서에는 통관의 목적을 기재하는 난으로 ‘통관계획’, ‘신고구분’, ‘거래구분’, ‘종류’의 4개 항목을 두고 있으나, 같은 내용에 대해 다른 국가들은 한 항목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 미국과 일본, 호주에서는 수입형태 또는 긴급한 통관을 요하는지 여부만을 표시함
 - 미국은 화물반입신고서에 무관세, 일반관세, 쿼터, 자유무역지대, 정부기관의 물품 반입 등 수입의 종류 또는 용도에 따라 2자리 수입형태코드를 기입하고, 납세 신고서에 즉시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를 표시
 - 호주의 수입신고서에는 긴급한 통관을 요하는지 여부만 기입
 - EU는 EU 역내 또는 역외수입 여부를 ‘신고유형’에 기재하고, 7단위 부호로서 수출, 수입, 보세가공, 감면, 일시수입 등 일반수입통관이 아닌 경우를 구분하도록 함
- 이런 다른 국가들의 제도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통관계획’의 수입신고 시기와 ‘신고구분’의 일반신고 또는 간이신고 여부, 통계 목적의 신고사항인 ‘거래구분’과 ‘종류’의 내용을 하나의 부호로 신고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우리나라는 품목분류를 위한 화물정보로서, 품명, 거래품명, 상표를 반드시 기재하고 품목분류·세관장확인 물품·관세환급·관세감면·과세가격 등의 심사 목적으로 모델, 규격, 성분을 선택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이들 여러 항목들을 물품명세란으로 통합하되, 신고물품이 품목분류사전심사를 받은

물품인 경우 HS코드란에 품목분류사전심사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납세심사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실제 신고내용은 관세율표상 품명과 상업송장상의 품명이 반복되는 등, 이들 항목들의 정보가 중복되는 정보를 요구하도록 구성되어 있음
- FTA 체결과 함께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품목분류사전심사정보를 참고함으로써 품목분류를 위한 서류제출요구 또는 검사 등의 행정절차의 중복을 줄일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수입신고서 중앙에는 납부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 특혜관세 및 감면 등의 적용 여부 및 산출세액을 품목별로 신고하고, 전체 신고물품에 대해서는 신고서 앞면 하단에 나타내도록 하고 있음

- 1개 이상의 품목에 대해서는 별지로 추가할 수 있으며, 다른 나라들도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음

□ 그런데 과세가격 조정요소인 운임, 보험료, 가산금액, 공제금액 등은 품목별 신고항목에는 빠져 있고, 전체 물품에 대해 신고인이 물품별로 따로 계산하여 안분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신고과정에서는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미국, 일본, 호주, 영국에서는 품목별 세액산출과정에 상기의 과세가격 조정요소 등을 기재하고, 전체 신고물품에 대해서는 총납부세액만 신고서에 나타냄
- 또한 전체 신고물품에 대한 총과세가격, 총세액 등은 자동계산되어 산출되기 때문에 별도로 수입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임

□ 따라서 전체 신고물품에 대해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과세가격, 운임, 보험료, 가산요소 등은 품목별 신고내용으로 편입시키고, 전체 신고물품에 대한 총과세가격, 총세액 등은 생략함으로써 신고절차의 효율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납세심사를 위해서는 품목분류와 마찬가지로 과세가격사전심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나타내야 될 것으로 보임

- 한편, 우리나라 신고서식의 전체적인 구성은 호주의 사례를 참고하여 내용별로 항목군을 구분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음
 - 화주, 신고가격 등 기본사항을 기재하는 Section A, 해당 운송수단을 선택하여 운송 정보를 기재하는 Section B(Transport Details)와 납부세액 산정과 관련된 과세가격, 세율 등의 정보를 기입하는 Section C(Tariff Details) 등 3개의 Section으로 구성
- 호주의 수입신고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기입하는 정보의 목적을 알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구성되어 있음
 - 예를 들어, 화물정보는 Section B(Transport Details)의 운송정보에 화물정보(Cargo Details)란이 별도로 있으나, 여기에는 물품이 호주에 도착한 상태에 관한 중량 정보만을 신고하도록 하고, Section C(Tariff Details)에 품목분류를 위한 물품 설명을 신고하도록 함
- 따라서 수입신고서상의 항목들을 입항단계의 정보와 납세심사 목적의 정보들로 구분하여, 서식의 단순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나. 가격신고서 내용을 수입신고서에 통합

- 우리나라는 수입신고를 할 때 수입관련거래와 과세가격산출내용에 관한 산출근거, 가산·공제금액에 관한 사항의 첨부서류로 가격신고서를 수입신고서와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 「관세법」 제27조(가격신고)에 의하면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가격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
 -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이 제1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는 가격신고서A, 제2방법 내지 제6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는 가격신고서B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제출
 -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신고서와 그 증명자료를 별도로 제출
 - 과세가격이 미화 1만달러 이하인 물품과 종량세 적용물품은 생략 가능⁵⁰⁾

50)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 제45조, 46조

- 가격신고서에는 과세가격 결정에 중요한 근거가 되는 선적일, 거래가격 성립요건, 수출 판매 여부, 수입관련 계약, 수입대금 지급, 가산금액, 공제금액, 잠정가격신고 등의 내용이 기재됨
 - 수입신고서에는 가격신고서의 제출 여부만을 기재

- 이러한 가격신고서는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세자료이므로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지만, 현재 가격신고서의 작성실태를 보면 관세사가 가격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입자로부터 충분히 받는 데 한계가 있으며 작성에 따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음

- 반면, 미국, 일본, 호주와 영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수입신고서에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정한 경우에 가격신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물품신고와 납세신고가 분리되어 있는 미국은 납세신고시 당해 거래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지 여부를 표기하고 관세를 책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미국은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특별한 의심이 없는 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는 제도 운영
 - 일본의 경우 수입신고서 하단에 별도로 마련된 평가신고란에 가격신고의 종류, 포괄신고여부 등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고 과세가격과 실제 지불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등 원칙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1방법)이외의 방법으로 과세가격 계산시 별도의 평가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평가신고는 납세신고 시마다 제출하는 개별신고와 개별납세신고에 앞서 포괄적으로 하는 포괄적 신고로 나뉨
 - 포괄적 신고를 할 경우 필요사항을 기재한 평가신고서를 수입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제출
 - 호주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특수관계 여부, 과세가격 결정방법(제1방법 내지 제6방법)내용을 신고하며, 별도의 가격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음

- 영국의 수입신고서에는 실제로 적용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표기하고, 세부 내용을 첨부할 수 있는 추가기재란을 두고 있음
 -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서 이외에 가격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 과세가격이 6,500파운드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특수관계 여부 및 과세가격 산정 내역을 기재하는 가격신고서(GVS, General Valuation Statement)를 제출하여야 함
- 따라서, 우리나라도 수입신고서에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항목을 따로 두어 별도의 가격신고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특정한 경우에만 가격신고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통관절차의 간소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한편, 가격신고서 외에도 수입신고서 제출하는 서류로 관세감면(분납)적용신청서, 용도세율적용신청서, 합의에 의한 세율적용 신청서, 협정관세적용신청서 등 부가적으로 제출하는 서류가 많고 이들 서류의 작성 항목이 수입신고서의 내용과 중복되는 것이 많으므로 수입신고서에 일괄 통합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선통관 후심사 원칙에 따라 필수사항만을 수입신고서에 기재하도록 한 후, 의심가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금융정보 등 각종 과세인프라를 활용한 사후 관세심사 및 조사기능을 강화할 수 있음

다. 원산지표시항목과 특혜원산지항목 분리

- 원산지제도는 크게 특혜원산지제도와 비특혜원산지제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원산지판정의 기준, 제출하여야 할 원산지증명서 등이 서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
 - 특혜원산지는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것으로 GSP, GSTP, APTA 및 FTA의 원산지가 여기에 해당
 - 비특혜원산지는 상품의 차별화를 통해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과 특정국에 대한 반덤핑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쿼터제도 등 무역제한조치에 활용되는 것임

- 즉, 특혜원산지규정은 특혜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역내산 물품의 판정기준이며 비특혜원산지규정은 원산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산지규정임
- 우리나라는 특혜원산지와 관련해서는 「관세법」에서, 비특혜원산지와 관련해서는 「대외무역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관세법에서는 원산지확인절차를 규정하고, FTA특례법에서는 특혜원산지의 증명 및 확인절차를, 대외무역법에서는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및 판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원산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수입신고서에는 관세법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하여야 할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구비 여부와 일반원산지결정에 관련된 원산지국가,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표시방법을 기재하는 항목이 있음
 - 수입신고서 ‘①9원산지증명서 유무’란에 「관세법」 제232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91조에 의거 세관장이 원산지를 확인해야 할 물품으로서, 원산지증명서 구비 여부를 기재
 -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한 경우 : Y
 -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대상인 경우 : X
 -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 N
 - 수입신고서 ‘④6원산지’란에 상품의 원산지(생산·제조국) 국가부호, 원산지결정기준부호, 원산지 표시유무, 원산지 표시방법, 원산지표시 면제사유를 기재
- 우리나라의 수입신고서상 원산지관련 신고항목은 원산지표시에 대한 부분으로 특혜원산지와 관련된 원산지를 신고하는 별도의 항목이 없어 일반원산지와 특혜원산지가 다른 경우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음⁵¹⁾
- 다만, FTA에 대해서는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수입신고서와 별도로 FTA 원산지증명서

51) 예를 들어 일반원산지규정에 따른 원산지는 한국이고, 한-아세안FTA 원산지규정(누적기준적용)에 따른 원산지는 베트남인 경우 등

에 관련된 내역을 신고하는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 FTA를 제외한 APTA 등의 특혜관세 적용 시에는 협정관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특혜원산지결정기준 등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음

□ 반면, 주요국 가운데 호주, 미국은 수입신고서상에 일반원산지(origin country)와 특혜원산지(preference origin country)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함

- 호주의 경우 관세액 산정근거의 일부로서 ‘원산지(origin and preference)’란을 두어 일반원산지와 특혜원산지를 신고서상에 별도로 입력하고, 특혜원산지를 적용받는 사유와 원산지결정기준을 함께 신고함
 - 일반원산지는 특혜관세 적용목적이 아닌 물품이 생산 또는 제조된 국가로서 ISO 국가 코드로 기재
 - 특혜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특혜원산지국가, 개발도상국에 대한 양허세율, FTA 협정세율 등의 적용 사유와 특혜원산지결정기준을 기재
- 미국은 납세신고서에서 일반원산지국가를 기재하는 원산지항목 이외에 27번의 연번 바로 밑에 FTA, GSP 등 적용받고자 하는 특혜협정명칭 및 원산지를 따로 표기⁵²⁾하도록 하고 있음
 - 납세신고서 27번 항목에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고 일반원산지국가만으로 특혜관세적용 불가
 - 물품반입신고서에서는 일반원산지규정에 따른 원산지에 대해 ISO국가코드를 제품별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별도로 특혜원산지를 기재하는 항목은 없음
- 영국은 신고서의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이 세관에서 입력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일본은 일반원산지국가를 기재하고 신고서 하단 첨부서류란에 원산지증명서 항목을 두어 원산지증명서가 첨부되는 경우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함

□ 특혜와 비특혜로 구분된 원산지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원산지 신고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원산지에 대해 항목을 일반원산지와 특혜원산지를 구분지어 표기하도록 하는 것

52) 예: NAFTA = “CA” or “MX”, GSP = “A” 등

이 도움이 될 수 있음

- 또한, 별도의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입신고서상에 마련된 특혜원산지 부분에 부가적으로 원산지증명서 번호, 원산지결정기준 등 필요항목만을 추가하고, 필요한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참고문헌

- 김태인, 「한국과 미국의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절차 비교분석」, 『무역연구』 제5권 제1호, 2009.
- 주일대한민국대사관·토쿄AT센터·KOTRA 토쿄 무역관, 『일본수입규제대응가이드』 2012.
- 정재호·마정화·정경화, 『미국의 수출통관제도 조사』, 한국조세연구원, 2010
- 정재호·김미영·김수영, 『주요국의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2.
- 정재호·마정화·정경화, 『주요국의 통관제도 및 개정교토협약 유보조항 조사』, 한국조세연구원, 2009.
- 한국무역협회 FTA무역종합지원센터, 『한-미FTA 검증 대응 전략』, 2013. 3
- 한상현·최준호, 「수출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미국의 자동수출신고시스템(AES)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11권 제2호, 2010
- ACBPS, “Documentary Import Declaration Comprehensive Guide,” 2013. 1
- Gareth Lewis, “The Impact of ICT on customs,” *WCO, World Customs Journal*, Volume 3, Number 1, April 2009, pp. 3~6
- National Audit Office, “HM Revenue & Customs, The Control and Facilitation of Imports,” 2008.
- 대한민국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 미국 관세청, <http://www.cbp.gov/>
- 일본 관세청, <http://www.customs.go.jp/>
- 호주 관세청, <http://www.customs.gov.au>

영국 정부, <https://www.gov.uk>

KOTRA 국가정보, <http://www.globalwindow.org/>

한국무역협회 TradeNAVI <http://tradenavi.or.kr/>

미국 물품반입신고서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MB No. 1651-0024
Exp. 04-30-2016

ENTRY/IMMEDIATE DELIVERY
19 CFR 142.3, 142.16, 142.22, 142.24

1. ARRIVAL DATE		2. ELECTED ENTRY DATE		3. ENTRY TYPE CODE/NAME		4. ENTRY NUMBER	
5. PORT			6. SINGLE TRANS. BOND		7. BROKER/IMPORTER FILE NUMBER		
			8. CONSIGNEE NUMBER		9. IMPORTER NUMBER		
10. ULTIMATE CONSIGNEE NAME				11. IMPORTER OF RECORD NAME			
12. CARRIER CODE		13. VOYAGE/FLIGHT/TRIP		14. LOCATION OF GOODS-CODE(S)/NAME(S)			
15. VESSEL CODE/NAME							
16. U.S. PORT OF UNLADING		17. MANIFEST NUMBER		18. G.O. NUMBER		19. TOTAL VALUE	
20. DESCRIPTION OF MERCHANDISE							
21. IT/BL/AWB CODE		22. IT/BL/AWB NO.	23. MANIFEST QUANTITY	24. H.S. NUMBER	25. COUNTRY OF ORIGIN	26. MANUFACTURER NO.	
<p style="text-align: center;">27. CERTIFICATION</p> <p>I hereby make application for entry/immediate delivery. I certify that the above information is accurate, the bond is sufficient, valid, and current, and that all requirements of 19 CFR Part 142 have been met.</p> <p>SIGNATURE OF APPLICANT</p>				<p style="text-align: center;">28. CBP USE ONLY</p> <p><input type="checkbox"/> OTHER AGENCY ACTION REQUIRED, NAMELY:</p> <p><input type="checkbox"/> CBP EXAMINATION REQUIRED.</p> <p><input type="checkbox"/> ENTRY REJECTED, BECAUSE:</p>			
<p>PHONE NO. _____ DATE _____</p>							
<p style="text-align: center;">29. BROKER OR OTHER GOVT. AGENCY USE</p>							
				<p>DELIVERY _____ SIGNATURE _____ DATE _____</p>			
				<p style="text-align: center;">29. Broker or Other Government Agency Use</p>			

Paperwork Reduction Act Statement: An agency may not conduct or sponsor an information collection and a person is not required to respond to this information unless it displays a current valid OMB control number and an expiration date. The control number for this collection is 1651-0024. The estimated average time to complete this application is 15 minutes. If you have any comments regarding the burden estimate you can write to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ffice of Regulations and Rulings, 799 9th Street, NW., Washington DC 20229.

CBP Form 3461 (10/09)

미국 납세신고서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Form Approved OMB No. 1651-0022 EXP. 08-31-2014		
ENTRY SUMMARY				1. Filer Code/Entry No.	2. Entry Type	3. Summary Date
				4. Surety No.	5. Bond Type	6. Port Code
				7. Entry Date		
8. Importing Carrier		9. Mode of Transport		10. Country of Origin		11. Import Date
12. B/L or AWB No.		13. Manufacturer ID		14. Exporting Country		15. Export Date
16. I.T. No.	17. I.T. Date	18. Missing Docs		19. Foreign Port of Lading		20. U.S. Port of Unlading
21. Location of Goods/G.O. No.		22. Consignee No.		23. Importer No.		24. Reference No.
25. Ultimate Consignee Name and Address				26. Importer of Record Name and Address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27.	28. Description of Merchandise			32.	33.	
Line No.	A. HTSUS No. B. ADA/CVD No.	A. Grossweight B. Manifest Qty.	31. Net Quantity in HTSUS Units	A. Entered Value B. CHGS C. Relationship	A. HTSUS Rate B. ADA/CVD Rate C. IRC Rate D. Visa No.	34. Duty and I.R. Tax Dollars Cents
Other Fee Summary for Block 39				CBP USE ONLY		TOTALS
35. Total Entered Value \$ _____				A. LIQ CODE	B. Ascertained Duty	37. Duty
Total Other Fees \$ _____				REASON CODE	C. Ascertained Tax	38. Tax
36. DECLARATION OF IMPORTER OF RECORD (OWNER OR PURCHASER) OR AUTHORIZED AGENT I declare that I am the <input type="checkbox"/> Importer of record and that the actual owner, purchaser, or consignee for CBP purposes is as shown above. OR <input type="checkbox"/> owner or purchaser or agent thereof. I further declare that the merchandise <input type="checkbox"/> was obtained pursuant to a purchase or agreement to purchase and that the prices set forth in the invoices are true. OR <input type="checkbox"/> was not obtained pursuant to a purchase or agreement to purchase and the statements in the invoices as to value or price are true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I also declare that the statements in the documents herein filed fully disclose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the true prices, values, quantities, rebates, drawbacks, fees, commissions, and royalties and are true and correct, and that all goods or services provided to the seller of the merchandise either free or at reduced cost are fully disclosed. I will immediately furnish to the appropriate CBP officer any information showing a different statement of facts.				D. Ascertained Other		39. Other
				E. Ascertained Total		40. Total
				41. DECLARANT NAME _____ TITLE _____ SIGNATURE _____ DATE _____		
42. Broker/Filer Information (Name, address, phone number)				43. Broker/Importer File No. _____		
				Paperwork Reduction Act Notice CBP Form 7501 (06/09)		

일본 수출신고서

税関様式C第5010号

輸 出 申 告 書

あ て 先 _____ 長殿 申告年月日 _____

輸出者住所氏名印 _____ 積込港 _____

代理人住所氏名印 _____ 積載船(機)名 _____

仕向人住所氏名 _____ 出港予定年月日 _____

仕向地 _____ (都市) (国)

積置場所 _____

本船扱 小中扱

申告番号	
積込港符号	
船(機)籍符号	
貿易形態別符号	
仕向国(地)符号	
輸出者符号	
※ (調査用符号)	

品 名	統計品目番号	単 位	数	量	申告価格 (F. O. B)	申 出 額 (調査額)
(1)						
(2)						
(3)						

積込、記号、番号、外国産品のときは生産地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及び「輸出貿易管理令」関係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第48条第1項に基づく輸出貿易管理令第1条第1項別表第1の項 輸出貿易管理令第2条第1項第 号 項 輸出貿易管理令第4条第 項 号 の 項(号) 輸出貿易管理令第1条第1項別表第1の項 <input type="checkbox"/> (許可) <input type="checkbox"/> (許可不) 輸出許可証又は輸出承認証の番号 保税運送区分 <input type="checkbox"/> 陸路、 <input type="checkbox"/> 海路、 <input type="checkbox"/> 空路 期間 年 月 日 から 年 月 日まで	申告書 枚 添付書類 (輸出貿易管理令関係を除く)。 仕入書 <input type="checkbox"/> (有) 輸出取引承認書 <input type="checkbox"/> その他関税法第70条関係許可・承認書等 (法令名) 関税定率法、関税暫定措置法第 条第 項第 号関係 <input type="checkbox"/> 内国消費税輸出免稅(還付金)関係 <input type="checkbox"/>
---	--


許可印・許可年月日
 積込年月日

※ 税関記入欄 1 検査場検査 2 現場検査	※ 受理	※ 審査	通関士記名押印
----------------------------------	------	------	---------

(注) ※印の欄は記入しないで下さい。
 「不服申立てについて」この申告に基づく処分について不服があるときは、その処分があったことを知った日の翌日から起算して2月以内に税関長に対し異議申立てをすることができます。

(規格A4)

호주 수입신고서



Australian Government
Australian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ervice

Import Declaration (N10)

Approved Form Section 71K of the Customs Act 1901

Import Declaration (e71A)
 OR
 Return in relation to special clearance goods (S70(7))

Customs Use Only:
 Declaration ID

IMPORTANT! Please complete sections A, B and C of this form

SECTION A

Owner Details: Owner Name	Owner ID (ABN, ABN/CAC or CCID):	Owner Reference:	AQIS Inspection Location:
Contact Details: Owner Phone Home: () () () () () () Mobile: () () () () () () Destination Port Code: () () () () () ()	Owner Email:	Owner Fax: () () () () () ()	EFT Payment Indicator: (Please tick one only)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nvoice Term Type: () () () () () ()	Valuation Date: / /	Header Valuation Advice No: / /	

Valuation Elements Type	Amount	Currency
a. Invoice Total		
b. Overseas Freight		
c. Overseas Insurance		
d. Packing Costs		
e. Foreign Inland Freight		
f. Landing Charges		
g. Transport & Insurance		
Free on Board		
Cost Insurance & Freight		

PAID UNDER PROTEST INDICATOR

You MUST attach a statement of the reasons for protesting the payment of duty.

AMBER STATEMENT/REASON: If you are uncertain about information included in the declaration, or omission of information from that declaration, and consider that as a result the declaration may be false or misleading in a material particular, you must specify the reasons for that uncertainty.
(Must be included as an attachment)

DECLARATION:

I, _____ "The owner of the goods/agent of the owner hereby acknowledge that this import declaration of _____ pages is true and correct.

Signature of "the owner of the goods/agent of the owner" _____
(*Date which is not applicable)

Date: / /

B650 (NOV2010)

Import Declaration (N10) - Transport Details

SECTION B Please complete the section relevant to the mode of transport for your goods along with the Delivery Address details.

Mode of Transport:	AIR	Airline Code:	Loading Port:	First Arrival Port:
Discharge Port:		First Arrival Date: / /	Gross Weight:	Gross Weight Unit:
Line No:	Master Air Waybill No:	House Air Waybill No:	No. of Packages:	Marks & Numbers Description:
Line Details				

OR

Mode of Transport:	SEA	Vessel Name:	Voyage No:	Loading Port:
First Arrival Port:		Discharge Port:	First Arrival Date: / /	Gross Weight Unit:
Line No:	Cargo Type:	Container No:	Ocean Bill of Lading No:	House Bill of Lading No:
Line Details			No. of Packages:	Marks & Numbers Description:

OR

Mode of Transport:	POST	Parcel Post Card No(s):	Discharge Port:	First Arrival Date: / /
Marks & Numbers Description:			Gross Weight Unit:	Number of Packages:

OR

Mode of Transport:	OTHER	Customs Receipt for Goods No.:	Loading Port:	First Arrival Port:
Discharge Port:		First Arrival Date: / /	Gross Weight:	Gross Weight Unit:

DELIVERY ADDRESS:

IMPORTANT! Please complete delivery address details	Name:	Address:	Contact Phone No:
Locality:	State:	Postcode:	Country: AUSTRALIA

B650 (NOV 2010)


Import Declaration (N10) - Tariff Details

SECTION C


Line No.:	Supplier ID:	Supplier Name:					
Tariff Classification No:	Stat. Code:	Related Transaction Indicator: (Please tick)	Treatment Code:	Valuation Basis Type:	GST Exempt Code:		
Goods Description:	Quantity:	Unit:	Preference Scheme Type:	Preference Rule Type:			
Valuation Elements	Type	Amount	Currency	Origin and Preference	Origin Country:	Instrument Type	Instrument Number:
	Price			Treatment Instruments			
				Tariff Classification Instruments			
Additional Information:							
AQIS Prolular Code:							

Line No.:	Supplier ID:	Supplier Name:					
Tariff Classification No:	Stat. Code:	Related Transaction Indicator: (Please tick)	Treatment Code:	Valuation Basis Type:	GST Exempt Code:		
Goods Description:	Quantity:	Unit:	Preference Scheme Type:	Preference Rule Type:			
Valuation Elements	Type	Amount	Currency	Origin and Preference	Origin Country:	Instrument Type	Instrument Number:
	Price			Treatment Instruments			
				Tariff Classification Instruments			
Additional Information:							
AQIS Prolular Code:							

호주 수출신고서

 Australian Government Australian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ervice		EXPORT DECLARATION Or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162A(6A)			
Approved Form for Customs Act Sections 114(3)(c) & 162AA(3)(a) - B957					
NOTICE - we require this information under the Customs Act 1901, so we can ensure that your goods are properly cleared for export. The information you provide will be given to the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nd the Australia Taxation Office. If you are required to hold a permit to export these goods, the permit details will also be given to the relevant permit issuing agency.					
EDN Customs to provide		1. Reference: Customs Use Only		2. Reporting Party Type <input type="checkbox"/> Owner <input type="checkbox"/> Agent	
3. Your Reference		4. Reporting Party ID			
5. Intended Date of Export		6. Unique Consignment Reference No.		7. Customable/Excisable Indicator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8. Prescribed Goods Indicator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9. Warehouse Est. ID			
10. Goods Owner Party ID (ABN/CCID)		11. Branch ID: Confirming export only			
12. Confirming Exporter Type (N,Y,C)			13. Export Goods Type <input type="checkbox"/> ST <input type="checkbox"/> PO <input type="checkbox"/> SP <input type="checkbox"/> AB <input type="checkbox"/> OP <input type="checkbox"/> OT		
14. Consignee Name:					
15. Consignee City		16. Port of Loading		17. First Port of Discharge	
18. Final Destination Country Code		19. Mode of Transport <input type="checkbox"/> Air <input type="checkbox"/> Sea		20. Vessel ID/Flight No.	
21. Voyage No		22. Cargo Type <input type="checkbox"/> C <input type="checkbox"/> CO <input type="checkbox"/> N <input type="checkbox"/> B		23. Total No. Packages	
24. Total No. Containers		25. Invoice Currency		26. FOB Currency	
27. Total FOB Value					
LINE DETAILS					
28A. Line No. (Use a separate B957a supplementary page for each additional export commodity (each line))			28. Commodity Classification Code (AHECC)		
29. Goods Description					
30. Goods Origin Code		31. Goods Origin Country Code(s)		32. Temporary Import No.	
33. Net Quantity					
a.) Amount			b.) Unit		
34. Gross Weight					
a.) Amount			b.) Unit		
35. Line FOB Value					
36. Permit Prefix			Permit Header		
DECLARATION					
I, the undersigned, make this export declaration (comprising a B957 Header Page and _____ B957(a) Supplementary Page(s) (not including "notes" Pages)) and hereby declare I am the (please tick)					
<input type="checkbox"/> Owner/authorised Principal exporter (including an employee of the Principal)					
<input type="checkbox"/> Authorised agent of the Owner and that the information provided is complete and correct.					
Name of Person making the Entry			Contact Address		
Contact Phone No.			Contact Email		
Contact Fax No.			Company Name		
Signature		Position in Company		Date / /	

호주 수출신고서(추가 기재)

 Australian Government Australian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ervice	
<h2>EXPORT DECLARATION SUPPLEMENTARY PAGE</h2>	
<small>Approved Form for Customs Act Sections 114(3)(c) & 162AA(3)(a) - Export Declaration - B957a</small>	
<p>Complete one of these pages for each commodity</p>	
<p>Page _____ of _____ Pages</p>	
1. Line No.	3. Commodity Classification Code (AHECC)
2. Your Reference	
3. Goods Description	
5. Goods Origin Code	6. Temporary Import No.
7. Goods Origin Country Code	
8. Net Quantity	a.) Amount
	b.) Unit
9. Gross Weight	a.) Amount
	b.) Unit
10. Line FOB Value:	
11. Permit Details:	
12. Assay Details:	
a.) Assay Element	b.) Assay Concentration
	c.) Assay Unit
Signature: _____	
Date: / /	

B957a (APR 2010)

영국 수출입신고서

EUROPEAN COMMUNITY					1 2 3 4 5 6 7			A OFFICE OF DISPATCH/EXPORT			
Copy for the country of dispatch/export	1 <input type="checkbox"/>		2 Consignor/Exporter No		1 DECLARATION			3 Forms 4 Loading lists			
	8 Consignee No		9 Person responsible for financial settlement No			5 Items 6 Total packages 7 Reference number			10 Country first destn 11 Trading country 13 CAP		
	14 Declarant/Representative No		15 Country of dispatch/export			15 C disp./exp. Code 17 Country destn. Code			16 Country of origin 17 Country of destination		
	18 Identity and nationality of means of transport at departure		19 Ctr.			20 Delivery terms			21 Identity and nationality of active means of transport crossing the border		
	22 Currency and total amount invoiced		23 Exchange rate			24 Nature of transaction			25 Mode of transport at the border 26 Inland mode of transport 27 Place of loading		
	28 Financial and banking data		29 Office of exit			30 Location of goods			31 Packages and description of goods		
	32 Item No		33 Commodity Code			34 Country origin Code 35 Gross mass (kg)			37 PROCEDURE 38 Net mass (kg) 39 Quota		
	40 Summary declaration/Previous document		41 Supplementary units			A.I. Code			46 Statistical value		
	47 Calculation of taxes		48 Deferred payment			49 Identification of warehouse			B ACCOUNTING DETAILS		
	50 Principal No		Signature:			C OFFICE OF DEPARTURE			51 Intended offices of transit (and country) represented by Place and date:		
52 Guarantee not valid for		Code			53 Office of destination (and country)			54 Place and date:			
D CONTROL BY OFFICE OF DEPARTURE		Stamp:			Signature and name of declarant/representative:			Result: Seals affixed: Number: Identity: Time limit (date): Signature:			

EUROPEAN COMMUNITY					1 2 3 4 5 6 7		A OFFICE OF DISPATCH/EXPORT		
2 Statistical copy — Country of dispatch/export	2 Consignor/Exporter No			1 DECLARATION					
	3 Forms			4 Loading lists					
	5 Items			6 Total packages		7 Reference number			
	8 Consignee No			9 Person responsible for financial settlement No					
	10 Country first destn.			11 Trading country		13 CAP			
	14 Declarant/Representative No			15 Country of dispatch/export		15 C disp./exp. Code		17 Country destin. Code	
	16 Country of origin			17 Country of destination					
	18 Identity and nationality of means of transport at departure			19 Ctr.		20 Delivery terms			
	21 Identity and nationality of active means of transport crossing the border			22 Currency and total amount invoiced		23 Exchange rate		24 Nature of transaction	
	25 Mode of transport at the border		26 Inland mode of transport		27 Place of loading		28 Financial and banking data		
29 Office of exit		30 Location of goods							
31 Packages and description of goods	Marks and numbers — Container No(s) — Number and kind			32 Item No		33 Commodity Code			
	34 Country origin Code		35 Gross mass (kg)						
	37 PROCEDURE		38 Net mass (kg)		39 Quota				
	40 Summary declaration/Previous document								
44 Additional information/ Documents produced/ Certificates and authorisations	41 Supplementary units					A.I. Code			
	46 Statistical value								
47 Calculation of taxes	Type	Tax base	Rate	Amount	MP	48 Deferred payment		49 Identification of warehouse	
Total:									
50 Principal No			Signature:		C OFFICE OF DEPARTURE				
51 Intended offices of transit (and country)	represented by								
	Place and date:								
52 Guarantee not valid for			Code		53 Office of destination (and country)				
D CONTROL BY OFFICE OF DEPARTURE					Stamp:		54 Place and date:		
Result:					Signature and name of declarant/representative:				
Seals affixed: Number:									
Identity:									
Time limit (date):									
Signature:									

EUROPEAN COMMUNITY 1 2 3 4 5 6 7					A OFFICE OF DISPATCH/EXPORT						
3 Copy for the consignor/exporter	2 Consignor/Exporter No <input type="checkbox"/>					1 DECLARATION					
						3 Forms		4 Loading lists			
						5 Items		6 Total packages		7 Reference number	
	8 Consignee No					9 Person responsible for financial settlement No					
						10 Country first destin.		11 Trading country		13 CAP	
	14 Declarant/Representative No					15 Country of dispatch/export			15 C dep. Code a) b)		17 Country destin. Code a) b)
						16 Country of origin			17 Country of destination		
	18 Identity and nationality of means of transport at departure					19 Ctr.		20 Delivery terms			
	21 Identity and nationality of active means of transport crossing the border					22 Currency and total amount invoiced			23 Exchange rate		24 Nature of transaction
	25 Mode of transport at the border		26 Inland mode of transport		27 Place of loading		28 Financial and banking data				
29 Office of exit					30 Location of goods						
3 31 Packages and description of goods	31 Marks and numbers — Container No(s) — Number and kind					32 Item No		33 Commodity Code			
						34 Country origin Code a) b)		35 Gross mass (kg)		39 Quota	
						37 PROCEDURE		38 Net mass (kg)		39 Quota	
						40 Summary declaration/Previous document					
						41 Supplementary units					
4 44 Additional information/Documents produced/Certificates and authorisations						A.I. Code					
						46 Statistical value					
4 47 Calculation of taxes	Type					Tax base					
	Rate					Amount					
	MP					48 Deferred payment					
					49 Identification of warehouse						
B ACCOUNTING DETAILS											
50 Principal No					Signature:						
					C OFFICE OF DEPARTURE						
5 51 Intended offices of transit (and country)	represented by										
	Place and date:										
52 Guarantee not valid for					Code						
53 Office of destination (and country)											
D CONTROL BY OFFICE OF DEPARTURE					Stamp:						
Result:					54 Place and date:						
Seals affixed: Number:					Signature and name of declarant/representative:						
Identity:											
Time limit (date):											
Signature:											

EUROPEAN COMMUNITY 1 2 3 4 5 6 7		A OFFICE OF DISPATCH/EXPORT	
Copy for the office of destination	4	2 Consignor/Exporter No <input type="checkbox"/>	1 DECLARATION
		8 Consignee No	3 Forms 4 Loading lists
		14 Declarant/Representative No	5 Items 6 Total packages
		18 Identity and nationality of means of transport at departure	15 Country of dispatch/export
		21 Identity and nationality of active means of transport crossing the border	17 Country of destination
		25 Mode of transport at the border 27 Place of loading	19 Ctr.
4	31 Packages and description of goods Marks and numbers — Container No(s) — Number and kind		32 Item No
	33 Commodity Code		35 Gross mass (kg)
	40 Summary declaration/Previous document		38 Net mass (kg)
	44 Additional information/ Documents produced/ Certificates and authorisations		A.I. Code
	55 Transhipments Place and country: Ident. and nat. new means transp.: Ctr: <input type="checkbox"/> (1) Identity of new container: (1) Enter 1 if Yes or 0 if NO.	Place and country: Ident. and nat. new means transp.: Ctr: <input type="checkbox"/> (1) Identity of new container: (1) Enter 1 if Yes or 0 if NO.	
CERTIFICATION BY COMPETENT AUTHORITIES	New seals: Number: identity: Signature: Stamp:	New seals: Number: identity: Signature: Stamp:	
	50 Principal No Signature:	C OFFICE OF DEPARTURE	
	51 Intended offices of transit (and country) represented by Place and date:	-----	
	52 Guarantee not valid for	Code	53 Office of destination (and country)
	D CONTROL BY OFFICE OF DEPARTURE Result: Seals affixed: Number: identity: Time limit (date): Signature:	Stamp:	54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name of declarant/representative:

EUROPEAN COMMUNITY		1 2 3 4 5 6 7						
5 Copy for return — Community transit	2 Consignor/Exporter No <input type="checkbox"/>		1 DECLARATION					
			3 Forms	4 Loading lists				
			5 Items	6 Total packages				
	8 Consignee No							
			15 Country of dispatch/export		17 Country of destination			
18 Identity and nationality of means of transport at departure		19 Ctr.		Tilbagesendes til: Zurücksenden an: No. d. transport: Return to: Renvoyer à: Rinviare a: Teruggesenden naar: Devolver a:				
21 Identity and nationality of active means of transport crossing the border				CCTO Custom House Main Road Dovercourt Harwich CO12 3PG ENGLAND				
25 Mode of transport at the border	27 Place of loading							
5	31 Packages and description of goods		32 Item No <input type="checkbox"/>		33 Commodity Code			
	Marks and numbers—Container No(s)—Number and kind				35 Gross mass (kg)			
					38 Net mass (kg)			
44 Additional information/ Documents produced/ Certificates and authorisations				40 Summary declaration/Previous document				
				A.I. Code <input type="checkbox"/>				
56 Transhipments		Place and country:		Place and country:				
		Ident. and nat. new means transp.:		Ident. and nat. new means transp.:				
		Ctr. <input type="checkbox"/> (1) Identity of new container:		Ctr. <input type="checkbox"/> (1) Identity of new container:				
		(1) Enter 1 if Yes or 0 if NO.		(1) Enter 1 if Yes or 0 if NO.				
F CERTIFICATION BY COMPETENT AUTHORITIES		New seals: Number: Identity:		New seals: Number: Identity:				
		Signature: Stamp:		Signature: Stamp:				
50 Principal No		Signature:		C OFFICE OF DEPARTURE				
51 Intended offices of transit (and country)		represented by						
		Place and date:						
52 Guarantee not valid for				Code		53 Office of destination (and country)		
D CONTROL BY OFFICE OF DEPARTURE		Stamp:						
		Result:						
		Seals affixed: Number:						
		Identity:						
		Time limit (date):						
		Signature:						

EUROPEAN COMMUNITY 1 2 3 4 5 6 7					A OFFICE OF DESTINATION																			
7 Statistical copy — Country of destination	2 Consignor/Exporter No <input type="checkbox"/>					1 DECLARATION																		
						3 Forms		4 Loading lists																
						5 Items		6 Total packages		7 Reference number														
	8 Consignee No					9 Person responsible for financial settlement No																		
						10 Country last consigned		11 Trad./Prod. country		12 Value details														
	14 Declarant/Representative No					15 Country of dispatch/export			15 C disp./exp. Code		17 Country destin. Code													
						16 Country of origin		17 Country of destination																
	18 Identity and nationality of means of transport on arrival					19 Ctr.		20 Delivery terms																
	21 Identity and nationality of active means of transport crossing the border					22 Currency and total amount invoiced			23 Exchange rate		24 Nature of transaction													
	25 Mode of transport at the border		26 Inland mode of transport		27 Place of unloading		28 Financial and banking data																	
7 29 Office of entry					30 Location of goods																			
31 Packages and description of goods					32 Item No		33 Commodity Code																	
					34 Country origin Code		35 Gross mass (kg)		36 Preference															
					37 PROCEDURE		38 Net mass (kg)		39 Quota															
					40 Summary declaration/Previous document																			
44 Additional information/Documents produced/Certificates and authorisations					41 Supplementary units		42 Item price		43 VM code															
					A.1. Code		45 Adjustment		46 Statistical value															
47 Calculation of taxes					48 Deferred payment		49 Identification of warehous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Type</th> <th>Tax base</th> <th>Rate</th> <th>Amount</th> <th>MP</th> </tr> </thead> <tbody>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r>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Total:</td> </tr> </tbody> </table>					Type	Tax base	Rate	Amount	MP						Total:					B ACCOUNTING DETAILS				
Type	Tax base	Rate	Amount	MP																				
Total:																								
50 Principal No					Signature:		C OFFICE OF DEPARTURE																	
51 Intended offices of transit (and country)					represented by Place and date:																			
52 Guarantee not valid for					Code		53 Office of destination (and country)																	
J CONTROL BY OFFICE OF DESTINATION					54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name of declarant/representative:																			

EUROPEAN COMMUNITY 1 2 3 4 5 6 7					A OFFICE OF DESTINATION										
Copy for the consignee	8 1 2 Consignor/Exporter No					1 DECLARATION									
						3 Forms		4 Loading lists							
						5 Items		6 Total packages		7 Reference number					
	8 Consignee No					9 Person responsible for financial settlement No									
						10 Country last consigned		11 Trad./Prod. country		12 Value details					
	14 Declarant/Representative No					15 Country of dispatch/export			15 C disp. /exp. Code a) b) A) B)		17 Country destin. Code a) b)				
						16 Country of origin			17 Country of destination						
	18 Identity and nationality of means of transport on arrival					19 Ctr.		20 Delivery terms							
	21 Identity and nationality of active means of transport crossing the border					22 Currency and total amount invoiced			23 Exchange rate		24 Nature of transaction				
	25 Mode of transport at the border		26 Inland mode of transport		27 Place of unloading		28 Financial and banking data								
8 2 29 Office of entry					30 Location of goods										
31 Packages and description of goods					32 Item No		33 Commodity Code								
					34 Country origin Code a) b)		35 Gross mass (kg)		36 Preference						
					37 PROCEDURE		38 Net mass (kg)		39 Quota						
					40 Summary declaration/Previous document							41 Supplementary units		42 Item price	
					44 Additional information/ Documents produced/ Certificates and authorisations					A. 1. Code		45 Adjustment		43 V/M code	
47 Calculation of taxes					48 Deferred payment		49 Identification of warehouse								
					Total:					B ACCOUNTING DETAILS					
50 Principal No					Signature:										
51 Intended offices of transit (and country)					C OFFICE OF DEPARTURE										
					represented by Place and date:										
52 Guarantee not valid for					Code		53 Office of destination (and country)								
J CONTROL BY OFFICE OF DESTINATION					54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name of declarant/representative:										

관세연구 13-03
주요국의 수출입신고서식 비교연구

2013년 12월 23일 인쇄
2013년 12월 30일 발행

저 자 정재호 · 김미영 · 이민선

발행인 옥동석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3181-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TEL: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인쇄 고려씨엔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ISBN 978-89-8191-708-1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